

1994년8월 1일발행·제5권제8호·1990년11월 14일등록·라-4859호 발행처/국민경제교육연구소135-270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951-12 전화(02)561-1400 1991년8월30일제3종우편물(나급)·월간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 나라경제

1994. 8



## 특집 / UR 이후 개방시대를 대비한 농어촌 발전대책

경제정책해설 / 변동금리부채권제도의 도입  
지역균형개발의 효율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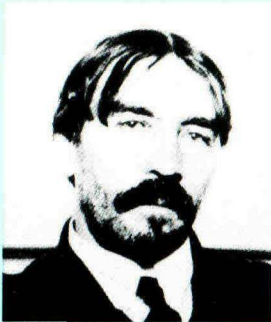
논단 /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발전방향



편집/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국민경제교육연구소

인간의 본능과 制度에 관한 연구에 一家 이룬 경제학자

## 토르스타인 베블렌 (1857~1929)



토르스타인 베블렌(Thorstein Veblen)은 1857년 미국 위스컨신주의 카토라는 곳에서 토마스 베블렌의 12명의 자녀 가운데 여섯번째로 태어났다. 1847년에 노르웨이에서 이민온 아버지 토마스 베블렌은 겨우 생계를 해결할 정도의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서부개척시의 소농에 불과하였다.

1880년 베블렌은 미네소타주에 있는 칼튼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존스 홉킨스대학에서 1년을 보낸 뒤에 1884년 예일대학에서 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해 미네소타로 귀향한 베블렌은 그곳에서 7년을 독서와 사색으로 보냈다.

1891년 베블렌은 34세의 나이로 다시 코넬대학의 경제학과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그러던 중 그의 지도교수였던 로렌스 로우린(J. Laurence Laughlin)교수가 시카고대학의 경제학과 과장으로 옮기면서 그를 조교로 데리고 감으로써 시카고대학 경제학과에서 15년간 가르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이단적인 행적과 집안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1906년 시카고대학에서 해고되었다. 1906년부터 1909년까지 스탠포드대학에 몸담았다가 다시 미주리대학에서 1911년부터 1918년까지 7년 동안 재직하였다. 1918년 대학을 떠나 제1차 세계대전중 잠시 공무원직에 있기도 하였으나 전임자리를 얻지 못한 채 뉴욕 사회연구대학(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등에서 강사로 전전하였다.

1926년 캘리포니아에 은퇴한 후 만년을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보내다 1929년 임종을 지키는 사람도 없이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쳤다.

**베**블렌이 성장하였던 19세기 후반기는 미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몹시 다사다난한 시기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자주 폭동이 일어났는가 하면, 헨리 조지와 같은 개혁주의자들은 단일세제를 주장하면서 지주의 기생성을 공격하는 한편, 일부 지식인들은 민중주의(populism)나 사회주의 운동에 깊은 관심과 편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渦中에 무정부주의자들은 사회 도처에서 폭동·파괴·살상 등의 만행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의 불안정을 획책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베블렌은 자신이 스스로 사회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사회의 모순을 예리하고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데 서슴지 않았다.

베블렌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던 세 개의 기둥은 이와 같은 사회적 풍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원적 진화 사상, 유토피아적 무정부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로 모아질 수 있다.

루이스 몰간의 원시씨족 공동체연구에 흥미를 가졌던 베블렌은 재산의 공유상태, 무지배의 무정부상태, 그리고 이상향적인 공동체생활에 知的으로 매료되면서 인간의 경제생활을 지배하는 두 개의 요인, 즉 인간의 본능과 인간이 만든 제도가 그의 평생의 연구 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베블렌은 고전학파나 한계학파가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였던 소위 '경제인(The Economic Man)'의 개념에 반기를 들면서 자본주의 체제하이건 아니건 모든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의 주체인 '經濟人'을 다시 찾기에 노력하였다.

베블렌은 인간의 본능을 다시 근본적으로 착한 것으로 보고, 첫째로 '家親的愛情'을 들고 있다.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척과 동료를 사랑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작업 본능'으로 인간은 일하

고 싶어하며, 또한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한가한 호기심의 본능'으로, 특별한 까닭 없이 또는 이해관계 없이 단순한 흥미 때문에 학문을 탐구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작품을 만드는 본능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능은 모두 착하고 좋은 것인 반면, 인간이 만든 제도로서의 관행은 착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나쁘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 때문에 생긴 '금전적 경쟁행태', '과시적 소비행태', '국력단합을 위한 행태' 등등은 모두 사납고 나쁘기 때문에 약탈적이거나 낭비성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세대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비전통적으로 경제학의 연구에 접근한 베블렌은 본능과 제도의 상승작용에 따라 인류의 경제사회가 어떻게 진화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추론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 위주의 산업사회는 인간의 비인격화가 심각해지면서 기계적인 과정으로 전락하게 되고 따라서 기업 지배의 사회가 존립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의 민족주의, 신앙적 계율과 같은 장치는 파괴될 수밖에 없

는 상태로 퇴화되어 간다고 주장했다.

그가 시카고대학 재직시에 저술한 「有閑階級論」(Theory of Leisure Class)은 후에 형성된 제도학과(Institutional School)의 저작 가운데 가장 높게 꼽히고 있다.

겔블레이스는 "베블렌이 떠나 주기를 바랐고 또한 그를 내쫓은 오늘날의 유명한 대학들은 베블렌이 자기 대학에 재직하였던 사실을 영광스럽게 자랑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

**윤석범**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비전통적으로 경제학 연구에 접근한 베블렌은 인간의 경제생활을 지배하는 두 개의 요인 즉, 인간의 본능과 인간이 만든 제도를 평생의 연구주제로 삼았다. 그는 인간의 본능은 기본적으로 착하고 좋은 것인 데 반해 인간이 만든 제도로서의 관행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기업위주의 산업사회는 인간의 비인격화를 심화시킨다고 보았다.

# 나라경제

## 역사 속의 경제사상가<sup>20</sup>

인간의 본능과 제도에 관한 연구에 一家 이룬 경제학자— 토르스타인 베블렌  
 ..... 윤석범 · 연세대 교수 2

권두칼럼/과학기술과 투자, 그리고 국력 ..... 이태섭 · 前 과학기술처 장관 6

## 나라경제 화랑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상공자원부 산업기술국  
 “산업기술정책의 메카”를 자부한다 ..... 이종태 · 중앙경제신문 기자 10

## 지상중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운동과 기업행동 ..... 정재석 · 부총리 15

## UR 이후 개방시대를 대비한 농어촌 발전대책

특집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정비 ..... 김정호 · 농림수산부 26  
 농어민연금, 내년 7월부터 전면 실시 ..... 이형주 · 보건사회부 32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 박윤희 · 보건사회부 36  
 농어촌 도로 및 주거환경 개선 ..... 박성득 · 내 무 부 40  
 농어촌 생활용수의 획기적 개선 ..... 이길섭 · 환 경 처 44

## 경제수상

국제화 · 지구화 그리고 세계화 ..... 서주석 · 상공자원부 47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탱 가능한 개발 ..... 전영길 · 환 경 처 48

나라경제 초대석/의료보장제도 개혁 시급하다 ..... 연하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50

기업정보코너/대기오염으로 인한 양봉피해 분쟁 ..... 정혁진 · 환경처 52

	<b>출입기자코너</b>	
55	경제관료들의 '원칙' 과 '소신' 을 기대한다 .....	이광희 · 서울경제신문 기자/건설부
56	21세기의 시민과 공직자 .....	박윤석 · 동아일보 기자/교통부
57	'부처이기주의' 인가 '견해차이' 인가 .....	김창엽 · 중앙일보 기자/과학기술처
	<b>경제정책해설</b>	
60	변동금리부채권제도의 도입 .....	강권석 · 재 무 부
65	농어민 불편사항, 이렇게 해결된다 .....	하영호 · 농림수산부
69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 .....	정준석 · 상공자원부
74	OECD 가입으로 국제협력체제에 동참 .....	금정연 · 재 무 부
77	지역균형개발의 효율적 추진 .....	채덕석 · 건 설 부
82	급성전염병의 예방 .....	이덕형 · 보건사회부
86	장애인 고용의 촉진 .....	이양정 · 노 동 부
89	지동차안전도의 확보대책 .....	정상호 · 교 통 부
92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	박영일 · 과학기술처
97	건강한 삶을 위하여 /위 경 련 .....	최재현 · 고려대 교수
98	<b>경제동향</b> /나라밖 · 세계경제 회복되고 있다 .....	신현수 · 산업연구원
102	<b>통계로 보는 우리 경제와 사회</b> /여성의 사회참여 .....	권오술 · 통 계 청
	<b>나라경제 논단</b>	
106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발전방향 .....	천경필 · 환경처
110	긴급수입제한제도의 발전방향(上) .....	신유균 · 관세청
114	생활경제상담실/해외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	이용익 · 관세청
116	<b>바둑칼럼</b> /名局과 名曲 .....	노영하 · 전문기사
117	<b>경제부처동정</b> /정책일지 · 인사이동 .....	편집실
128	<b>경제부처발간자료</b> 안내 .....	편집실

# 과학기술과 투자, 그리고 국력

李 台 燮

前 과학기술처장관 · 現 명지대 객원교수

인류의 미래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과학기술은 미래를 운전해가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의富를 소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국력의 서열 역시 과학기술 순위에 따를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장기적 안목에서 치밀한 계획과 과감한 투자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진력해 오고 있다.

필자가 과학기술처장관 재직시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 정책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적어도 2001년에 가서는 GNP의 5%를 과학기술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야 하고 10대 과학기술 강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과감하면서도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후 전직 대통령도, 또한 김영삼 대통령도 선거공약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GNP의 5%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도 있다.

지난 2월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제7회 新경제 추진 기술개발 전략회의에서도 주력 산업기술과 특정분야 전략핵심기술을 9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21세기 초에는 전반적 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과학기술 투자규모를 92년 GNP의 2.17%에서 98년까지 3~4%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욕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금년에도 GNP의 3%는 투자해야 목표에 근접하겠으나 현재 2.2%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의지는 장기적 안목에서 좀더 과

감하고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하겠고 모든 분야에 우선하는 의지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이 口頭禪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미국이 우리보다 25배, 일본이 19배 이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리나라 전체 과학기술 투자액이 GM이나 IBM 같은 미국의 한 회사의 연구개발비보다도 적어서야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국민들은 과학기술이 선진국에 뒤진 이유의 55%가 연구개발 투자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세계적 차원으로 눈을 돌려 볼 때에도 선진국의 서열이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나라의 順으로 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위 미국, 2위 일본, 3위 독일, 4위 프랑스, 5위 영국, 6위 이탈리아, 7위 캐나다). 이것은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경제 선진국 진입의 관건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업 문제의 해결 등 단기적인 긴급 투자소요가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없음을 실토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말로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과학기술처장관 재임시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걱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면에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하는 것이었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회의 예산상의 뒷받침과 국민 여론의 지지방안을 어떻게 정책으로 동원할 것이냐 하는 점이였다. 그런데 이



“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의지는 장기적 안목에서 좀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하겠고 모든 분야에 우선하는 의지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이 口頭禪에 그쳐서는 안되며,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

두 가지 기본문제는 필자가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소명감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늘 거북이의 부지런함과 토끼의 교만함으로 결국 거북이가 이긴다는 사실만을 선입관처럼 믿어 왔지만, 이야기꾼들의 논리적 궤변은 전혀 다른 사실을 주장한다. 즉, 거북이가 어느 정도의 일정한 거리 앞에서 출발한 뒤에 토끼가 출발하면 토끼는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그럴듯한 이야기가 있다. 왜냐하면 토끼가 아무리 빨리 뛰다 해도 그동안 거북이도 아주 느리기는 하지만 조금은 움직이기 때문이란다. 토끼가 거북이 있던 자리까지 가면 거북이는 어느 정도 앞에 가있고, 또 토끼가 현재 거북이 있는 자리까지 가면 거북이는 또 얼마간 앞에 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토끼가 앞에서 뛰면 거북이는 영원히 토끼를 따라잡지 못하지 않겠는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본은 토끼고 우리나라는 거북이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소름이 끼치곤 한다. 일본이 앞서가는 거북이고 우리가 뒤쫓는 토끼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기술 일본'이 우리보다 아무리 앞서간다고 해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겠거니 하는 지레 겁먹는 고정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 두말할것 없이 일본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오늘의 일본을 있게 한 주요인이다. 그러기에 우리도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일본이 明治維新 40년 만에 해전에서 러시아를 이기고 80년 만에 미국과 전쟁을 벌일 수 있었던 기반은 오로지 과학기술 투자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싱가포르·홍콩 등은 기술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고, 후발국인 중국·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도 국가의 흥망성쇠는 기술 개발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듯이 우리 모두가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론을 환기할 필요성을 느낀다. 실제로 과학기술이 경제를 움직이고 경제가 국력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편 과학기술 투자는 그 성과를 단기간에 기대해서는 안되는 특징이 있다. 오래 기다려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나 민간인 모두가 과학기술 투자의 절실함과 중요성은 인식하면서 현실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투자 효과가 그때 그때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연구 결과에 대한 잦은 간섭이나 졸속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관한 효율적인 정보·정책·평가의 종합화·조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과학기술 개발은 과학인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에 의해서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평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남원**



# “산업기술정책의 메카”를 자부한다



산업기술국은 상공자원부가 '수출드라이브' 시대의 조직구조를 청산하고 '기술드라이브' 정책으로의 선화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올해 3월에 새로이 설치된 부서이다.

산업기술국은 기술개발이 산업발전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부응하여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앞장서 실현해 나가게 된다.

글·이종태/객원기자(중앙경제신문 기자)

산업기술국은 94년 3월 25일 탄생된 상공자원부내에서 가장 역사가 짧은 부서다. 그러면서도 백일을 갖긴 조직답지 않게 항상 활력이 넘쳐 흐른다. 상공자원부가 '수출드라이브' 시대의 조직구조를 청산하고 '기술드라이브'의 주무부처임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간판국으로 내놓은 몫을 푹톡이 해내고 있는 것이다.

과거 상공부가 산업분야에서 해온 행정이라면 특정산업에 대한 진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공장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재와 기술도입을 허가하는 것이 모두였다. '工業立國'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면서 자체 기술개발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70년대에는 기술집약도가 높은 중화학 공업이 성장하면서 기술력 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욕구가 매우 커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축적된 기술력이 빈약하다 보니 자체적인 기술개발보다는 외국기술을 가져오는 데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상공부의 기계·철강·석유화학·자동차·전자공업 등의 육성법도 산업의 외연적 성장을 추구하는 내용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상공부 공업국의 인력도 주로 웅대한 산업육성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재원조달을 박력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일반행정가로 충원되었다. 국·과장급에 반드시 기술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었다. 그리고 당시 기술정책은 정부가 외환관리제도를 만들고 도입기술의 문지기가 되어 가장 경제적인 기술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행정가로서 요



구되는 비전이라는 것도 산업발전단계에 맞춰 외자도입 관련 규제를 약간 완화할 줄 아는 감각 정도였다.

기술은 쉽게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는 상품에 실려진 기술을 분해(reverse engineering)하여 습득할 수 있으므로 기술을 자체개발하기 위해 장기간 투자한다는 것은 정부에서나 기업에서나 손익계산서상 허용되지 않았던 시절이다. 82년에 이르러서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금액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보다 커진 것을 볼 때, 기술개발에서 민간부문의 중요성이 최근에야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조직의 전반적인 축소에도 불구하고 상공자원부가 산업기술국을 설치해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외

에 천명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된다.

상공부 공업국 관료들의 입장에서 산업기술국의 출범은 분명히 커다란 활력소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86년 개별 공업육성법들이 폐지되고 「공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공업국은 사실상 산업정책국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자조해 오던 터였다. 왜냐하면 각종 규제와 조정권한에다가 국산불가 품목 수입추천권이 라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업계를 리드해 오던 공업국 관리들이 86년 이후부터는 업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리고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공업국에서는 정책수단이라고 해 보아야 산업정책국으로부터 수억원짜리 공업기반기술사업자금을 타와서 소관업계에 나눠주는 정도의

당근밖에 없었고 업종전문화와 같은 산업정책을 위한 채찍도 따로 갖지 못했다.

그렇다고 자유화·개방화·국제화 시대를 맞아 옛시절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공업국 관리들은 없다. 그러나 기왕이면 당근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업계를 이끌어 가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따라서 산업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책이 증대되기를 희망하고 있

2개국을 줄이면서 기술국을 신설할 만큼 역점을 뒀다. 공업과 광업 및 에너지분야를 포괄한 기술정책업무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산업기술국이란 명칭 외에 합당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실무협의는 물론 차관급 회의에서도 관계부처간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는 바람에 결말을 보지 못하다가 국무회의까지 올라가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총리와 부총리의 엄호에 힘입어 결국 상공자원부의 주

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안팎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산업기술국은 91년 2월 설치된 산업기술과와 92년 9월에 설치된 에너지기술과를 흡수하여 산업기술정책과·산업기술진흥과·산업기술인력지원과·산업기술협력과·에너지기술과의 5개과 체제로 출범했다.

우선 산업기술정책과는 상공자원부의 공업국과 에너지·자원 정책부서를 비롯해 특허청·공업진흥청·공업기술원·생산기술연구원 등 상공자원부 본부와 외청 및 산하기관의 산업기술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기술경쟁시대에 대비하는 신산업기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년중에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기술인력 양성, 기술정보 유통, 연구시설보강 등 기술의 하부구조확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산업기술진흥과는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이 87년 100억원에서 94년에는 1,414억원으로 급증하고 공업발전기금이 94년 1,450억원으로 확대된 만큼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 산업디자인·포장진흥시책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산업기술인력지원과는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기술 기능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新경제 5개년 계획」에서 확정된 산업기술대학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기술협력과는 이미 설립된 韓·日·韓·美 산업기술협력재단 사

---

**산업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업계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산업기술국은 산업기술정책과·산업기술진흥과·산업기술인력지원과·산업기술협력과·에너지기술과 등 5개 과로 이루어져 있다. 출범 첫해인 올해 안에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산업기술대학' 설치 등 의욕적인 사업들을 펼쳐나가게 된다.**

---

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기술조직이 확대됨으로써 공업국에 대한 지원기능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업국의 기대와, 정부입장에서 산업기술력 향상을 위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산업계의 기대에 부응하여 산업기술국이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 희망이 큰 만큼이나 산업기술국의 탄생과정에서 산고도 컸다. 당장 이름부터가 관계부처 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상공자원부로서는 동자부와 통합 이후 또다시

장대로 결론이 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상공자원부내에서도 1개과에서 하던 업무를 국단위로 하면 과연 얼마나 할 일이 있겠느냐는 일말의 의구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산업기술국이 정책 제1호로 내세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근거법률 제정 추진 계획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그러나 산업기술국에서 쏟아지는 보도자료가 가장 많은 것을 보더라도 덩치가 커진 만큼 실속도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局 단위가 되지 않았다면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기술대학제도 도입 업무가 제대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었

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쌍무적인 산업기술협력 협정이 체결된 중국·호주·프랑스 등과의 국제기술협력을 강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기술도입과 산업기술 정보의 유통에 관한 정책업무도 여기에서 맡고 있다.

에너지기술과는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연계를 추진하고 에너지자원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면서 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산업기술국을 신설하면서 국장과 주요 과장·사무관을 꽤 기만만한 젊은 기술자 출신으로 충원했다. 급변하는 국제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최일류만이 살아남는 기술경쟁 시대에 정교한 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완벽한 호흡을 맞춰나갈 수 있는 인재들로 새 진용을 짠 것이다.

산업기술국의 지휘자인 朱德永 국장(50)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상공부와 동자부의 주요과장을 두루 거치고 기계공업국장까지 역임해 초대 산업기술국장으로서의 중책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인정받았다. 아이디어가 많고 판단이 빠른데다 부지런하기로 소문나 있어 벌써부터 신설국의 다양한 업무개발과 신규사업 추진에 무서운 돌파력을 보이고 있다.

白萬基 산업기술정책과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인데 항상 앞서가는 정책기획으로 발군의 실력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일을 끊임없이 펼치면서도 맵시있는 마무리로 평평이 나있다. 그는 또한 원만한 성품을 갖고 있어 과학기술처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산업기술국의 이미지를 잘 순화시켜 나가고



있다.

姜昌淳 산업기술진흥과장은 기계공업국의 요직을 두루 거친 공대출신으로서 산업기술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재로 꼽힌다. 그동안 소규모 공통애로 기술개발 위주로 추진되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박력을 불어넣어 중기거점기술 및 첨단 대형기술 개발 등 굵직한 일들을 거뜬히 처리해 내고 있다.

李普遠 산업기술인력지원과장은 치밀하면서도 산뜻한 일처리 솜씨가 뛰어난데다 지금껏 불모지로 방치되어 왔던 기술인력분야를 차근차근 곡창지대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高廷植 산업기술협력과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으로 행정력이 돋보이는 팔방미인이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화술로 기술협력 업

무를 원활히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을 접목하는 교량역할을 맡은 柳明鉉 에너지기술과장은 서글서글한 성품과 마당발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과감한 업무추진력으로 산업기술국과 에너지분야를 잘 연결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내에 안 거친 부서가 없는 金京鍾 서기관은 산업기술국의 조타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것이고, 국제번호사인 李辰煥 주무사무관은 다가올 기술통상시대에 대비한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렇듯 참신한 정책마인드와 잘 조화된 멤버로 구성된 산업기술국이 앞으로 펼쳐낼 우리나라 기술정책의 새로운 지평에 자못 큰 기대를 걸어 본다. **남재**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운용과 企業行動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월 17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개최한 「제8회 최고경영자세미나」에서 정재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운용과 企業行動'이라는 題下로 기조강연한 내용을 全載한다.  
(편집자 註)

여름 세미나의 주제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企業經營革新戰略'으로 잡은 것은 아마 이러한 여건을 심분 감안한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에게도 오늘 국가경쟁력 문제에 대한 평소 소견의 일단을 여러분에게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운용과 기업활동'입니다. 주제의 요점은 물론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에 먼저 국가경쟁력의 의미와 개념을 제 나름대로 규정한 다음, 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政策運用 基調와 민간부문의 기업행동 원리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 국가경쟁력의 의미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國家競爭力 강화'라는 목표에 몰두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國家競爭力'의 진정한 의미와 개념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모두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널리스트적이고 다분히 時流的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는 기관이나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나 내용이 매우 다양다기하고, 따라서 각자의 문제인식이나 상황파악 및 대응방안에 있어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국가경쟁력'에 대한 일정한 通用的 정의가 꼭 필요하다거나 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崔鍾賢會長, 그리고 最高經營者 여러분!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변화는 전례없이 그 속도가 빠르고 그 폭이 넓으며 또 깊습니다. 내년초에 출범하는 WTO체제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主流가 바로 無限競爭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깥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 안에서도 변화의 물결은 높습니다.

그동안 적대와 긴장으로 이어졌던 분단의 시대가 이제 막바지에 이른 느낌입니다. 경제분야에서도 통일과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분위기입니다. 한 마디로 더욱 치열해지는 무한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아울러 통일에도 대비할 수 있는 總體의 力量을 키워 가야 합니다. 마침 OECD 가입이 1996년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앞으로 一兩年 안에 先進經濟 진입을 위한 기본 '틀'을 갖추어야만 하겠습니까.

이처럼 앞으로의 몇년 동안이 우리 경제의 제2도약을 도모하는 데 결정적 시기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共感帶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全經聯에서 이번

실제상 그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는 엄연한 國政指標가 되어 있으므로, 나름대로의 개념정립은 긴요하다고 믿습니다. 원래 정책목표가 되었던 학문연구의 테마가 되었던 간에, 각자의 의도나 취지에 따른 편의적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국가경쟁력 논의를 위하여도 마땅히 우리 나름대로의 국가경쟁력 개념부터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절실합니다.

#### 선진국들의 규정 예

우선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가경쟁력의 개념을 一瞥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美國 '산업경쟁력에 관한大統領委員會(President's Commiss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는 국가경쟁력을 '자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면서, 개방된 국제교역시장에서 경쟁에 적합한 재화/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狹義로 보아 경쟁을 위한 생산능력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非營利專門家 그룹인 '경쟁력 협의회(Council on Competitiveness)'도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와 교육이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와 이웃한 日本에서도 최근 다른 나라와 경쟁력을 비교·분석한 결과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초점을 생산성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經團連에서 종합 정리한 '일본 기업의 경쟁력'(1992)에 의하면 한 "나라의 평균 생산성이 높아져야 풍요로운 국민생활과 국제적 공헌의 원동력이 되는 국제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보았습니다.

#### 전문기관들의 정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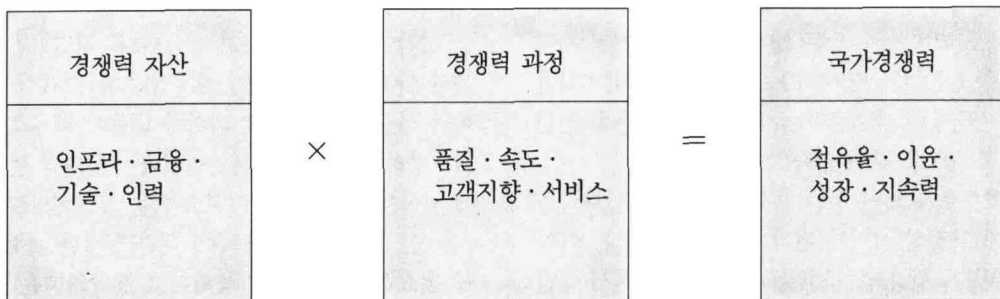
국가경쟁력에 관한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은 스위스에 있는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World Economic Forum)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기관의 「世界競爭力 報告書(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1993년)에 의하면 '자본·노동·최종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데 필요한 외국인투자·생산 설비·기술·마케팅 기량을 배양·유입하는 한 나라의 능력'을 국가경쟁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효과적인 경쟁을 위한 수단의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하여 IMD는 競爭力 資産(competitiveness assets)과 競爭力 過程(competitiveness process)이 결합하여 국가경쟁력을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쟁력 자산에는 인프라스트럭처·금융·기술·인력이 포함되고 경쟁력 과정에는 품질·속도·고객지향·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림 참조).

스위스에 있는 또다른 전문기관인 UBS(Union Bank of Switzerland)도 그 보고서(1993년)에서 '보다 나은 제품을 개발하고, 이들 제품을 세계시장에서 값싸게 생산·판매·서비스하는 기업들을 배양하고 유입하는 한 나라의 능력'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품질·가격상의 우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UBS는 미래의 경쟁력을 經營資源(resource endowments)과 管理效率(momentum of efficiency)로 평가하였습니다. 경영자원에는 物的資本 축적·교육투자·R&D투자 등을, 관리효율에는 GNP·상품/재화수

〈그림〉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요소



출·제조업생산성 등을 포함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IMD의 평가요소들과 大同小異하다고 봅니다.

### 포터교수의 이론적 입장

이 문제를 학술적·체계적으로 분석한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포터교수는 그의 著書인 「國際競爭優位論(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1990년)에서 '특정 산업에서 특정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범세계적 경쟁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그러한 산업이나 기업이 위치한 국가가 제공해 주는 독특한 요인이 있기 때문'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생산요소들의 조건, 기업의 전략과 조직, 聯關産業, 시장의 수요조건 등 네 가지를 국가경쟁력의 결정변수로 보면서, 정부정책과 突變機會의 두 가지를 外生變數로 추가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쟁의 동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 책에서 국가가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면 그 국가가 '기업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경쟁력의 우위를 생성·유지할 수 있는 場'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기업전략을 창출하며, 핵심제품 및 工程技術을 창조·보전하고, 가장 생산적인 작업과 높은 수준의 기능이 위치하는 本據地(home base)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고도산업분야 경쟁에서 승자들의 본거지가 되도록 하는 능력'이 한 나라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 실천적 개념으로서의 국가경쟁력

제가 이처럼 자세하게 국가경쟁력에 관한 여러 규정이나 정의들을 살펴본 것은, 그로부터 공통된 요소들을 찾아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들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첫째, 국가경쟁력을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 나라의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기업과 산업 및 사회전체의 세 수준을 포괄하는 나라단위의 능력을 지칭합니다. 경영자 여러분께서는 기업차원의 경쟁력을, 全經聯 등 경제단체에서는 산업차원의 경쟁력을, 그리고 정부로서는 나라의 모든 요소들이 결합된 국가경쟁력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소임이라고 하겠습니까.

둘째, 국가경쟁력 강화의 목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自國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는데 있어 보입니다. 물론 세계경제의 번영에 공헌하겠다는 의지가 아울러 표명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셋째, 경쟁능력의 실체, 즉 내용이 무엇이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생산성·생산력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경쟁력 자산과 경쟁력 과정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또는 경영자원과 관리효율의 결합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들 견해가 결국 '競爭資產(competitive assets)'과 그 資產의 운용효율을 높이는 '管理技倆(managerial competence)의 結合'으로 압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共通要素들을 토대로 우리 경제의 현 발전단계와 앞으로 전개될 도전상황을 감안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실천적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즉, 우리의 國家競爭力이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국제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나라전체의 대응능력'이라고 일단 규정하여 봅니다.

이 대응능력에는 위에서 인용된 '物的인 생산력'뿐만 아니라, 사회제도·관행·의식구조 등 '제반태세'의 정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인적·물적자본 등의 '競爭資產'과, 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융합시키는 '管理技倆'이 한 나라의 대응능력을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응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는 민간과 정부 간의 協同體(business-government partnership)를 형성해서 협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經濟企劃院에 부임하면서 언급하였던 기업과 정부 간의 역할분담론은 바로 여기에서 연유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경쟁자산면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하고 인적자본에의 투자를 확대하며, 관리기량면에서는 물가안정 여건을 조성하고 경쟁촉진 분위기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편 민간기업은 競爭資產面에서는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고 기술혁신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하며, 관리기량면에서는 빈틈없는 기업전략을 세워 미래를 지향하는 전략적 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의 정책운용 기초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할 일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활동을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기업이 마음놓고 뚝 수 있는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그 내용 또한 어느 선진경제 못지 않게 복잡다기화된 오늘날에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解法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민간경제주체들은 지구의 어디에서건 유리한 여건의 사업장을 찾아 자유롭게 입지를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개방의 시대입니다.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민간을 그대로 끌고 가려는 것은 정부가 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민간이 제아무리 정부에 기대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민간 사이의 기왕의 틀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여건의 조성이란 관점에서, 정부부문의 정책운용을 위한 필요조건은 경제체질의 안정화,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 인적자본에의 투자 등 세 가지라고 봅니다.

### 경제체질의 안정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물가안정체질로 만들어 가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물가안정은 비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要素費用(factor prices)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채로는 기업이 대내외의 가격경쟁에서 이길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안정되어야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임금·금리·지가 수준의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선진경제로 移行해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닦아난 경제의 인플레이체질입니다. 현재의 고질적인 6%선의 인플레이압력을 연차적으로 낮추어서 3~4%대의 안정체질로 바꾸는 일이 名實共한 선진경제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까.

앞서간 선진제국의 경험사례를 보더라도 인플레이율의 안정이 두드러졌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라와 연도에 따라 다소의 기복이 있습니다만, 선진 OECD 국가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3% 내외에서 안정

되고 있습니다. 85년부터 93년까지 9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을 보면, 일본이 1.7%, 네덜란드가 1.7%, 독일이 2.3%, 프랑스가 3.2%, 미국이 3.7% 등이며, 조금 높다는 영국도 4.7%입니다. 영국도 지난해에는 1.6%로 안정되었습니다. 이들 선진국의 경험은 높은 인플레이가 당장 생산성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가 진정된 뒤에도 결코 종전과 같은 생산성증가의 속도를 회복할 수 없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G7 국가에 버금가는 안정적인 中型 先進經濟를 지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인플레이율이 每年 3% 内外로 유지되는 구조적 안정체질이 자리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할 일은 자명해집니다. 생산·투자 등 실물경제성장은 민간기업의 활동에 맡기면서, 정부 역할의 초점을 물가안정 쪽으로 과감하게 옮겨가는 일입니다. 물가안정의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물가심리를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도 정부가 맡아야 할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경제의 활력있는 흐름은 올 하반기 이후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앞으로 實物經濟의 자연스런 흐름은 되도록 살려 주면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몇년 안에 물가안정구조를 체질화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다만, 앞으로 外換自由化와 자본자유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거시정책의 운용능력이 제약될 것으로 보이므로 안정적인 재정·금융정책의 기틀을 그동안에 닦아 놓는 일이 급선무라 하겠습니까.

우선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巨視政策을 운용할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통화공급이 많았으므로 실물분야에 별다른 주름살 없이 通貨增加率을 14% 내외로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훨씬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재정운용을 건전화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더 이상의 추경편성을 지양하는 동시에, 내년 예산은 가능한 한 다만 얼마라도 흑자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할 생각입니다.

###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으로 정부가 하여야 할 과제는 기업이 경쟁의 일선에서 마음껏 뚝 수 있도록 下部基盤과 설비를 확충하는 일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생산요소의 最適結合을 목표로 국경을 넘나들며 자유로이 입지를 선택하게 된 오늘의 현실에서 결국 각국의 경쟁력은 수입이 불가능한 인프라에 달려 있습니다. 인프라가 튼튼하여야만 경쟁력 있는 자국기업을 계속 간직할 수 있고, 경쟁력이 강한 외국기업을 새로이 유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인프라는 단지 社會間接資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그밖의 제도적 여건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작년 이래 역점을 두고 있는 규제완화 작업은 廣義의 인프라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사회간접자본에 있어서의 애로요인이 최근 몇년간 우리의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저하시켰습니다. 특히 도로·항만 등 物流分野의 애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수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가 交通稅의 신설 등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투입을 대폭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누적된 수송력 부족 때문에 그 타개책이 막막한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발상을 전환하여 기업의 활력을 이용하고 民間資本을 유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이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므로 연내에 시행령을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초부터는 민자유치사업이 본격화되도록 서둘 것입니다.

#### 人的資本의 투자

앞서 국경간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국가경쟁력요소로 인프라를 꼽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결국 '人的資本에의 투자(investment in human capital)'가 앞으로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그것이 廣義의 인프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앞으로 기업간 경쟁의 핵심이 될 기술력 수준 역시 한 나라의 人的資本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자본의 확충은 교육제도와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산업인력의 수급안정과 훈련이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前者의 교육문제는 순수 경제문제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언급을 삼가고자 합니

다. 다만,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가 간의 경쟁을 감안할 때, 우리의 교육이 앞으로 창의성 있고 경쟁력 있는 질 높은 인력을 배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어야 하겠다는 문제의식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겠습니다.

산업인력의 수급원활화는 보다 심각한 당면과제입니다. 경기침체기였던 92년과 93년에도 실업률이 2.4%와 2.8%가 될 정도로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일부 직종에서는 몇년째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89~93년의 5년 동안 매년 평균 17%씩 名目賃금이 올라 코스트 푸쉬 요인이 되었고,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만도 현재 6만명 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취업구조의 이면에는 아직도 산업인력화될 수 있는 상당수의 遊休人力이 발견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젊은 主婦인력입니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앞으로 3년 동안 공공기관·기업단위·지역단위별로 탁아소 설치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인력들에 대하여도 꾸준히 기술훈련이 이뤄져야 합니다. 動態的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인력의 지속적인 기술·기능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또 각자의 고용 자체도 불안해집니다. 이 일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써야 할 사항입니다만, 정부는 기업의 직업훈련시설이 확충되도록 앞으로 97년까지 3년간 6,300억원의 長期低利資金을 지원하고 14개의 공공 직업훈련원도 점차 기능대학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경쟁의 촉진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정책요건이 제대로 상승(synergy)효과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충분조건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바로 경쟁의 촉진이 그것입니다. 경제의 모든 구성구석에 競爭精神(competition spirit)을 浸透시키는 일입니다. 결국 경쟁력은 동의어 반복(tautology)이 되겠지만, 경쟁이 활성화된 체제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환언하면 경쟁력이란 곧 경쟁의 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부가 市場經濟秩序를 의도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기보다는 각종의 제약을 털어내고 경쟁과정을 통해 민간경제주체들이 스스로의 최적상태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쟁촉진을 위하여서는 안에서 진입장벽과 退出障壁을 허물어내야 합니다.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의 규제를 과감히 털어내야 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900여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200여건을 조치중이며, 22개 중점과제를 추가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과 함께 민간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융 등 기업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規制緩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무역장벽과 투자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정부가 WTO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서비스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개방을 받아들인 것은 궁극적으로 경쟁을 통한 플러스요인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關稅率을 대폭 낮추고 補助金을 정리하는 것도 유효한 대외경쟁여건을 조성해 주려는 것입니다. 지난 6월초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OECD에서는 1987년 競爭政策委員會(Committee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를 상설화하고 각국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경쟁정책의 테두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궁극적으로 경쟁정책에 관한 國際規範을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카르텔, 덤핑과 反덤핑, 국제적 企業引受·合併, 유통분야에 대한 정부규제 등을 대상으로 공통적인 規律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경쟁관련 제도와 정책을 실질적인 경쟁촉진의 방향으로 다듬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세계은행이 발간한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Infrastructure for Development)」題下의 94年度 報告書도 開途國의 사회간접자본 공급·운영에 비효율성이 많은 이유로 競爭原理의 缺如를 들면서 민간부문의 자율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企業의 역할과 행동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운용정책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한 것이 곧 기업의 의지와 행동입니다. 저 는 경쟁력 강화야말로 정부보다는 오히려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행동원리에 대해서는 구태여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經濟學의 A·B·C로 돌아오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반드시 거창하거나 획기적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사리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참 眞理는 평범한 상식 안에 있다고 하듯이, 기업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가격경쟁력·품질경쟁력·기술개발의 단순한 세 가지라고 제언하고 싶습니다.

### 우선 가격경쟁력부터

경쟁의 要諦는 우선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원리입니다. 포터교수가 제시하는 原價主導戰略(cost leadership)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격이 싸다는 것만큼 확실한 경쟁력은 없습니다. 제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운용의 첫번째 요건으로 물가안정의 여건 조성을 내세운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要素費用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임이나 금리가 안정되고 땅값이 내려간다면 그만큼 상품가격도 내려가야 합니다. 아니 그 이전이라도 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한 맘과 노력이 요구되는 냉엄한 경쟁환경입니다. 개방된 경쟁시장에서는 원가가 오르더라도 쉽사리 가격에 轉嫁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보다도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이나 자동화·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原價上昇要因을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외국의 우수한 기업들은 이른바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콘 카메라회사는 엔貨 환율이 달러당 80~90엔이 되더라도 버틸 수 있겠다고 합니다. 미국의 IBM社는 지난해 전체 인력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자동화 투자를 늘려 다시 黒字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많은 기업들도 이들 외국기업 못지않게 애쓰고 있음을 잘 압니다. 다만 그동안 '低能率-高費用'에 너무 익숙해 왔던 만큼 우리 노력의 강도가 더 높아져야 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품질도 높여야

우리 기업들에게 취약한 아킬레스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품의 품질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임의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상의 우위를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여건이므로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필수적인 기업의 생존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는 표준화된 대량생산의 시대가 아니고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이 생산되는 差別化의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품질경쟁력의 중요성은 높아 집니다. 포터교수가 제안한 2대 기본전략의 또 하나인 差別化(differentiation) 戰略이 바로 이것입니다.

差別化된 한 두개 품목으로 세계시장을 席捲하고 있는 미국·일본의 초일류기업들이나, 높은 품질의 새 제품을 만들어 경쟁하는 독일기업들의 전략을 우리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품질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倍加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안 세계시장에서 잃었던 우리 상품의 名聲을 되찾아야 합니다. 최근 그러한 노력이 여러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산업전반에 이런 기운이 자생적으로 뿌리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最高經營者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술개발이 열쇠

싼 가격과 높은 품질이 결합된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대내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 질수록 그만큼 기술혁신은 자생적으로 필요해집니다. 문제는 아직 우리의 기술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점이지만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일본기업들이 지금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은 80년대 이후 민간기업들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개발투자를 해 온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의 人的資源과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에 비추어 신기술 개발의 잠재력이 크다고 믿습니다. 또 최근에는 소재나 半導體 등 몇가지 실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에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쪽에만 치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개발된 尖端技術을 상품화하는 제품기술분야와 工程 및 생산관리기술분야에도 特長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필요에 따라 외국선진기업과의 戰略提携(strategic alliance)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분야에는 여러분께서 저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기술 개발 투자는 최고경영자가 얼마나 혁신적인 經營戰略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세계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으로 석권할 수 있는 틈새(market niche)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 전략적 경영이어야

마지막으로 저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효과적으로 묶어서 정부의 정책운용으로 조성된 유리한 여건을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려면, 한 가지 充分條件이 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업들이 각자 미래를 내다보는 확고한 기업전략으로 戰略的經營(strategic management)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전략적 경영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실제 경영일선에 계신 여러분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만, 외람되나마 다시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流動하는 불확실한 국제 경쟁여건 속에서 각자가 뚫고 들어갈 틈새와 그를 위한 最適戰略을 전략적 사고의 과정을 통하여 찾아주기 바랍니다. 경쟁자의 전략적 움직임(strategic move)을 만날 때마다 한 차원 높은 전략적 대응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업들이 앞으로 스스로의 戰略計劃을 수립하면서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IMD/WEF 보고서(1993년)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을 보면 보다 뚜렷해진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까 하여 그 요약내용을 말미에 참고표로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崔鍾賢會長, 그리고 最高經營者 여러분!

지금까지 국가경쟁력과 관련한 政府와 企業의 역할 그리고 그 상호관계에 대하여 평소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몇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경쟁력'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개념을 세워 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경쟁력의 강화가 우리 국정운영의 中心概念(key concept)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린 정의를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각자

스스로에게 합당하고 또 필요한 競爭力 概念을 지녀주셨으면 합니다. 그를 바탕으로 각자의 구체화된 실천목표와 행동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십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부의 政策運用 基調는 기업활동을 위한 여건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운용의 필수적인 요건은 경제의 안정체질화와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 및 人的 資本에의 투자 등이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려면 경쟁을 촉진해야 합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의 주도적 역할은 역시 민간기업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업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오히려 가장 원론적이고 단순한 것입니다. 저는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 및 기술개발이란 지극히 당연한 세 가지를 필수조건으로 보았고, 이들을 융합시키는 전략적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에서 最高經營者 여러분께서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영혁신에 관한 알찬 이론과 지혜를 섬취하셔서, 앞으로 우리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경제**

〈참고〉 IMD/WEF의 國家競爭力 결정요인(총371개 항목)

국내경제의 강점  
(Domestic economic strength)(45개)

\* 국내경제전반에 대한 巨視經濟的 평가

- 거시경제의 성과(30개)
  - 附加價値(경상 GNP · 1인당 GDP 등 10개)
  - 자본형성(국내총투자율 · 국내총저축률 등 6개)
  - 인플레이션 · 생계비 · 민간최종소비지출 등 14개
- 경제부문별 성과(15개)
  - 자본재 생산(제조업 중 자본재 생산비중 · 자본재 생산증가율 등 2개)
  - 산업생산동향(실질산업생산증가율 · 粗鋼생산량 등 6개)
  - 서비스(서비스부문 실질성장률 · 1인당 소매매출액 등 4개)
  - 농업부문(농업생산성 · 식품생산 증가율 등 2개)
  - 제조업 · 서비스업 등 산업별 GDP비중(1개)

國際化  
(Internationalization)  
(59개)

\* 국제교역 및 투자흐름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 대외교역(40개)
  - 교역수지(상품교역수지 · 경상수지 등 10개)
  - 환율(환율의 안정성 등 3개)
  -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상품/서비스 수출증가율 · 상품/서비스 수출의 對GDP 비중 등 13개)
  -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상품/서비스 수입증가율 · 상품/서비스 수입의 對GDP비중 등 10개)
  - 관광수입 · 수출시장다변화 등 4개
- 보호주의 조치(내외국인동등대우 · 이민규제 등 4개)
- 외국기업과의 제휴(국내외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정도 등 3개)
- 해외직접투자(해외투자액 등 3개)
- 외국인직접투자(외국인투자 流入額 등 3개)
- 문화의 개방정도(외국어교육 및 민족주의의 정도 등 6개)

政府 (Government)(55개)

\* 정부의 정책이 경쟁력에 기여하는 정도

-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도(24개)
  - 國債규모(중앙정부 총채무액 등 9개)
  - 정부지출(군비지출 등 4개)
  - 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 정도(정부보조금의 對GDP비중 등 6개)
  - 통화안정성·공적외환보유고 등 5개
- 立法 및 규제환경(8개)
  - 정부의 효율성 및 투명성(集權化의 정도 등 4개)
  - 로비 등 부적절한 관행·환경보호·농업정책 등 4개
- 통화 및 재정정책(15개)
  - 세제(총조세수입 중 법인세비중·소득세의 최고稅率 등 11개)
  - 재정정책·사회보장제도 등 4개
- 기업경쟁환경의 성격(反독점법의 시행정도 등 3개)
- 사회정치적 안정정도(국별위험 중 정치적 위험에 대한 평가·치안 등 5개)

金融 (Finance)(35개)

\* 자본시장의 성과 및 금융서비스의 질

- 금융의 이용 가능성(해외자본조달의 對GDP 비중·국내자본시장의 개방 등 10개)
- 주식시장(上場기업수·총유통주식금액 등 10개)
- 금융서비스(은행의 자기자본비율·국제적 규모의 은행의 수 등 9개)
- 자본비용 및 수익률 등 6개

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ture)(45개)

\* 자원과 시스템이 기업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지 여부

- 자연자원(24개)
  - 에너지생산(1인당 석탄생산·1인당 천연가스생산 등 6개)
  - 에너지소비(전체에너지소비 중 기업의 비중 등 3개)
  - 환경(자원의 재활용정도·이산화탄소 방출량 등 9개)
  - 에너지 자급자족의 정도·경작면적 등 5개
- 기업인프라(도로·유통망·텔레커뮤니케이션의 구축 정도 등 21개)

경영 (Management)(37개)

\* 기업이 혁신적이며 수익성과 함께 책임감을 갖고 경영되고 있는 정도

- 기업활동의 효율성(15개)
  - 생산성(제조업생산성·제조업 단위노동비용 등 5개)
  - 인건비/보수수준(시간당임금·제조업단위노동비용 등 5개)
  - 작업안전성·근로자 결근 정도 등 5개
- 기업가 활동(3개)
  - 서비스업체의 수 등

- 경영개발(9개)  
-정보기술의 이용정도·노사관계 등
- 기업성과(10)  
-제품개발소요시간·기업신뢰도 등

과학 및 기술(39개)  
(Science & technology)

\* 과학 및 기술능력과 기초 및 응용연구의 성공도

- R&D지출(10개)  
-총 R&D지출의 對GNP 비중·총 R&D 중 기업지출비중 등
- R&D인력(9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R&D인력비중·산업체 종사 R&D인력 등
- 知的財産權 창출(14개)  
-노벨상 수상자수·인구 10만명당 특허권 취득수 등
- 기술관리(6개)  
-미래의 R&D지출전망 등

人的要素 (People)(56개)

\* 인적자원의 이용가능성 및 자질

- 인구특성(8개)  
-총인구·인구밀도 등
- 고용구조(16개)  
-실업·주간근무시간·숙련노동력 이용가능성·동등고용기회 등
- 교육구조(14개)  
-교육제도·공공부문 교육비지출·文盲率·직장내훈련 등
- 삶의 질(8개)  
-1인당 여가활동지출비·중앙정부의 보건의료비지출 등
- 근로자의 태도·소득분배의 정도 등(10개)

자료 :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3」(IMD/WEF)

#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정비

지난해 12월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수산물의 관세화에 의한 개방이 현실로 다가왔으며, 소위 WTO체제라는 개방화 상황에 조속히 적응해 나가야 할 당위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 농어업이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이다.

우리 농어업의 현실여건을 살펴보면, 그동안 생산기반 투자를 상당수준 해온 벼농사의 경우에도

기계화의 전제가 되는 경지정리가 논 면적의 60% 수준밖에 되지 못했으며, 호당 경지면적도 1.3ha에 불과하여 겨우 자급농 구조를 탈피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인구 구조를 보면, 50세 이상이 62.4%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농승계자가 없는 농가가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주체의 인력기반이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 우리 농축산물 가격은 국제가에 비해 3~5배 높은 수준

전반적인 영농구조면에서도 좁은 땅에 토지이용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벼농사에 전체농가의 84%가 종사하고 있으며, 곡물농업에 비해 성장이 빠른 축산의 경우에도 해외사료곡물에 90% 이상



**김정호**  
농림수산부 기획예산담당관

을 의존하고 있고, 시설채소·과수 등도 아직은 영농시설이나 상품화 기술면에서 초기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격면에서 볼 때 쌀은 외국에 비해 4~5배, 쇠고기는 2~3배 높은 수준이며, 사과·배, 돼지고기·닭고기, 일부 화훼류, 약용작물 등 품질면에서 우수한 일부작목을 제외하고는 가격경쟁력면에서는 대부분의 농수산물이 외국산

에 비해 취약하다. 이와 같은 낮은 경쟁력 아래서 특단의 대비책이 없이 개방화를 맞이할 경우 국민식량 공급산업으로서 농업의 기반이 크게 위축될 우려마저 있다.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는 이번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농업부문의 완전개방이 아니라 국제가와 국내가의 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화 장치, 개도국 등에 주어지는 일정 개방화 유예기간의 확보, 최소한의 물량만 수입해도 되는 예외 조치 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예외조치를 충분히 활용하여 앞으로 10년내에 우리의 농어업을 일정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구조로 탈바꿈시켜 나가야만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구조개선대책을 통해 추진해온 농어업 경쟁력 강화시책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와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WTO체제

출범에 대응한 새로운 농어촌발전 전략인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 경쟁력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은 비록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상당한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빠른 시간내에 우리의 농어업구조를 선진농업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자세로 정부와 농어민 그리고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한다면 농어업도 새로운 발전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정책의 궤도수정 필요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어업 발전 전략의 과감한 궤도수정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업부문의 투융자 확대는 물론 관련 시책과 제도, 정책담당자의 시각, 정책추진방식 등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개혁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개방시대에 우리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끌어 갈 프로정신을 갖춘 '농어업가'를 양성하여야 하며, 농어업이 현대적 산업의 하나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와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야 하겠다.

또한 농어민·농어촌이 농수산물의 단순한 생산자나 생산기지가 아닌 유통·가공에도 참여하는 경영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농정의 기본틀을 바꿔야 하며, 낙후된 생산기반을 단기간에 현대화하고, 고품질의 기술·자본집약적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어업·농어촌발전의 주체는 농어민과 농어촌지역사회이므로 이들의 창의적이고 自助的인 노력을 유발·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어 관련 조직과 시책추진방식을 개혁해 나가고, 특히 농어촌지역의 각종 생활여건·교육·의료·문화환경 등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개선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업농어가 15만호를 육성하고 경영현대화를 위한

농업회사법인제도를 도입하며 농지제도를 새로운 여건에 맞춰 전환해 나갈 것이다.

또한 농업을 1, 2, 3차 복합산업으로 탈바꿈시켜 현대적 농어업구조로 발전시키고, 기술농어업 기반을 구축하며 품질위주의 농어업경영을 촉진할 방침이다.

것이다.

#### 핵심경영체 15만호 육성

농어업이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영농인력의 기술과 경영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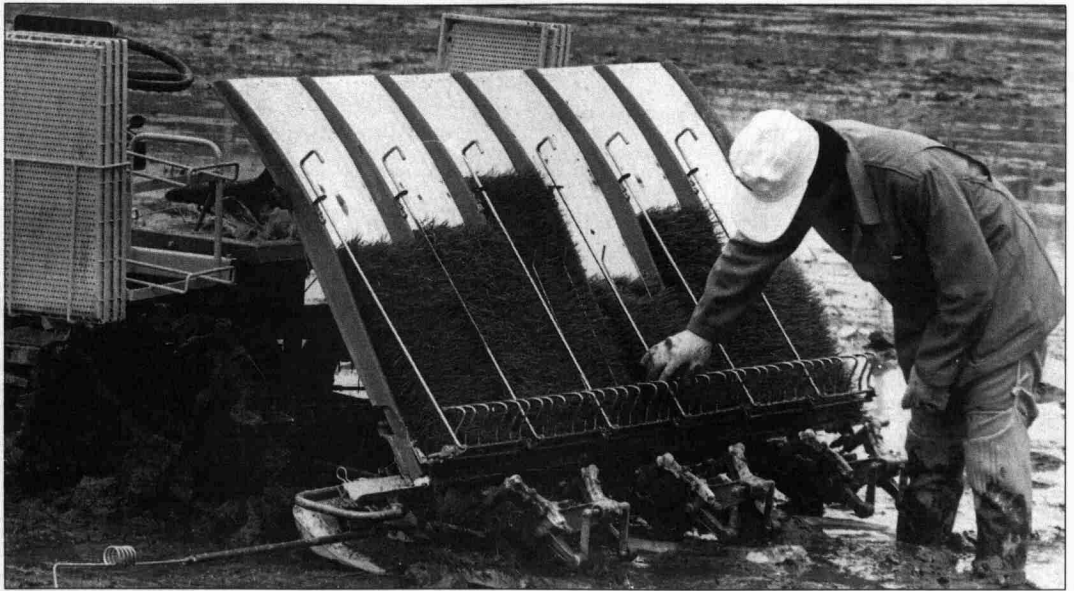
영농형태별로 농어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전문적인 가족단위의 전업 농어가 15만호를 육성하여 이들 농가에 대해 경영규모 확대, 기계화·시설자동화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수산전문기술대학을 설치하고, 도단위의 자영농수산 고교를 육성하여 졸업생을 농어민 후계자로 우선 선정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후속지원을 계속함으로써 전업농으로 단계적인 성장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일정 수준의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농어민에게는 '농어업사' 자격을 부여,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가지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 경영현대화를 위한 농업회사법인제도 도입

가족 전업농의 육성과 병행하여 규모의 이점을 살린 법인경영체를 육성, 기업적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이러한 경영기법을 인근의 전업 농어가에 확산시켜 나가되, 비농민의 출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농민의 주도적인 경영권은 보장해 나갈 것이다.

이들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창업과 시설·장비 및 운영자금을 종합 지원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공제기금·자조금 제도의 도입 등 중소기업 수준의 육성·지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여건에 맞는 농지제도로 전환  
 전통적인 자급자족농 시대에 맞춰진 현행 농지  
 제도를 과감히 개혁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새로운  
 체제로 정비해 나갈 것이다.

농지매입시 20km의 거리제한, 6개월의 사전거  
 주요건,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소유상한  
 을 폐지하고 농사짓기 어려운 한계농지는 비농민  
 소유를 허용하는 등 농지의 소유·이용관리에 관  
 한 방향전환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규제완화에 따라 예상되는 농지투기를 방  
 지하기 위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농지매매증명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自耕하지 않는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토지초과이득세·양도소득  
 세 등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자경하지  
 않는 일정면적 이상의 농지에 매도의무를 부과  
 고 기한내에 매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매수  
 하는 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농업을 1,2,3차 복합산업으로 탈바꿈

농어업을 단순히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  
 에서 앞으로는 생산에서 유통·가공·상품화에 이  
 르기까지 2,3차 산업이 동시에 병합하는 복합 산  
 업으로 탈바꿈시켜 생산에서 가공·상품화에 이르

기까지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현대적 농어업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농어민이 생산뿐만 아니라 저장·  
 가공·판매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품목별 전문생  
 산자단체를 육성하고, 벼농사의 경우는 미곡 종합  
 처리장과 연결하여 생산에서 도정·판매까지 같이  
 하는 쌀 전문의 생산·유통업체로 발전시킬 것이  
 다. 축산 농가는 도축·가공·판매 등의 시설을  
 갖춘 축산물 종합처리장과 계약 사육·납품·가공  
 하여 자기 상표로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계열화 방  
 안을 적극 강구하고, 이러한 농어업의 복합 산업  
 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민과 생산자 단체에 대  
 한 식품제조 가공업의 인·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하고 품목허가제는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 기계화·자동화 등 기술농어업 기반구축

우리 농어업의 취약한 여건을 감안할 때, 결국  
 농어업에 있어서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의 새  
 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98년까지 진흥지역내의 논 13만6천  
 ha의 경지정리를 완료하고, 2004년까지 집단화된  
 농경지 20만ha에 대해 대구획경지재정리로 대형  
 기계화 기반을 갖추어나갈 계획이다.

영농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매매 지원과 교환·분합사업 등을 전업농위주로 확대 실시하여 농장 단위로 기반을 종합정비하고, 벼농사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대형농기계의 일관작업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직파기계·무인헬기 등을 개발 실용화하는 한편, 축산·시설채소 등을 중심으로 시설자동화를 촉진하고 시설·장비를 국산화하며, 수출대상국의 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모델을 보급해 나갈 것이다.

또한 농수산물 기술 수준을 현장에서부터 끌어올리기 위해 농어촌현장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는 농어민과 전문가가 공동참여하는 실용기술 개발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농어업분야의 첨단기술 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유전공학·전자제어·기계설비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농수산 기술혁신에 접합시킬 수 있도록 연관 분야별로 동시·협동연구하는 체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술개발 투자를 해 나갈 것이다.

### 품질위주의 농어업 경영촉진

농수산물의 품질고급화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품종개량, 유기농법, 저장·관리기법 등 기술과 상품화 지원을 강화하고,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품질인증제', '표준출하규격' 등 규격품 출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개방화 추세를 활용하여 국내 농산물도 이제는 수출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경쟁력이 있는 과실·화훼·시설채소류·돼지고기 등 고품질규격품의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 품목별 경쟁력강화시책 추진

주요 농산물의 수입개방시기와 개방수준 등을 고려, 품목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경쟁력 기반 정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초식량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로 국제화·개방화의 파고가 우리 농어업에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기존의 42조원 투자계획만으로는 농어업과 농어촌을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42조원 이외에 국민성금 성격의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지원키로 하였다.

에 대하여는 일정수준의 자급기반을 유지해 나가고, 수출잠재력이 있는 품목은 국제적인 무역자유화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국내농수산물의 해외수출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다.

### 쌀은 계속해서 자급유지

쌀은 앞으로 10년 동안 국내 소비량의 1~4%를 수입하고, 마지막해에는 개방여부를 재협상하게 되어 있어 당장은 개방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나, 앞으로 기초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유지 확보차원에서 쌀 생산비를 40% 이상 절감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는 경지정리와 농업용수개발을 완전히 마무리하여 이를 토대로 영농작업을 완전기계화하고, 勞力費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직파재배를 현재 7만ha에서 2004년에는 70만ha까지 확대할 것이다.

또한 5ha수준의 가족전업농 10만농가와 20ha 규모의 영농조합법인, 50ha 규모의 농업회사법인 4천여개소를 육성하여 농지구입자금·농기계 구입자금·영농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벼농사의 구조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 현대화된 미곡종합처리장 400개소를 2004년까지 확대 설치하여 수확 이후 상품화 유통과정에서도 米質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다.

### 쇠고기·돼지고기의 품질고급화에 주력

쇠고기는 2001년, 돼지고기는 97년부터 수입이 개방됨에 따라 한우는 앞으로도 200만두의 사육기반을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첨단공학기술을 이용한 품종개량과 함께 한우의 육성기반 확보를 위해

송아지가격안정장제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우·젓소·양돈·양계 전업농 3만농가를 육성하여 축산의 전문경영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고, 양돈·양계의 경우 자동시설을 통해 경영비를 줄이고 품질을 고급화하는 한편, 축사시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축산단지 조성을 확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육류도체등급제와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한우전문판매점을 98년까지 700개소 지정·육성하여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의 시장차별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다.

#### 채소류의 시설현대화 촉진

채소류는 신선도 유지문제로 개방화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았으나 품목별로 주산단지 조성을 촉진하여 다목적관리기·관수시설 등 생산기반을 종합정비하고, 비닐온실에서 반영구적 자동화시설을 갖춘 유리온실까지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우량묘 대량생산시스템을 도입, 육묘와 재배의 분업화를 추진하여 생산비절감과 품질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채소가격 안정을 위해 농어민을 중심으로 수급안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관측을 강화하고 포전수매를 확대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과실류는 우리의 수출유망품목으로서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강하며 빛깔과 맛이 좋은 품종인 화홍(사과)·화산(배) 등을 수출유망품목으로 집중 개발하고, 생산비절감을 위해 약제에 의한 열매슈기나 자동봉지 씌우기, Y자형 재배 등의 기술을 중점 보급할 것이다.

#### 경쟁력 기반정비 위해 조기에 투융자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로 국제화·개방화의 파고가 우리 농어업에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기존의 42조원 투자계획만으로는 농어업과 농어촌을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



단하여 기존 42조원 이외에 국민성금 성격의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지원키로 하였다.

#### 42조원 투융자 3년 앞당겨

당초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 의해 92~2001년간 투자키로 되어 있는 42조원 투융자계획은 이를 3년 앞당겨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42조원 투자계획 중 중앙정부 부담분 35조원은 92~94년까지 이미 투융자한 약 10조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5조원을 98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94년 투융자사업비규모 3조8천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매년 20% 정도 증액된 수준으로 42조원 투자사업으로는 90% 이상을 농어업 경쟁력 제고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 농어민 자율추진방식 도입

지금까지는 구조개선사업이 정부 주도로 계획되고 지시·통제식으로 추진되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개선효과를 농어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개선 효과도 미흡하였다.

따라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농어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구조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하여 농어민자율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생산·유통·가공 등 농어민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내용과 조건에 따라 유형화·표준화하여 제시하고, 농어민은 정부가 제시한 사업내용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신청하고 동 심의회는 이를 공개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종전에는 정부가 대상자를 최종선정 또는 승인했었으나 이를 지양하고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된 대로 지방자치 단체를 통하여 농어민에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 별도 투자

농어촌특별세는 기존 42조원 지원만으로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우리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미흡했던 부분이나 농어촌활력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따라서 농특세 투자대상사업은 기존 42조원 사업과 다른 분야로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나 그동안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업, 그동안 농어민의 숙원사항이었던 사업, 농어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농어촌 환경개선 및 농어민 복지증진사업 등에 투자하게 된다.

사업별로는 첨단농수산물 및 현장애로기술개발에 5,040억원, 농수산물기술전문대학 및 자영농수산고교 지원에 2,500억원, 大區劃再耕地整理에 4조3천억원, 중소농가 고품질농업생산 지원에 2천억원, 물류센터 등 농수산물유통개선에 1조4,550억원, 농수산물신용보증기금 출연에 7천억원, 어항건설에 7,800억원, 양식어장 및 어촌종합개발에 5,735억원, 임도건설에 3,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농특세로는 산업으로서 농어업의 경쟁력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어업의 경영주체인 농어민들이 농어촌에 남아 도시 못지않은 생활수준을 이루어 나가도록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에도 균형된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도로·주택·용수개발 등에 10년간 4조1천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지역의 낙


후된 길·집·물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고, 농어민 연금·의료·교육서비스 개선 등 농어민 복지수준 향상 분야에도 1조8,1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농어촌 발전전략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未來像 밝아

73만ha의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배수개선·용수개발이 완료되어 대규모 기계화영농이 가능해지고, 미곡종합처리장·물류센터·축산물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생산에서부터 가공·판매까지의 계열화가 정착되어 유통비용 절감과 함께 농수산물의 높은 부가가치가 농어촌으로 환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선진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가족노동력만으로 도시부문과 소득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모화된 가족적 전업경영농가층 15만호가 육성되어 우리 농림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품목별로는 쌀은 10만호의 전업농을 중심으로 생산비가 크게 절감되고 미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여 수입가격 對 생산비의 차이가 현재 2.5배에서 1.3배로 낮아지고, 한우의 경우 3만농가의 전업농을 중심으로 생산비가 40% 이상 절감되어 수입가격 對 생산비가 현재 2배에서 1.6배로 낮아져 품질 차별화에 성공할 경우 값싼 외국산과의 경쟁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일부 과실류·채소·화훼·양돈·양계 등은 인근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상당수준의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체적으로 볼 때, 농어촌발전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2004년에는 우리 농림어업은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대규모 기계화·자동화 영농기반이 구축되어 생산비절감과 품질고급화가 크게 진전됨으로써 해외농산물과 경쟁여건이 조성되어 1% 내외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간 전업농의 경우, 농림어업 소득만으로도 도시수준과 균형을 이루게 되고 농어촌의 도로·주차시설·생활용수 등 기초 생활시설은 현재 중·소도시 수준까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어민연금, 내년 7월부터 전면 실시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각종 산업재해 및 실업 등의 量産은 물론 인구노령화 추세에 맞물린 전통적 가족구조의 해체·노인 부양의식의 약화 등이 빛는 노후 소득상실 또는 노후빈곤은 오늘날 현대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써 젊어서 소득능력이 있을 때 조금씩 돈을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을 잃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 본인 또는 유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해 주는 소득보장장치라고 볼 수 있다.

지난 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된 이래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등 약 500여만명이 현재 제도권



이형주

보건사회부 연금정책과장

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농어민 및 기타 도시지역의 자영자 등은 아직 당연가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계적으로 약 135개국에서 이미 가장 중추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노령인구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7천달러를 넘어선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전국민연금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은 경제발전수준에 걸맞는 사회보장체계의 구축 측면에서 볼 때 커다란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9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소득보장 적용인구 현황은 <표 1>과 같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대통령선거공약으로 95년부터 우선 농어민연금을 실시하고 90년대 후반기까지 도시자영자를 포함한 전국민연금을 실현시키기로 방침을 정

<표 1> 공적연금 적용대상 현황(93년 12월 현재)

(단위: 천명)

총인구	18세~59세	공적연금비대상 (생활보호대상 등)	공 적 연 금 대 상			
			적 용*		미 적 용	계
			국민연금	특수지역		
44,056	27,325	4,080	7,495 (32.2%)	1,814 (7.8%)	13,936 (60.0%)	23,245 (100%)

註: \* 공적연금 적용대상자는 배우자를 포함한 추정통계임.

한 바 있다.

새정부 들어서도 농어민연금 실시를 「新경제 5개년계획」의 사회복지증진 부문의 중점과제로 책정하고 그간 농어민연금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작업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의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95년 7월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최종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 공적 소득보장차원에서의 국민연금제도 도입 필요성 높아

농어민의 경우 인구노령화 정도가 한층 높을 뿐만 아니라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한 도·농 간의 소득격차나 농어촌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스스로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어려워 공적 소득보장차원에서의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어느 계층보다도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농어민연금이 당장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에 걸친 보험료부담을 전제로 하므로 시행과 동시에 바로 연금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늦출수록 노후소득보장문제가 사회적·정치적 이슈가 되어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다.

또한,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농축수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모색되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노후소득보장책을 마련해줌으로써 농어민의 위축된 심기를 어느 정도 전환시켜 주는 효과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농어민연금제도를 도입, 95년 7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다. 농어민연금의 당면 적용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자영자 및 도시거주 농어민이며, 각출료는 3%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농어민에 한하여 최저등급 각출료의 3분의 1을 農特稅 재원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 농어민연금제도 내년 7월부터 시행

정부는 그간 농어민연금추진실무반을 구성·가동하여 각종 세미나·공청회는 물론 충남 홍성군에서의 모의적용사업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제도시행의 골격이 되는 주요과제들을 검토하여 왔다. 그리고 지난 6월 농업정책심의회의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의 농어촌발전대책 보고를 통해 기본방침을 확정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95년 7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농어촌지역(군)에 확대 시행하되 각출료는 3%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농어민에 한하여 최저등급(22만원) 각출료의 3분의 1을 농특세재원에서 지원하며, 특히 시행 당시 고령 농어민의 가입연령을 65세 미만까지 연장허용하고 농어민연금의 기본업무는 국민연금전산망 중심으로 운영하되 일선업무는 의료보험조합과 연계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지난 6월말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 실시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였다.

〈표 2〉 농어촌 노령화 추이

(단위 : %)

	70년	80년	90년	2000년
농어촌 노인비율*	7.9	10.5	15.3	22.4
(전 국 평 균)	(5.4)	(6.1)	(7.3)	(10.0)
농가가구주 중 노인비율	15.2	20.3	29.1	35.7

註 : \*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자 비율



### 농어민연금 실시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확정

여기서는 농어민연금 시행방안의 주요 골격을 적용대상·각출료 부과 및 급여관리 그리고 정부재정지원 기타 관리운영조직 순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농어촌지역 농어민과 자영자 및 도시거주 농어민이 당연적용 대상

농어민연금의 당연적용 대상은 농어촌(군)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자영자 및 도시거주 농어민으로서 95년 추정대상은 약 206만여명에 이른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적용기준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사람을 당연적용 가입 대상으로 하되 18세 이상 23세 미만의 연령층은 주로 학생·무직자 등인 점을 고려하여 '加入留保'로 관리하고 가입후 군입대·질병·파산 등으로 각출료 납부가 곤란한 사람은 '각출료納付猶

豫' 등의 규정을 두어 자격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 당연적용가입자의 배우자·외국인·기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가입자의 배우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가입자나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노령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은 농어민의 특성을 반영하여 95년 시행 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고령 농어민에게는 가입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를 마련할 것이다.

농어민연금이 실시되면 현재 가입중인 농어촌지역가입자는 모두 농어민연금에 자동적으로 흡수되며 도시지역가입자는 현재의 임의적용방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한편, 지역간 전출입시 문제는 郡部지역에서 市部지역으로 갈 경우 가입을 임의화하며 시부지역에서 군부지역으로 갈 경우는 농어민연금을 당연적용받도록 처리할 방침이다.

각출료는 3%에서 시작하고

5년 단위로 3%씩 상향조정

농어민연금의 각출료율은 기존 사업장가입자와의 부담상의 형평성과 농어민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99년까지는 사업장가입자의 초기 각출료를 3%를 적용하고 그 후 5년 단위로 3%씩 상향조정 하게 된다.

각출료부과체계는 먼저 정부가 소득신고를 위한 기준자료를 미리 제시하고 가입자가 스스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소득등급을 정하고 소득신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를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병행시킬 것이다.

아울러, 모든 가입자의 등급별 소득분포가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최저등급소득(7만원)을 22만원으로 하고 최고등급소득(200만원)을 28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소득등급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할 것이다.

한편, 지급되는 급여로는 현행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및 특례노령연금을 그대로 적용하며 몇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현행 반환일시금제도 및 재직자 노령연금 관련규정 등은 합리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농어민연금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

농어민연금 실시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는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며 약 13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농어민에 한하여는 농특세 재원에 의하여 각출료의 일부(최저등급 각출료의 3분의 1)를 정액지원하게 되는데 95년 시행초년도의 정부재정소요는 관리운영지원비를 포함하여 약 660여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농어민연금은 향후 전국민연금의 실현을 고려하여 현행 국민연금전산망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각종 신고 및 민원상담 등의 일선업무는 읍·면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의 기능분담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어민연금이 실시되면 현재 가입중인

농어촌지역가입자는 모두 농어민연금에

자동적으로 흡수되며 도시지역가입자는

현재의 임의적용방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지역간 전출입시 郡部지역에서 市部지역으로 갈 경우

가입을 임의화하며 시부지역에서 군부지역으로 갈 경우는

농어민연금을 당연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앞에서 농어민연금실시를 위한 세부시행방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실시시기가 내년 7월로 확정되었으므로 이제 준비기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정부는 농어민연금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동으로 '농어민연금실시준비단'을 구성하고 이를 관리조직·법령개정·업무지침·전산운영 및 교육홍보 등의 5개 추진반으로 나누어 실제 시행에 따른 전반적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행방안 마련 전에도 충남 홍성지역에서 이미 1차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한 바 있지만, 금년말경보다 광역적인 표본지역을 선정하여 다시 한 차례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제 적용에 따른 세부 업무 처리방법, 효율적인 조직·인력 활용방안, 효과적인 對국민 홍보전략 등의 수립을 사전검증하게 되며 이를 위한 소요경비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반영시켜 놓고 있다.

이제 농어민연금이 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적 소득보장사업은 한층 더 튼튼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도시지역 자영자까지를 포함하는 전국민연금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  
▶

#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을 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발전의 혜택이 계층적·지역적으로 균등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계층적인 불균형 현상은 88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지역적 불균형 현상은 그 정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박윤형**  
보건사회부 지역의료과장

상태이다.

둘째, 농어촌의 경우 하루종일 일하는 노동구조 특성상 의료를 이용할 때 지불하여야 하는 화폐 비용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다 할 지라도 기회비용 즉 시간비용이 높아 의료이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농어촌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지 못하여 대도시 대규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이용 비용은 한층 높아진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주민의 의료균점을 통하여 의료이용 비용을 낮추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농어촌의료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농어촌지역의 의료균점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직접투자를 실시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간접지원을 통하여 의료기반을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보건수 등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인력 등이 부족하여 서비스가 미흡하며, 민간의료기관

## 도시에 비해 불리한 농어촌지역의 의료이용여건

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형 이외에도 농어촌 지역주민은 도시지역 주민과 비교하여 의료이용에 있어 여러가지 불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수준과 비례하는 건강수준이 낮고 또한 노동강도가 높아 의료를 이용할 필요성은 높은 데 반하여 의료공급은 열악한

〈표 1〉 도·농간 의료자원 불균형 현황(93년 12월 현재)

(단위 : 명, %)

	의료기관수		병상수		의사수	
		비율		비율		비율
군 부	2,818	10.1	23,830	14.5	2,566	6.8
시 부	25,022	89.9	140,758	85.5	34,934	93.2
계	27,830	100	164,588	100	37,500	100

은 농어촌지역에 개원을 기피하여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하고 질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그간 정부지원으로 건립된 농어촌병원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어렵게 형성된 농어촌 의료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

### 농어촌 의료공급체계의 근본적인 재편 필요

보건의료와 관련한 최근의 농어촌 환경변화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급속한 도시화 및 개방화에 따른 농어촌 인구규모의 감소 둘째, 평균수명의 연장 및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도시전출 증가로 인한 급속한 노령화 셋째, 소득수준의 향상 및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의료접근도의 향상 넷째, 도로교통의 발달로 인한 농어촌 지역개념의 변화, 오벽지 규모 또는 정도의 완화와 의료접근도의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농어촌의 의료환경변화는 의료수요 감소

농어촌지역 의료공급의 절대량부족, 낮은 서비스수준, 상대적으로 불리한 의료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94년부터 2004년까지 징수할 農特稅를 활용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초기에 집중투자함으로써 의료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적 측면과 의료수요 증대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고, 이러한 최근의 환경변화는 지금까지의 농어촌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 農特稅를 재원으로 농어촌지역에 의료공급 확대

농어촌지역 의료공급의 절대량부족, 낮은 서비스수준, 상대적으로 불리한 의료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94년부터 2004년까지 징

〈표 2〉 공공보건의료기능 보강을 위한 계획기간중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시설 보강	한방 장비	물리 치료	구급차	기동 장비	검사 장비	일반 장비	전산 장비	계
93,737	2,500	2,775	5,049	4,865	3,200	24,431	4,930	141,487

〈표 3〉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94년 예산	95년	96년	97년	계
보건의료원	13,060	30,627	30,627	23,376	97,690
신설	5,855	23,422	23,422	20,495	73,194
(2)		(8)	(8)	(7)	(25)
기능보강	7,205	7,205	7,205	2,881	24,496
(5)		(5)	(5)	(2)	(17)
보건소	5,188	10,376	10,376	9,857	35,797
(10)		(20)	(20)	(19)	(69)
보건지소	1,800	2,100	2,100	2,000	8,000
(180)		(210)	(210)	(200)	(800)
계	20,048	43,103	43,103	35,233	141,487

註 : 괄호 안 숫자는 個所를 나타냄.



수할 농특세를 활용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초기에 집중투자함으로써 의료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다만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 도로교통의 발달로 인한 奧僻地 지역의 축소 및 의료접근도의 향상 등 의료수요 증대적·감소적 환경변화의 동시적 진행을 감안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

중심권 즉, 도농통합적 중소도시에 의료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의료의 지역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의 지역화'를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분담 조정하고 최근의 초고속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이용한 원격의료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표 4〉 지역중심병원 설치대상

(단위 : 개소)

중진료권(A)	6대도시진료권(B)	대학병원 소재도시진료권(C)	도청소재지 등도시진료권(D)	원격의료시스템대상진료권(E)
140	6	10	8	118(A-B-C-D)

〈표 5〉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연도별 용자계획

(단위 : 백만원)

	95년	96년	97년	98년	계
장비보장	46,000	44,000	40,000	32,000	162,000
시설비	47,760	47,760	45,760	45,240	186,513
계	93,760	91,760	85,760	77,233	348,513

계획이다.

###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능을 개편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정책을 노인인구를 위한 물리치료·한방진료·방문진료 보건사업 강화,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주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포괄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개편하고 장비보강 및 시설증축을 추진하며, 시·군 통합에 따라 시·군 통합 보건소 모형을 개발하고 읍면당 1개소인 보건지소를 정주생활권 위주로 재편성하는 한편, 보건진료소를 생활권 변화에 따라 조정해 나갈 것이다.

### 농어촌의 진료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을 중진료권으로 구분, 중진료권당 1개소의 지역중심병원을 도농통합적 생활권에 지정 또는 설치하고, 이들 지역중심병원을 대도시 대학병원과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원격의료시스템은 畫像情報·음성정보·문자정보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기기를 통하여 대학병원의 전문의가 농어촌지역 환자를 대상으로 X-레이, 초음파, CT 사진을 판독하고 움직이는 영상을 보면서 환자를 관찰하고 대화하여 처방 및 진료를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병원에서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진료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지역중심병원의 역할강화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시설 재투자 비용 및 장비교체비를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면서 대학병원과 전공의 파견수련 등 협력체제를 강화, 인력지원을 실시하고 기술향상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에 의료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병원의 경영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정책을 노인인구를 위한 물리치료·한방진료·방문진료 보건사업 강화,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주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포괄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부에서 轉貸하여 도입한 차관의 환율급등 등 불가항력적 외부여건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보전하고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나 농어촌 의료기관의 재투자 여력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웠던 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교체비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처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농어촌지역주민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평생 건강관리를 받게 되고 발병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대부분 대도시 의료기관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중심병원에서 원격의료를 받게 됨으로써 그간의 도농간 의료격차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김원**

**내몸보다 나라먼저  
내똥보다 이웃먼저**

# 농어촌 도로 및 주거환경 개선

정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화·개방화에 대처하기 위해 금년 6월 14일 농어촌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종합대책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지역 개발을 위한 농어촌도로 건설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농어촌도로는 2004년까지 포장률을 93년말 현재 24.6%에서 85% 수준으로 제고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불량주택 및 취락구조를 개선하고 간이오수처리시설을 마을단위로 집약화하는 '패키지 프로젝트(package project)'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초마을 단위의 정주여건을 완비하고 수질오염도 초기단계에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도로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간을 연



**박성득**  
내무부 지역개발과장

결하는 지방도·군도 등 상위간선 도로와 연계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농어촌개발을 촉진시키고,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여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수산물을 도시지역의 소비자에게 빠른 시간내에 공급할 수 있어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농어촌 도로포장률,  
2004년까지 85% 수준으로 제고**

농어촌도로의 개발은 70~85년까지는 새마을사업으로 지역주민 및 해당지역 군수 책임하에 추진하여 오다가 86~90년에는 농어촌 소득원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수산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지개발·광산촌·정주권·도서낙도

〈표 1〉 농어촌도로 현황 (93.12.31 현재)

(단위 : 개, km, %)

	노선수	연장	포장연장		비포장연장
			포장률		
면도	2,210	10,686	2,831	26.5	7,855
리도	7,506	23,469	6,750	28.8	16,719
농도	5,627	12,746	1,935	15.2	10,811
계	15,343	46,901	11,516	24.5	35,385

사업 등에 이를 포함시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도로 상호간 교통망체계의 연계가 미흡하고, 도로너비·두께, 공법 등도 사업시행자별로 상이하게 개발되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 농어촌도로의 체계적인 정비 위해

#### 91년 관련법 제정

정부에서는 91년부터 「지방양여금법」의 시행으로 지방양여금 중 일정액을 농어촌도로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게 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도로망구성과 농어촌 실정에 맞는 시설기준 및 사업추진절차와 관리방법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위해 「농어촌도로정비법」을 91년 12월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농어촌지역의 1만5,343개 노선 4만6,901km의 도로개발계획이 고시되었고, 또한 「5개년(93~97년) 농어촌도로개발 중기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개발의 기준을 읍면별로 고시하여 지역주민에게 공람을 완료하였다.

그간 개발실적을 살펴보면, 91년부터 93년까지

정부에서는 농어촌 도로정비사업비의

지방양여금 배분비율을 현재 9% 수준에서 16%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재원확보대책을 마련, 향후 10년간 농특세·지방양여금·지방비를 합쳐 총 6조2490억원을 투자하여 2만6,766km의 도로를 포장함으로써 포장률을 93년말 현재 24.5%에서 85.0%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총 2,899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70개 노선 1,457km에 해당하는 도로를 포장하였다(〈표 2〉 참조). 또한 금년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1,327억원 그리고 도로추가사업으로 農特稅 650억원을 투자하여 총 847km에 달하는 도로를 포장하게 되면 금년말까지 포장률이 27.9%로 신장될 전망이다.

#### 향후 10년간 도로정비사업에

6조2,490억원 투자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국제화·개방화를 맞이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민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총 15조

〈표 2〉 지방양여금 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개, km, 백만원, %)

	노선수	사업량	사업비			포장률
			양여금	지방비	계	
91년 사업	222	316	38,992	4,290	43,282	24
92년 사업	414	567	79,352	34,008	113,360	23
93년 사업	434	574	93,302	39,987	133,289	25

註 : 재원의 구성비는 양여금 70%, 지방비 30%임.

〈표 3〉 농어촌 도로포장 중장기 계획 내역

(단위 : km, 억원, %)

	70~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2004년	계
사업량	11,516	1,584	2,560	2,560	2,560	2,560	16,526	39,866
사업비	6,380	3,455	5,884	5,884	5,884	5,884	38,954	72,325
포장률	24.6	27.9	32.4	36.9	41.4	45.8	85.0	

원의 농특세가 투자된다. 이 중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사업기반 확충 분야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는 2004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농특세 1조 2천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정비사업비의 지방양여금 배분비율을 현재 9% 수준에서 16%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재원확보대책을 마련, 향후 10년간(95~2004년) 농특세·지방양여금·지방비를 합쳐 총 6조2,490억원을 투자하여 2만6,766km의 도로를 포장함으로써 포장률을 93년말 현재 24.6%에서 85.0%까지 제고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향후 농어촌도로의 개발은 군도·농어촌도로의 도로망을 국도·지방도와 연계, 재정비하여 도·농간 접근도를 최대한 높일 예정이다. 또한 2004년까지 지방도와 군도의 포장을 마무리하면서 도심지역의 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4차선 확장, 읍면우회도로 신설,長大橋 가설, 터널 건설에 중점투자하여 교통정체·불통구간의 해소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패키지 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

한편, 지난 7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67년 2월 28일 제정된 「농어촌지붕개량 촉진법」에 의하여 초가지붕을 슬레이트지붕으로 개량하는 지붕개량사업을 위주로 추진하여 왔으나, 70년대 확산된 새마을사업에

따라 종래의 지붕개량사업을 76년부터 전면적인 주택개량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현재는 불량주택 개량을 비롯한 기초마을 단위의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심화되고 있는 지역수질오염을 초기 단계에서 예방하는 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 등 전반적으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농어촌종합대책에서는 농어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기초마을 단위에서의 개발이 종합화되는 이른바 '패키지' 방식을 지역에 도입하여 2004년까지 10년간 취락구조 개선 마을에 대해서 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기초마을 단위의 정주여건을 완벽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 불량주택개량 등 취락구조 개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매 5년을 주기로 지역의 주거환경을 조사하여 사업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92년 5월 현재 조사된 불량주택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전체 규모 284만6천동 가운데 62만4천동을 대상으로 정해 동당 1,6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락구조 개선 및 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에는 각각 3만5,053 마을 중 8,635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1억원을 보조하고 있다. 또한 입식부엌·화장실 등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은 전체 289만2천동 중 200만4천동을 대

〈표 4〉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적

	대상 사업		추진 실적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불량주택 개량	624천동	7조6,160억원	227천동	1조2,720억원	34%
취락구조 개선	8,635마을	5,830억원	3,939마을	1,134억원	45%
간이오수처리시설	8,635마을	8,626억원	87마을	78억원	1%
주택구조 개선	2,004천동	9,257억원	1,251천동	4,425억원	39%
계		9조9,873억원		1조8,357억원	

상으로 동당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76년 이후 금년까지 총 1조8,357억원을 투입하여 22만7천동의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3,939개 마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 농어촌지역의 18% 정도가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표 4〉 참조).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총 3조3천억원 지원**

농어촌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에는 농특세 1조3천억원 등 총 4조5천억원이 2004년까지 기초마을 단위에 집중 지원된다. 이 중 25만동의 불량주택을 현대식 농촌주택으로 개량하는 불량주택 개량 사업에는 농특세 8천억원에 지방비 및 주택기금 3조2천억원 등 총 4조원이 투자되고, 상수원 보호 구역에 위치한 2,500개 마을의 취락구조 개선과 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에는 5천억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기초마을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을 완결토록 함으로써 정주여건의 조성은 물론 농어촌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깨끗한 환경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상의 개선대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2004년 이후에는 농어촌지역의 54% 정도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취약지역의 주거환경이 대부분 개선될 것이다.

**생활여건의 획기적 향상으로  
'돌아오는 농어촌' 실현**

2004년까지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이 85%에 이르게 되면 농어촌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는 거의 포장이 완료되어 도·농간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농

농어촌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농특세 1조3천억원 등 총 4조5천억원이 2004년까지 기초마을 단위에 집중 지원된다. 이 중 25만동의 불량주택을 현대식 농촌주택으로 개량하는 사업에는 총 4조원이 투자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2,500개 마을의 취락구조 개선과 간이오수처리시설사업에는 5천억원이 지원된다.

어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으로 신선한 농작물을 도시에 공급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는 크게 신장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어민의 생활여건 향상과 직결되는 불량주택 개량사업과 취락구조의 개선 및 간이오수처리시설사업이 2004년까지 계획대로 추진되면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쾌적하고 편리한 전원마을의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기초마을 단위의 수질오염을 예방함으로써 하천이 깨끗해짐에 따라 청정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해지고, 이를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소득이 증대되는 등 궁극적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의 離農現象이 반전되어 살기 좋은 고향을 찾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가 재유입되고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총각 결혼 문제도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부 제공]

〈표 5〉 10개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95~2004년)

(단위 : 천동, 마을, 억원)

	95년	96년	97년	98년	99~2004년	계
불량주택 개량	25	25	25	25	150	250
취락구조 개선 및 간이오수처리 시설	250	250	250	250	1,500	2,500
사업비	4,500	4,500	4,500	4,500	27,800	33,000

# 농어촌 생활용수의 획기적 개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이 낙후지역이 아니라 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어촌 거주 주민의 소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은 물론 농어촌의 定住與件이 전원도시적 쾌적함과 편리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농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에는 풍부한 생활용수 공급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요소이다. 정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라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된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을 2004년까지 향후 10년간 획기적으로 확충시킬 계획이다.

##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은 31%로서 크게 낮은 수준

우리나라 수도사업은 크게 3분되어 있다. 주로 댐 등 대규모 취수원으로부터 취수하여 여러 도시를 광역적으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하천·저수지 등에서 취수하여 지방상수도 등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그리고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



이길섭  
환경처 상수도과장

어촌 자연부락의 간이상수도가 그것이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전체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수도 공급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시설을 인구가 밀집된 도시와 산업화에 필요한 공업단지 위주로 개발함으로써 도시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95%에 이르러 대부분이 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으나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은 31%로서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농촌주민의 대부분이 간이상수도 및 우물 등 자연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어 급수에 곤란을 겪는 것은 물론 정부의 수질관리에도 큰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다.

60년대 이전 농어촌에 간이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농어촌에서는 대부분의 생활용수를 우물이나 펌프에 의존해 왔는데 전국적으로 30%의 농어촌 주민은 자가우물이나 펌프를 이용하고 나머지 70% 주민은 10~15가구가 함께 쓰는 공동우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60년대 근대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농어촌지역에서는 공동우물을 개량하는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주민참여의 부진으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67년부터 정부에서 농어촌에 간이상수도를 도입

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지역적으로 시범마을을 지정하고 水源을 확보한 후 저수탱크를 설치하여 배수시설 및 염소소독장치를 갖추어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지역에서 이용하는 이러한 급수체제는 간이급수시설로서 67년 이래 3만5,553개소가 설치되었으나 관리소홀 등으로 8,324개소가 폐쇄되어 현재 2만8천여개소가 사용되고 있다. 농어촌의 간이급수시설들은 정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은 물론 시설이 노후하여 약 36%에 이르는 간이급수시설은 대폭적인 시설개량이 필요한 상황이고 상수원도 축산폐수 및 농약 등으로 수질이 날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

### 향후 10년간 1조2천억원 투입하여 농어촌 상수도보급 획기적으로 개선

93년 현재 농어촌 읍·면지역의 상수도 수요량은 하루 8만6천 $m^3$ 인데 2001년까지 향후 8년간 농어촌 상수도 수요량은 하루 174만2천 $m^3$ 로 급증하여 약 116% 정도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농어촌 물사용량이 증가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도시화의 확장으로 농어촌에도 수세식 변소·가정내 목욕시설·현대식 부엌 등을 갖춘 현대식 주택들이 건설되고 전통가옥이 개량됨에 따라 생활용수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다.

둘째는, 농어촌 생활수준 향상으로 1인당 물사용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농어촌에도 풍부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라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된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을 2004년까지 향후 10년간 획기적으로 확충시킬 계획이다.

는 기본적으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농어촌의 간이상수도는 마을 단위로 관리됨으로써 수질검사 기능이 없으며, 또한 시설관리가 부실하고 상수원이 고갈될 경우에는 풍부한 수량 확보가 곤란하여 자연적으로 간이급수시설이 폐쇄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따라서 농어촌에도 도시수준의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간이상수도 공급체계 대신에 지방상수도를 중심으로 한 상수도 공급체계가 필요하다.

광역상수도는 대도시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대규모로 공급하는 데는 효율적이나, 농어촌과 같이 마을이 산재된 지역에는 효율성이 낮을 수도 있으므로 지역여건에 따라 중소규모 댐 등을 취수원으로 하는 소규모체계로 개발하고, 광역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대부분 지역에는 중·소하천 및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하는 지방상수도 개발체계가 적합하다.

한편, 지방상수도를 개발하기 어려운 자연부락, 산간벽지 마을 등에는 암반지하수 등 양질의 수원을 취수원으로 하는 간이상수도를 개발하거나 기

〈표 1〉 생활용수 이용실태

(단위 : 천명, %)

	전국		도시		농어촌		비 고
		비율		비율		비율	
상수도	35,640	80	32,404	95	3,236	31	농어촌 상수도는 읍·면지역
간이상수도	4,834	11	276	1	4,558	44	
우물 등 자연수	4,140	9	1,557	4	2,583	25	
계	44,164	100	34,237	100	10,377	100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간이상수도 공급체계 대신에 지방상수도를 중심으로 한 상수도 공급체계가 필요하다. 지역여건에 따라 중소규모 댐 등을 취수원으로 하는 소규모체계로 개발하고, 광역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대부분 지역에서는 지방상수도 개발체계가 적합하다.

연부락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간이상수도를 신설·개량하는 것으로서, 농약·축산폐수 등에 오염된 자연수·우물 등을 이용하는 자연부락에 소독·여과 등 간이정수시설을 갖춘 상수도를 개발하고 기존 노후시설은 대폭 개량해 나가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정부에서는 농어촌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수준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농어촌을 살기 좋고 편리한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추진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향후 10년간 1조2천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농어촌지역의 상수도보급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투자를 위하여 효과가 큰 사업들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다.

본 사업추진에 따라 현재 간이상수도 및 우물 등에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농어촌 급수상태가 머지않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부**

존 노후 간이급수시설을 대폭 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지방상수도 신설, 지방상수도 확장, 간이상수도 신설·개량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첫째 방식은 지방상수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면에 산재되어 있는 부락을 통합해 응집·침전·소독·여과시설 등 정수시설을 잘 갖춘 지방상수도를 지역실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방식은 기존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시·읍지역 등 상수도가 이미 보급된 지역으로부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지역으로 시설을 확장해 나가거나, 읍·면지역의 인구증가로 추가소요가 필요한 지역에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세번째 방식은 지방상수도 개발이 불가능한 자

〈표 2〉 농어촌지역 상수도 수요전망

(단위 : m<sup>3</sup>/일, l, %)

	93년			2001년		
	수요량	보급률	1인당 급수량	수요량	보급률	1인당 급수량
생활용수 (읍·면)	806	31	249	1,742	54	305

자료 : 건설부, 「상수도 중장기계획」

〈표 3〉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추진내용

사업방식	사업내용	사업범위
지방상수도 신설	취수장, 정수장, 송·배수시설 신설	군단위
지방상수도 확장	기존 상수도시설의 확충	군단위
간이상수도 신설·개량	간이정수시설을 갖춘 간이상수도 신설·개량	마을단위



서주석

상공자원부 감사관

# 국제화 · 지구화 그리고 세계화

**최** 근 '국제화'와 '지구화'라는 용어가 그 개념이 명 확히 정립되지 않은 채 작년말 우루과이라운드협 정 서명 이후 '라운드'라는 용어와 더불어 너무 남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개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소 필자가 생각한 나름 대로의 개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제화'란 그 개념대로 2개 국가 이상의 국가간 관계요 이는 양자 및 다자 간에 국한되는 개념이나 전세계 국가를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에 대한 경제협력 개념은 양차 세계대전 이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교역분야 중에서 제조업 상품 중심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개념이다.

그러면 '지구화'란 개념은 어디서 왔는가. 이는 英語圈이 아닌 일본에서 만든 개념으로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여 경제대국을 지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조업 상품뿐 아니라 자금·인력·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경제학적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개념을 사용하여야 할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아직 국제화 단계도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화와 지구화를 앞장서서 주장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한다. 다만, 국제적인 조류에 부응하여 21세기에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국제화에 충실하면서 단계적으로 지구화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국제화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상품의 자유로운 국가 간의 이동을 촉진하는 한편, EU와 NAFTA 등 지역간 다자협력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북아 경제권을 중심으로 APEC 경제권으로의 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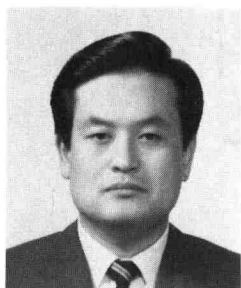
동시에 우리의 지역경제권을 EU와 NAFTA 블록경제의 장벽을 넘어 WTO체제하의 지구화로의 진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여야 한다. 튼튼한 쌍무 및 다자협력 기반이 없는 국제화는 공허하고, 지역주의(regionalism) 기반 없는 지구주의(globalism) 또한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금까지의 2차 제조업 상품 생산중심의 편중된 산업정책에서 제조업에 연관된 3차 산업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과 같이 높은 서비스부문의 비중은 그 구조면에서 선진국의 경우처럼 2차산업에 기초를 둔 고부가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유통부가가치에 의한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서비스 및 지적소유권 개방을 앞두고 우리의 경제에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획기적인 3차산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된다.

셋째는, 국제화와 지구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美·日 중심 내지는 총론적인 전략보다는 국제여건의 변화에 앞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미시적인 대처능력과 아울러 지구화에 대비한 거시적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여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우리의 경제력·인력 및 時空의 제약을 고려하여 국제화 및 지구화의 內包를 보다 충실하게 다지는 한편, 이를 기초로 그 外延을 확충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 아래 종래의 냉전구조와 지정학적 도식에서 조속히 탈피하여 地球經濟學(geo-economics)으로의 이행과 硬性經濟 구조에서 연성경제(soft economy)로의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인식하고 이에 맞춰 우리의 의식과 전략을 조속히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



전영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탱 가능한 개발

이제는 주말이면 시원하게 뚫린 아스팔트 길을 따라 시골길 드라이브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마이카시대가 되었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중고생들은 평균신장이 10cm 이상 늘어났고 국민평균수명도 여자는 75세, 남자는 69세에 이르렀다고 하니 개발의 성과를 만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낙동강 오염사태, 대도시 상공의 뿌우연 스모그현상, 주택가의 각종 소음·먼지 등을 생각하면, 개발로 인해서 과연 우리의 생활이 향상되고 안락해지기만 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개발과 환경오염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인간의 무모하고 탐욕스러운 개발행위가 없었더라면 생태계의 자정능력은 본래대로 유지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환경오염이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태계의 자정능력을 넘어선 인간의 개발행위가 계속되면서 개발과 환경오염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게 되었다.

92년 리오 환경정상회담을 계기로 유행하는 용어가 있다. 이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탱 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한다. 그 전까지는 개발이라는 용어에 그렇게 길드란 수식용어가 붙은 일이 없었다. 그저 '개발' 하면 경제개발이라는 말로 통용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생각한다.

60년대, 70년대 개발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흔히 울산공단 건설을 신호탄으로 시작되었던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들, 새마을사업, 그리고 국토종합개발 계획 등을 떠올릴 것이다. 마을 안길을 넓히든, 공단을 건설하든, 또는 신도시를 건설하든,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경제적 소득과 편익을 증진시키기만 하면 되었지 그것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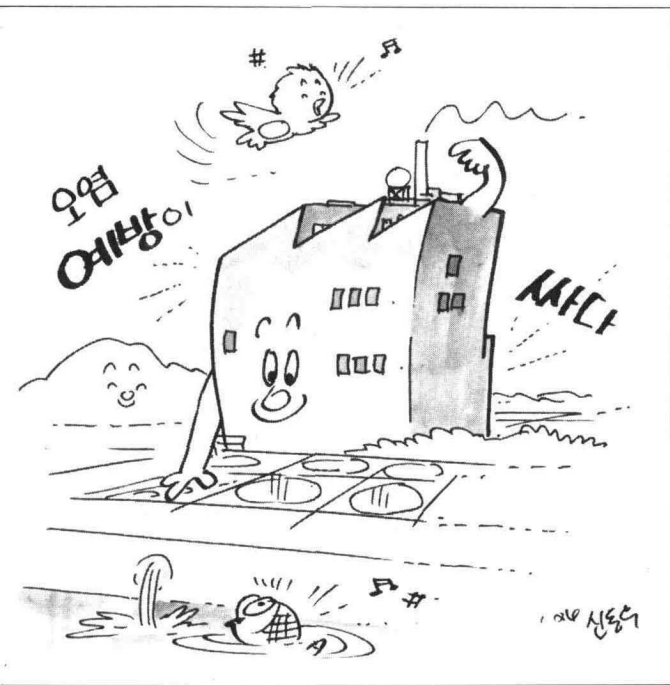
까다로운 조건은 붙지 않았다.

물론 개발을 양적으로 제약하는 조건은 있었다. 가장 문제되는 제약조건은 언제나 가용재원 부족이었다. 개발은 많이 해야 하겠는데 자본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오는 것이 70년대까지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던 것이다. 80년대 후반부터는 노동력 부족도 개발의 양적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러나 이것도 개발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동남아 각국의 저렴한 노동력이 힘들고 고되다고 우리가 기피하는 노동을 기꺼이 대신하겠다고 줄을 서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90년대 이후 개발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필자는 그것이 개발의 양적 제약조건이 아니라 質的 제약조건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개발의 질 또는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통제가 없어 왔으나 앞으로는 강화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개발의 질은 개발방식이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즉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탱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먼저, 환경적으로 건전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공해로 인한 피해수준이 생태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정능력 범위내로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개발의 제약요인으로 가용재원과 노동력 부족 이외에 앞으로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공법,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산공정을 갖추었는지 여부, 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의 획득여부 등이 크게 주목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그리고 환경처와의 협의과



정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고 또한 통과되어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그린라운드태풍이 곧 물러온다고 하는데 그린라운드의 내용으로서 환경경영규격 등의 도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탱 가능한 개발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火田의 경우처럼 농지개발을 하는데 그 농지가 1~2년 작물을 생산하고는 불모지로 변한다면 그것은 지탱 가능한 개발이라고 할 수 없다. 지탱 가능한 농지개발이 되려면 개발된 농지에서 현재 100섬을 생산하고 있다면 미래의 후손도 영구히 적어도 100섬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개발된 토지는 지녀야 한다. 이것은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영향을 현재의 시점에서 파악하였을 때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도 영구히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지탱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려면 앞서 언급한 환경영향평가제도도 미래의 영향정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끔 보다 평가기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피해구제제도의 경우도 현재는 과거에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피해분쟁조정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미래에 예상되는 피해까지 영구배상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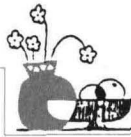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외부경제 효과와 외부불경제 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골에 갑동이란 양봉농가가 있다고 하자. 어느날 갑동이의 집 앞 야산주인이 아카시아 나무를 대량조림하였다. 다음 해부터 갑동이네 벌통의 벌들은 아카시아 나무에 날아가 많은 꿀을 따왔고 이로 인해 갑동이의 양봉수입은 크게 늘었다. 이 때 갑동이는 외부경제 효과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외부불경제 효과란 무엇인가? 세월이 흘러 어느날 이번에는 갑동이네 동네에 큰 공장이 들어섰다. 이 공장에서는 벌들이 싫어하는 악취를 뿜어내기 시작하였고 벌들이 벌통에서 달아나 갑동이는 손해를 입었다. 이것이 외부불경제 효과다. 원칙적으로 외부경제나 불경제 효과로 일어난 수익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거나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 밖에서 일어난 경제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불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최근 경향이 바뀌고 있다. 그것이 바로 환경오염 피해규제 제도의 사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어느 특정 기업이 갑동이 동네 공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갑동이를 포함하여 동네주민 전체가 사용해야 할 공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더럽혔을 때에는 더럽힌 데 대한 대가를 갑동이 동네 주민들한테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시장기구 안에서 이루어지기는 곤란하지만 최소한 갑동이의 경우처럼 손해를 본 것이 확실한 경우에 이를 배상해 준다면 시장기구의 불완전성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60년대 산업화에 들어간 이래 80년대까지의 개발시대에는 이러한 환경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91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하면서부터는 공기·물 등 환경자원은 더 이상 기업의 전유물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기업이 환경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환경오염 피해배상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배상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은 환경자원의 사용료가 비싸다는 것을, 따라서 환경자원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비용이 훨씬 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으로 하여금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경제



# 의료보장제도 개혁 시급하다



延河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의료서비스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려는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全國民醫療保險을 발전시켜 오는 과정에서 의료보험의 양적 확대에 주력한 결과 질적 수준은 크게 미흡하여 醫療需給者인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기관 이용시 보험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많고, 3차 병원의 환자집중으로 인한 장시간대기(3분진료에 3시간대기) 문제, 낙후된 응급의료체제와 공휴일·야간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편, 그리고 불합리한 현행 의료보험수가로 인한 진료왜곡현상, 지역 및 職域醫保의 형평성 제고문제 및 관리운영 資格管理의 효율성 미흡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21세기를 향한 '의료보장제도의 기본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의료보장개혁의 목표는 다음 세 가지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둘째, 제도 內的인 문제로서 계층간·조합간 형평성 제고 셋째,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이용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다.

향후 정책당국은 소득수준의 향상, 노인인구의 증가 등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욕구는 한층 더 높아지고 다양

해질 것이므로 이에 부응하여 의료의 질과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의료이용시의 불편·불만을 해소하고 농어민·노인세대·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조합간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부담의 형평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조합과 의료기관 운영, 의료이용체제와 의료수가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당면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7개 과제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醫療資源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둘째, 醫療保險酬價制度의 합리적 개편 셋째, 저소득층 가계 의료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급여범위의 확대 넷째, 국민의료 이용의 편의증진 다섯째, 재정이 취약한 지역 조합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여섯째, 개방·국제화추세 속에서 의료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약한 의료산업에 대한 의료기술 개발과 지원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3차 진료기관 이용시 의사의 구체적인 진료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3차 진료기관의 모든 외래진료과목(가정의학과 제외)에 대해 동일하게 실시하여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한다면 3차 진료기관의 환자집중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集團開院'을 유도하고 '開放型病院制'를 도입하며, 家庭醫 배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건소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1차 진료기관의 진료능력을 향상하며, 장기 요양시설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 酬價體系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는 현행 행위별 수가(fee for service)항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진료항목간 수가의 균형을 유지하고, 의료기관의 경영실적·의료원가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하여 적정진료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수가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물가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의료수급의 왜곡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와 관련당사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수가를 결정하는 새로운 酬價결정 매커니즘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 및 의료비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의료보험적용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CT·MRI 등 고가장비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조합 가입자에게도 성인병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사업을 내실화하며 지정진료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현행 '低負擔·低給與' 보험제도 내에서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公保險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보험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야간·공휴일에도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야간 외래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의료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병원의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응급의료체계의 확립과 함께 신속·공정한 판정을 내릴 의료분쟁조정기구를 설치, 조정전치주의 정신에 따라 소송 이전에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조합간 보험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금 중 일정률을 재정조정교부금으로 편성·배분하여 취약조합을 중점지원할 수 있는 국고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의료비 공동부담

사업을 실시하고, 고액진료비는 모든 조합이 공동부담토록 하는 재정조정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의료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각 조합별로 보유하고 있는 약 3조원에 달하는 의료보험 준비적립금 중 일부를 중앙에서 공동활용(각 조합의 소유권 인정)하여 가칭 '의료발전금고'를 설치, 의료기관 신·증설, 집단개원, 최신검사장비 구입 등 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사업에 장기 대여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관리운영체제는 현행 관리방식을 근간으로 하되 조합간 재정조정사업의 확대, 의료보험종합전산망 구축 등 실질적인 통합관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절충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진행중인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하여 생활권이 동일한 시·군지역조합을 통합하고 관리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소규모 직장조합을 통폐합함으로써 의료보험조합을 적정규모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보험 종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조합별 경영평가제를 도입함은 물론 조합별 적정인력을 재검토·조정할 수 있는 의료보험조합의 경영쇄신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의료보장제도를 개혁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료비의 상승과 국민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부담은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므로 우리 소득수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되 지나친 의료비 상승은 억제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총진료비 중 보험재정의 비중은 일본이 56.3%(91년)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32.0%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의료비 중 보험재정의 비중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보험재정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가계의 의료비 실질부담을 줄이고 전반적인 의료비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 수준을 점차 높여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필**

# 대기오염으로 인한 양봉피해 분쟁

정혁진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은 인간 및 주변 생태계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설령 공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대기 오염물질이 환경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일부 특정 동식물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별도 특정 악취나 대기오염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환경기준보다 낮은 오염농도에서도 이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벌에 대한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벌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인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은 환경기준 충족여부에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가 일어난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벌이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는 없겠으나 벌을 키우는 양봉농가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광양제철소 코크스 제조시설의 누출가스 및 정우석탄화학(주)의 악취물질로 인한 양봉피해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전남 동광양시 태인동 1516-3 서정영 외 10인인데 이들 중 서정영 외 1인은 광양제철소로부터 1.8km, 정우석탄화학(주)과는 이웃하고 있고(태인동), 나머지 9인은 광양제철소 및 정우화학으로부터 5~6km 떨어진 거리(성황동)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오래전부터 양봉업을 해오던 중 수년전부터 벌이 번성하지 않았으며, 특히 92년 11월초에 월동전 점검을 마치고 월동시켰는데 93년 2월에 보니 벌이 전멸한 것은 광양제철소와 정우석탄화학의 환경오염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 기업을 피신청인으로 8,4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전남지방환경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전남도위원회에서는 사건규명의 난이성을 들어 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하였다.

93년 8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대기오염과 양봉피해와의 상관관계를 상호 인정하고,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2,896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수락권고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수락거부를 통보하여 왔다. 이후 93년 12월 신청인들은 조정안을 수락거부한 상기 2개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재정신청을 본위원회에 제기하였다.

## □조정안 내용 및 피신청인 수락거부 사유□

조정안의 수락권고 내용을 보면, 광양제철소 코크스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대기 중 농도가 비록 고등동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저농도일지라도 오염에 특히 약한 월동기 꿀벌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우석탄화확에서 누출되는 여러가지 악취물질 중 크레오소오트는 악취가 심하여 농약에 혼합 살포함으로써 꿀벌을 농약 살포지역 밖으로 쫓아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문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월동중인 벌통 속으로 이들 악취가스가 스며들 때 꿀벌이 견디지 못하여 벌통 밖으로 나와 오염된 대기로 인하여 폐사 또는 동사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양제철소 및 정우석탄화확은 바다에 면하여 있어 해륙풍을 타고 오염물질이 피해지역으로 이동될 수 있으며, 이동된 황산화물 농도가 통상 최고치를 나타내는 오후 1시~4시에는 꿀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므로 오염물질이 꿀벌체내에 농축됨으로써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896만원 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편, 피신청인들이 이러한 조정안을 수락거부한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현장 조사결과 꿀벌의 월동지역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농약공해로 꿀벌들이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라는 점, 둘째, 피해자들의 현장 벌통에서 소충·석고병 및 기생충 등이 발견되었고, 90년 이후 각종 질병의 만연으로 봉군(벌통 속의 벌집단)폐사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들 전염병에 의해 폐사했을 것이라는 점, 셋째, 꿀벌은 5℃ 이하에서는 전신이 마비되어 24시간 이상 살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은 벌통문을 막지 않고 월동시켜 벌들이 밖에 나왔다가 동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조정안 수락을 거부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내용□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자, 신청인들은 피해당시에 월

동먹이인 꿀이 남아 있었으므로 아사나 동사한 것이 아니고, 겨울철은 농약 비사용기간이므로 농약피해도 아니며, 30여년의 양봉 경험상 어떤 질병으로도 꿀벌이 전멸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라고 주장하면서 93년 1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는 한 단계 격이 높은(법원의 2심에 유사)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동광양시 지역의 대기질 측정결과, 환경기준에 적합하므로 대기오염 피해는 아니고 신청인들이 벌통관리를 잘못하여 월동중에 벌이 밖으로 나왔다가 동사했을 가능성, 농약피해가능성 및 전국적인 양봉피해를 일으킨 가시용애 등 질병피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조정안 수락거부시의 논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지조사·전문가회의·문헌자료 등을 종합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재정결정을 내리고 있다.

### 〈대기오염과 양봉피해와의 인과관계〉

먼저 인과관계 결정을 위하여 양봉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첫째로, 동사 또는 아사피해 가능성인데 피해 기간 동안 여수추후소의 기상자료에 의한 피해지역 최저기온은 93년 1월 21일에 -5.5℃로 혹한은 아니었으며, 신청인들은 경험있는 양봉인으로서 월동전 점검을 하고 군세(벌의 세력)에 따라 합봉·먹이보충·보온덮개 등 충분한 월동조치를 하였고 월동먹이인 꿀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꿀벌이 폐사하였으므로 동사 또는 아사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둘째로, 농약 등 약제피해 가능성인데 피해양봉인 11명의 모든 꿀벌에 피해를 끼칠 정도의 농약사용은 항공방제밖에 없으나 피해기간인 92년 11월~93년 2월의 월동기간에는 동광양시에 항공방제가 없었고, 동광양시의 산림해충구제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제·방역은 92년 7월 2일~10월 1일 기간중에만 실시되었을 뿐 아니라 실시 전에 양봉농가에 홍보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농약 등 약제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셋째로, 월동중 질병피해 가능성인데 최근 수년에 심각한 양봉피해를 준 것은 92년 2월 중국 수입벌이 옮긴 꿀벌가시웅에 이 것은 成蟲에는 기생하지 못하며, 꿀벌의 幼蟲과 번데기에만 기생하고 그밖에 초크병·부저병 등 피해가 큰 대부분의 질병도 유충에 발생하므로 유충이 없는 월동기의 질병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넷째로, 대기오염피해 가능성인데 광양제철소와 정우석탄화학은 대기오염 대량 배출업소인 대기 1종업소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큰 공장으로서 광양제철소는 62개 배출시설에서 1일 약 3억200만 $m^3$ 의 배출가스와 10만kg의 황산화물을 배출하고, 4기의 코크스공장에서는 여러가지 유독성 가스가 누출되며, 정우석탄화학은 3개 배출시설에서 1일 약100만 $m^3$ 의 배출가스와 900kg의 황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는데 집진시설 등 방지시설을 통과한 후에도 1일 약 13만 $m^3$ 가 대기중으로 배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최종 배출가스에 벤젠·톨루엔·키실렌 등의 유해가스가 함유되어 주변에 악취농도 2도를 나타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꿀벌은 대기오염에 매우 약하여 지표동물로 이용되며, 특히 유충의 생존율이 도서지방 등 쾌적한 지역에서는 80% 이상인 반면, 오염지역에서는 10% 미만이라는 문헌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들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SOx·NOx 및 유해성 악취물질로 인하여 유충의 생존율이 저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월동 전에 젊은 벌로 세대교체를 해야 하는 꿀벌이 세대교체가 불충분하여 비교적 늙은 벌들이 월동에 들어가 월동기간중에 시나브로 죽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섯째로, 월동기 이전의 질병피해 가능성인데 피해발생 1년 후인 93~94년 월동기에도 피해를 입은 성황동 소재 양봉농가의 벌집시료를 한국양봉과학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꿀벌용애와 꿀벌가시웅에 피해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비록 신청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당시의 시료분석은 할 수 없었으나 그 당시(92년 6월 이후 92~93년 월동기전)에도 질병이 유충에 피해를

주어 월동전에 충분한 세대교체 없이 비교적 노봉(늙은 벌)들이 월동에 들어가서 시나브로 폐사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신청인들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과 악취가 당시 유행하였던 기생충 또는 질병과 相加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유충에 피해를 주어 충분한 세대교체를 하지 못한 채 비교적 노봉이 월동에 들어갔다가 폐사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또한 대기오염 영향은 피신청인들의 사업장으로부터 5~6km의 거리에 있는 성황동 양봉농가 보다는 약 2km 거리에 있는 태인동 양봉농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질병영향은 섬으로 되어 있는 태인동 양봉농가 보다는 내륙의 성황동 양봉농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배상 범위〉

먼저, 피해액 산정은 월동기간중 폐사한 봉군(벌통)수와 한 벌통이 1년간 생산한 꿀 수확량으로 한정하되 봉군당 손실액은 15만원, 1년분 꿀 손실량은 양봉은 연간 5되 한봉은 3되로 하고, 1되당 벌꿀 배상가격은 한국양봉협회에 문의한 결과, 시중시세를 적용하여 양봉은 되당 3만원 한봉은 되당 6만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 배상액은 이렇게 산정된 피해액에서 신청인과의 위치별 대기오염의 정도를 감안하여 태인동의 신청인에게는 피해액의 75%를, 성황동의 신청인에게는 25%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 □재정결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복 여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문은 94년 5월 28일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었으며,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당사자 어느 일방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는 재정결정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확정된다. 기일초과전인 현 시점까지는 아직 당사자 어느 측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이다. **법원**

# 경제관료들의 ‘원칙’ 과 ‘소신’ 을 기대한다

이광희

서울경제신문 기자/건설부

기자는 최근 들어 文民정부의 경제 철학에 대해 의문을 가져 보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비교적 심각한 상태에서 상념에 젖어 드는 게 대부분이다. 文民정부 아래에서의 관료들, 이들의 情緒, 이들을 수용하는 최고 정책결정자들의 행동양식 등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노라면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심경이다.

文民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경제관료들에 대해 “과연 이들이 작금의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자신의 판단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곱씹어 보는 것이다.

기자의 이 같은 생각은 변화하는 이 시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주역들은 바로 文民정부의 경제관료들이라는 思考의 根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기자의 눈에는 경제관료들이 품고 있는 작금의 情緒가 현실을 이끌어 갈 경제주체의 모습과는 다소 괴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暴風怒濤와 같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이들이 현실에 얼마나 제대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향로가 결정될 수 있는데도 다가오는 느낌은 그렇지가 않다.

官에서 民으로 경제의 주도권이 옮겨 가는 과정에서 경제가 정도 이상으로 왜곡돼 가는 것은 아닌지, 文民정부의 短期업적주의가 실무경제관료들의 장기적인 정책적 판단을 유보시키고 이 과정에서 경제관료들 특유의 원칙과 소신이 사그러드는 것은 아닌지, 이 때문에 ‘개혁과 변화’를 앞장서 이끌어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뒷전에 비껴서서 냉소주의에 젖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바가 하나 둘이 아니다.

이 가운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경제를 이끌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경제관료들이 지나치게 의기소침해

있지나 않은가 하는 점이다. 所以는 이렇다.

文民정부의 경제정책 기초가 지나치게 단기적인데다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이 아닌 정치적인 타협

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경제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업계의 목소리가 커진다. 또한 정치적인 타협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다운 정책논리와 행정의 金科玉條인 ‘견제와 균형’은 실종되는 양상이다. 정치적 논리는 原則보다는 變則,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단기적인 업적을 쫓기가 십상이다. 이 모두 경제관료들의 사기를 꺾기에 안성맞춤인 요인들이다.

예를 들어 보자. 건설부만 하더라도 울들어 관료들이 홍역을 치러야 했던 두 가지 정책이 있었다. 과밀부담금과 「공업배치법」 시행령의 대기업유치 문제가 그것이다.

수도권집중 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외쳤던 건설부 실무관료들의 소신이 ‘한푼이라도 부담금을 덜 내려는 가진 자들의 목소리’에 눌려 본래의 정책의지를 포기하는 결과를 빚은 것이다. 또한 1천만평이 넘는 지방의 공단부지를 버젓이 놓고도 수도권에 들어오려는 대기업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 해결의 과정에 민자당과 업계, 서울시 의회와 지방의회 등 非경제정책주체들의 논리가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은 기자의 눈에도 다소 못마땅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외부의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관료들의 확실한 논리와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民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官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래도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직까지 의식있는 관료들이라는 생각은 비단 기자만이 품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한민**



# 21세기의 시민과 공직자

‘차고앞 주차금지’ 주택가건 일 반도로변이건 차고 셔터마다 페인트 글씨로 큼지막히 쓰인 글씨를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용변은 화장실에서’ 만큼이나 당연한 내용의 이 같은 私製표지판이 전국을 뒤덮다시피하는 곳은 모 르긴 해도 이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제 차는 애지중지 조상 모시듯 닦고 광내면서 담배 궤초는 차창 밖이면 어디든지 거리낌없이 버리는 행태가 일반화한 곳도 여기말고는 드물 것이다.

동네 가까이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은 좋고 자기 집 옆이나 밑을 지나가면 당장 머리띠를 두르고 나선다. 제 것 이외에는 모르는 골목길의 조잡한 이기심이 제각각 대로상에서 뒤틀린 채 활개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조국근대화과정에서 빈부격차를 욱하고 민주화과정에서 군사독재와 반체제운동권을 동시에 욱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민정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편들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제 것이 귀중하면 남의 것도 그 이상 귀중하며 제 것이 존중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와 전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기본 룰은 자기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끝마다 민주주의다. 그러다가 오렌지족 아들이 재산을 노려 부모를 살해하고 방화했다 는 얘기를 들으면 모두가 이땅의 타락을 개탄한다.

얼마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은 누가 했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조사를 담당했던 연구원은 ‘남의 남은 바로 자기자신이 아니겠느냐’면서 웃었다.

공공기관의 일선 대민창구 서비스는 날로 발전하는 행정전산화와 공직자의 의식전환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얼마전 동사무소

박윤석

동아일보 기자/교통부

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던 한 중년 남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함부로 등본을 발급할 수 없다는 창구 여직원의 말에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따위 것을 요구

하느냐”며 별척 화를 내 주변을 실소케 했다.

그런가 하면 한 등기소직원은 전화로 등기부등본을 신청하는 민원인에게 “규정상 두장이므로 그 이상은 전화로 접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네 장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직원은 “다시 전화해서 두 장을 더 신청하면 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요즘 너도나도 쓴다. 정확한 표현인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전망을 담고 있는 사려깊은 용어인지는 잘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복지부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무원만 그런 것이 아니며, 또 어제오늘만의 일은 더욱 아니라는 점이다.

일제시대를 거쳐 전란통에, 또 개발독재와 군대식 사회생활방식에 한없이 길들여져 오면서 돈 하나 바라보고 모든 것 다 제껴둔 채 도다리 짝눈 모양을 하고 낮게 포복해온 우리 모두의 유산일 가능성이 많다.

공무원은 좋건 싫건 우리 사회의 두터운 자산이다. 대학이 어떠한 평가를 받건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간시설임에는 변함이 없는 이치와 같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公的인 일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직책이다. 오직 이윤극대화만을 보고 뛰는 기업인과는 애당초 격을 달리 하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권한과 세금을 위임받은 집단이다. 잘 나간다고 방종해서도 안되지만 뭐가 옛날같지 않다고 시들해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세상이 다 날뛰다 해도 자긍심과 굳건한 줏대를 가지고 2000년대를 준비해 가는 공직자와 생활인의 모습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영**

# ‘部處利己主義’인가 ‘견해차이’인가

공무원들은 종종 ‘部處이기주의’라는 표현에 큰 거부감을 나타낸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데, 언론에서 팬스레 부처이기주의니 뭐니 하며 비난하는 바람에 때론 일할 맛이 안 난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지난 6월 중순, 과학기술처 A국장으로부터 30분여의 취재를 마치고 방을 나서는 순간 그가 당부하는 말이 “부처 간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날 취재는 원자로의 계통설계를 누가 맡아야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상공자원부와 과학기술처가 보이는 입장의 차이를 확인하려 한 것이었다.

A국장은 이 자리에서 원자로 계통설계를 과학기술처(한국원자력연구소)가 관장해야 한다는 나름의 논리를 폈다. “어렵게 확보한 원자력 핵심기술을 당장 상공자원부(한국전력)로 넘기는 것은 원자력기술의 자립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은 그런대로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상공자원부는 지난 92년 원자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의 의결을 들어 원자력기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이관사업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기자를 포함)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원자력 계통설계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떠안게 되면 타국과의 기술경쟁이라는 부담도 따르고 여러가지로 힘이 많이 들 텐데, 상공자원부와 과학기술처가 각자 희생을 무릅쓰며 책임을 지려 하는구나”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아마도 소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거 밥그릇 싸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그 유명한 솔로몬왕의 재판 얘기가 있지 않은가. 아이 하나를 놓고 각자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솔로몬왕이 아이를 받으

## 김창엽

중앙일보 기자/과학기술처

로 갈라 가지라고 하자. 진짜 생모가 그렇다면 자기가 포기하겠다고 대답했다는 얘기 말이다. 상공자원부와 과학기술처의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

부처간 ‘이기주의’가 아닌 ‘견해차이’를 보이는 또 다른 얘기 하나. 바로 얼마전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고속전철 차량 도입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고속전철 도입 전에 가타부타 말도 많았지만 이왕 확정된 사업이니 성공적으로 끝내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이 사업의 진짜 성패는 고속전철과 관련된 첨단기술을 얼마나 이전받느냐에 달려있다. 돈 주고 전철 사오는 것이야 누구한테 맡긴들 못 해낼 리 없다.

그러나 기술이전이라는 것이 말만큼 쉽지 않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이 기술이전이다. 노하우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이전에 관한 한 주무부처라는 입장을 떠나서도 정부 부처 중에서는 과학기술처가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고속전철사업에 교통부와 함께 과학기술처가 적극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 과학기술처가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려 하자, 교통부의 관계자들이 시큰둥해 했다는 얘기가.

물론 응당 해야 할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과학기술처에도 책임이 없지는 않다. 이래서는 안된다. 교통부나 과학기술처나 모두 대한민국내의 정부부처다. 힘을 합쳐도 여의치 않을 판에 빼격거리는 소리가 밖으로 새서야 되겠는가. 신문에서 ‘부처이기주의’라는 표현이 쏙 빠질 날을 기대해 본다. **남원**

정부는 지난 6월 18일 CD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는 變動金利附債券(Floating Rate Note)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변동금리부채권의 의의, 도입방안, 기대효과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에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발행자는 유리해지는 반면, 투자자는 불리해지며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가 나타난다.

변동금리부채권은 이러한 고정금리부채권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투자자나 발행자 모두가 안심하고 투자하고 발행할 수 있는 채권발행제도인 것이다.

# 變動金利附債券제도의 도입

長期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의 도입필요성 높아져

올 6월 18일부터  
변동금리부채권제도 도입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9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OECD 가입과 함께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1, 2단계 금리자유화에 이어 3단계 금리자유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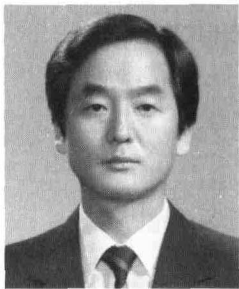
이러한 금융시장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금융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행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자금수요자인 기업도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변동금리부채권제도는 이러한 금융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초 브레튼우드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자 변동금리부채권이 유로시장을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의 자율화·개방화·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앞으로의 금리변동에 대한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변동금리부채권제도

變動金利附債券이란 每 이자지급시기마다 지급이자율이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채권을 말한다. 즉, 채권의 지급이자율이 매 이자지급시기마다 시장이자율에 연동하여 재조정되는 중장기 채권으로서, 만기상환일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固定金利附債券(Straight Bond)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자지급기간(통상 3개월)을 만기로 하는 단기 고정금리부채권을 만기 상환시까지 연속적으로 발행과 매입을 약속한 채권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변동금리부채권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되어 금리에 대한 장기예측이 어려운 시기에 금리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다. 고정금리부채권은 추후



강권석  
재무부 증권발행과장

가 채권의 발행자나 투자자 모두에  
게 금리변동의 위험을 줄여 주는 방  
안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장기저축  
인 개인연금제도의 시행과 함께 장  
기안정적인 자금운용수단으로서 장  
기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산업이 고도  
화되고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기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  
의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  
러나 현재의 우리 채권시장은 3년  
만기채권 위주로 발행되고 있어 채  
권만기의 장기화를 위하여도 변동금  
리부채권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  
이다.

### 91일物 CD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

변동금리부채권은 기본적으로 금

〈표 1〉 각 金利간 相關關係(93년 1월 3일~94년 5월 31일)

상 관 계 수		변 동 계 수	
회사채-콜	0.416	회사채	0.064
회사채-CD	0.952	CD	0.079
CD-콜	0.425	콜	0.133

〈표 2〉 각 金利간 장단점 비교

	회 사 채	CD	콜
장 점	· 시장실세금리를 가장 잘 반영 · 증권업협회에서 대표 수익률 발표(공신력)	· 만기구조가 변동금리부채권의 이자지급기간과 일치 · 단기 금리의 대표적 지표	· 초단기 자금 지표 · 시장환경 변화에도 금리의 영속성 불변
단 점	· 만기구조의 불일치 · 장·단기 금리차에 의한 금리왜곡 현상 · 회사채의 영속성 변질 가능성	· 통화신용정책의 영향 · 양건성예금의 성격 상존	· 만기구조의 불일치 · 1일물 중심의 거래로서 90일물의 콜 시장 미형성

정부는 지난 6월 18일 CD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는  
變動金利附債券(Floating Rate Note)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변동금리부채권은 每 이자지급시마다 지급이자율이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채권으로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되어 금리에 대한 장기예측이  
어려운 시기에 금리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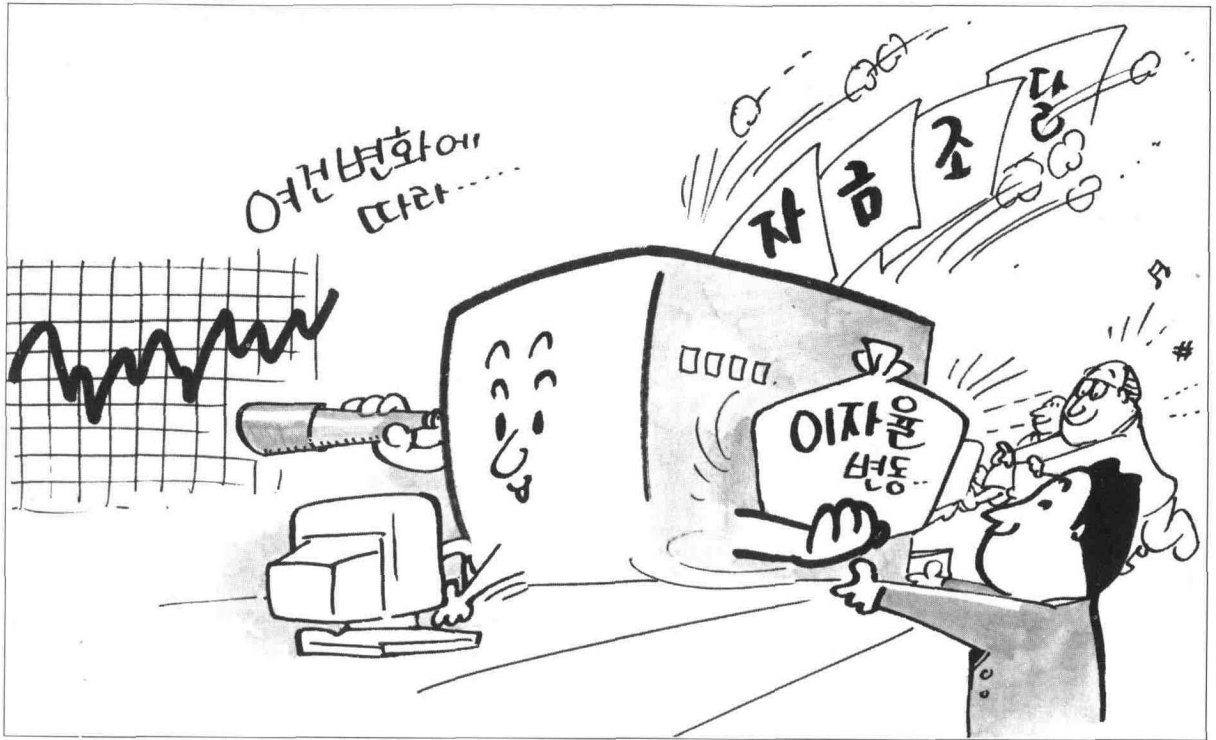
용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적절한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받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변동금리부  
채권은 이자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  
준금리를 무엇으로 결정하느냐가 가  
장 중요하게 된다.

기준금리를 잘못 선정하는 경우  
채권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됨  
은 물론 변동금리부채권제도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금융상  
품의 금리가 변동금리부채권의 기준  
금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

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기준금리가 되는 단기금융  
상품의 滿期構造가 변동금리부채권  
의 이자지급기간과 일치하여야 한  
다. 변동금리부채권은 차기 이자지  
급일 이후의 이자지급액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전체의 수익률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자지급기간을  
만기로 하는 단기고정금리부채권의  
성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변동금리  
부채권은 每 이자지급일마다 가격이  
원칙적으로 액면가로 복귀하여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 변동금리부채권  
의 단위 이자지급 기간중의 지급이  
자율과 시중실세금리인 기준금리가  
일치되어야 한다.

둘째, 기준금리는 시중 실세금리  
의 변동을 정확히 반영하고 신용도  
가 우수한 우리 금융시장의 대표적



금리야 한다.

셋째, 변동금리부채권이 장기채권의 발행을 위한 것으로 기준금리가 우리 금융시장에서 갖는 현재의 성질이 장기적으로 변동이 없어야 하며, 당해 기준금리가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

넷째, 기준금리는 발행자 및 투자자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참여자에 의한 操作 가능성이 없어야 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하여 신속하게 공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會社債 유통수익률(3년만기 은행보증회사채), CD(91일물) 유통수익률, 콜金利 등이 위의 기준금리의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변동금리부채권의 기준금리로 검토될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금리의 93년 1월부터 94년 5월말까지의 금리변동추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세가지 금리 모두 상관계수가 正(+)의 방향으로 나타나 금리의 변동방향이 일

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회사채와 CD의 상관계수는 0.952로서 相互程度가 높아 거의 동일시기에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변동계수의 경우 콜 금리가 0.1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장 금리변동폭이 크고 불안정하게 변동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이들 세 가지 金利를 변동금리부채권의 기준금리율로 채택하는데 있어서의 長短點을 요약비교하면 <표 2>와 같다.

세 가지 금리 모두 기준금리로서의 장단점을 갖고 있으나, 회사채 유통수익률과 콜금리는 만기구조가 우리나라 채권의 일반적인 이자지급기간(3개월)과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91일물 CD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표 3> 각 金利別 특성 비교

	만기구조	영속성	대표성	공신력
회사채 수익률	부적합	부적합	우수	우수
콜	부적합	적합	미흡	우수
CD	적합	적합	미흡	미흡

현재 CD발행이 兩健性預金の 성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고 발행한도가 제한되어 있어 CD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채택하는 데 취약점을 갖고 있으나, CD 유통물량이 일일 2천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어 '격기'로 발행된 CD가 유통시장에 나오는 경우에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비록 유통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것이 시중의 자금사정을 반영하는 것이 되므로 기준금리로 채택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CD 발행한도 제한은 금리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신속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앞으로 CD 유통수익률은 증권업협회가 매일 우리나라 10대 증권사에서 CD 거래에 따른 最終呼價收益率을 보고 받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 加算金利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다양한 부대조건 붙일 수 있어

변동금리부채권에서 기준금리에 가산되어 지급이자율을 결정하는 요소가 加算金利이다. 加算金利는 기준금리가 되는 단기금융상품과 개별 변동금리부채권과의 신용도차이 및 시장수급상황을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가산금리는 변동금리부채

變動金利附債券제도의 도입은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선진화에 기여할 뿐아니라 장기산업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91일物 CD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하고 加算金利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권발행주체의 신용도차이와 채권시장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발행자·투자자(인수기관)·주간사 증권사 간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변동금리부채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부대조건(option)을 붙일 수 있다. 변동금리부채권이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전제로 성립됨에 따라 금리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부대조건이 생겨나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도도입 초기단계에서 다양한 부대조건을 허용했을 때 투자자 및 발행자 모두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부대조건만을 선택적으로 설정토록 하고, 제도 정착과정을 보아가며 다양한 부대조건부 변동금리부채권을 발행토록 할 방침이다. 허용되는 부대조건은 최저금리 조건·조기

상환(콜 또는 put option)조건이다.

최저금리부 변동금리부채권은 지급이자율(기준금리+가산금리)이 최저금리를 하회하는 경우 최저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채권으로서 만기가 3년을 초과하는 채권에 한하여 허용될 것이다.

조기상환부 변동금리부채권은 일정기간 경과후 발행자 또는 투자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채권으로서 만기가 5년을 초과하는 채권에 한하여 허용하고, 부대조건 행사는 채권발행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시, 부대조건 행사전 3개월 전에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많아

변동금리부채권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발행주체별 가산금리(예시)

(단위 : %)

	정 부	정 부 투자기관	일 반 기 업			
			AAA	AA	A	BBB
가산금리	- 5/100 이상	0	+10/100	+15/100	+20/100	+25/100
지급이자율	12.45	12.50	12.60	12.65	12.70	12.75

註 : 기준금리가 12.5%일 경우임.

### 채권시장의 활성화 촉진

첫째, 채권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기 3~5년, 3개월 後給利 票債, 고정금리부채권 일변도로 채권발행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나, 변동금리부채권 발행 허용을 통해 채권발행자가 향후 금리전망에 따라 자기판단과 책임하에 자유롭게 발행 조건(변동금리부 또는 고정금리부)을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권발행조건이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이 장기금리가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발행자들이 장기 고정금리부채권 발행에 소극적이나 변동금리부채권 발행 허용시 滿期 5년 이상의 장기채 발행이 가능할 것이므로 채권의 만기구조장기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변동금리부채권의 경우 가격변동폭이 작고 가격계산이 비교적 간단하며 매 이자지급기간마다 항상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하게 되므로 일반인들의 투자성향에 가장 적합한 채권이 될 수 있어 채권시장의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선진화에 기여 둘째, 변동금리부채권제도 도입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선진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고정금리부채권만 발행되어 왔기 때문에 주로 채권을 편입하여 운용해온 신탁계정의 수익률이 시장실세금리 변동에 후행성을 갖고 있었다. 즉, 금리하락기에는 상대적으로 신탁계정의 금리경쟁력 우위확보로 시중부동자금의 유입현상이 두

드러졌으며, 유입된 자금은 채권의 추가수요를 일으켜 채권수익률 추가 하락의 원인이 된 반면, 금리상승기에는 신탁계정의 금리경쟁력 열세로 인한 신탁계정에서의 자금이탈로 말미암아 채권편입수요 감소와 채권수익률 추가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변동금리부채권 발행 허용을 계기로 신탁계정에서 일정비율의 변동금리부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수익률 後行性이 둔화되고 재정거래(arbitrage) 기회 감소로 금융시장에서의 금리변동폭 축소가 예상된다.

또한 CD 유통수익률을 변동금리부채권의 기준금리로 선정함에 따라 대표성 및 공신력을 제고시켜 CD의 발행 및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의 경우 CD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변동금리부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일정 스프레드를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CD 발행이 활성화될 것이며 단기금융상품 간 연계성 강화로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된다.

특히 변동금리부채권의 발행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교환하는 이자율 스왑(interest rate swap)시장이 형성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기법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장기산업자금 조달 용이해져

셋째, 변동금리부채권은 장기산업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변동금리부채권이 발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금융환경(특히 금리변동)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장기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해, 금리상승시에는 고정금리부채권의 경우 채권발행이 곤란해짐에 따라 더욱 높은 금리를 제시하거나 단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으나 변동금리부채권의 경우는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금리하락시에는 기업 스스로 장기채권발행을 회피하게 되나 변동금리부채권의 경우 금리하락 위험을 회피할 수 있어 장기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변동금리부채권의 加算金利가 기업의 신용도를 반영하게 됨으로써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부채권이 발행자측면에서는 장기채권이면서 투자자측면에서는 단기금융상품의 성격을 갖게 됨에 따라 단기유동자금을 장기산업자금으로 전환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자본의 회임기간이 긴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재원은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정금리부채권으로는 장기안정적인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게 되나, 변동금리부채권 발행의 경우 금리변동 위험을 헤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기안정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마련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

정부는 지난 6월 14일 「농어촌발전 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노력과 함께 농어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창의가 긴요하며, 사업추진 방식도 시·군에서 지역 부존자원 등을 감안하여 수

을 통한 농어촌 여론수집 활동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신정부 출범 이후 행정규제완화 시책의 추진으로 농어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된 것은 사실이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획일적인 시책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책을 추진하는 등 일선 농어촌 현장에서 농어민이 느끼는 불편 및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또한 기업의 불편사항은 다양한 지원체계(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설치된 기업애로신고센터 등)를 통하여 상당부분 해결되고 있으나 농어민의 불편사항은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농어민의 일상생활과 영농어 활동을 수행하는 데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이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농어민 불편사항, 이렇게 해결된다

립한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농어촌현장의 여론과 농어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지역특성 고려하지 않은 시책 추진으로 농어민 불편 커

그간 농어민의 현지 여론을 농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장·차관과 농어민과의 간담회, 농림수산부 직원들의 농어가 숙박체험, 벼농사·축산·원에 등 분야별 전업농 대표와의 대화 등 여러가지 방법과 경로가 있었으나, 대개 불만토로 등 일과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농어촌지도소를 통한 농어촌 여론동향 파악, 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2,260명)과 농림수산부의 농정 모니터(농수산통계요원, 농산물검사소 등 3천명) 등

## 농어민 불편·불만사항 발굴하여 개선 추진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장애요인이 되는 사항, 농어민의 불편·불만 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 위하여 농림수산부에서는 각 실·국 및 외청,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등 행정채널을 통하여 과제를 발굴함과 동시에 농림수산부와 관련기관 및 단체 직원들로 현지답사반(4개반)을 구성하여 금년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 총 24명이 전국 농어촌 현지를 방문, 농



**하영효**  
농림수산부 행정관리담당관

어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불편·애로 사항을 발굴하였다

이 기간중 총 300건을 발굴하였는데, 중복된 55건을 제외한 245건을 분야별로 보면 세제지원, 전기요금 인하 등 타부처와 관련된 규제완화가 95건, 농림수산부의 정책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정책사항이 150건으로 분류되었으며, 우선 150건을 대상으로 농림수산부의 '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46건을 개선과제로 선정·추진키로 하였다.

그리고 타부처와 관련된 95건에 대하여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쇄신위원회 또는 경제행정 규제완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어민들이 농수산시책에 대하여 가지는 불편과 불만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농수산시책 중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시책으로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아직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현실에 맞지 않는 축사설계도와 온실시설로 겪는 불편이 한 예가 될 것이다.

둘째, 부처간의 정책방향이 서로 달라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농림수산부에서는 화훼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지원·육성하고 있으나 보건사회부에서는 과소비 억제 차원에서 꽃소비 억제 시책을 펴고 있는 경우이다.

셋째, 홍보과정에서 농어민들에게 시책의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함으로써 불편을 느끼는 사례도 있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장애요인이 되는 사항, 농어민의 불편·불만 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키 위하여 농림수산부에서는 전국 농어촌 현지를 방문, 농어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불편·애로사항을 발굴하였다. 이 기간중 총 300건을 발굴하였는데, 우선 150건을 대상으로 농림수산부의 '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46건을 개선과제로 선정·추진키로 하였다.

다. 정부의 발표로 농지소유나 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농어민이 많으나 실제로는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겪는 불편이다. 즉, 정부의 '계획'을 당장 실현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일어나는 불만사항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의 정책내용과 농어민의 인식에 차이가 있어 농어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이다. 42조원과 농특세 투자계획 등 전체 지원액은 늘어나고 있으나, 개별 농어민의 입장에서는 담보 및 신용 부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불만사항이다.

끝으로, 공무원의 행태와 관련된 것으로서 계획수립이나 예산확보 노력에 비하여 정책집행 결과나 현지 확인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고 시·군 공무원의 자질에 비해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對民 서비스의 질이 떨어짐으로써 농어민들이 불편이나 애로를 겪는 경우도 많다.

### 농지관련 등 46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선

이번에 수집한 농어민 불편사항 중 우선 1차로 개선키로 한 46개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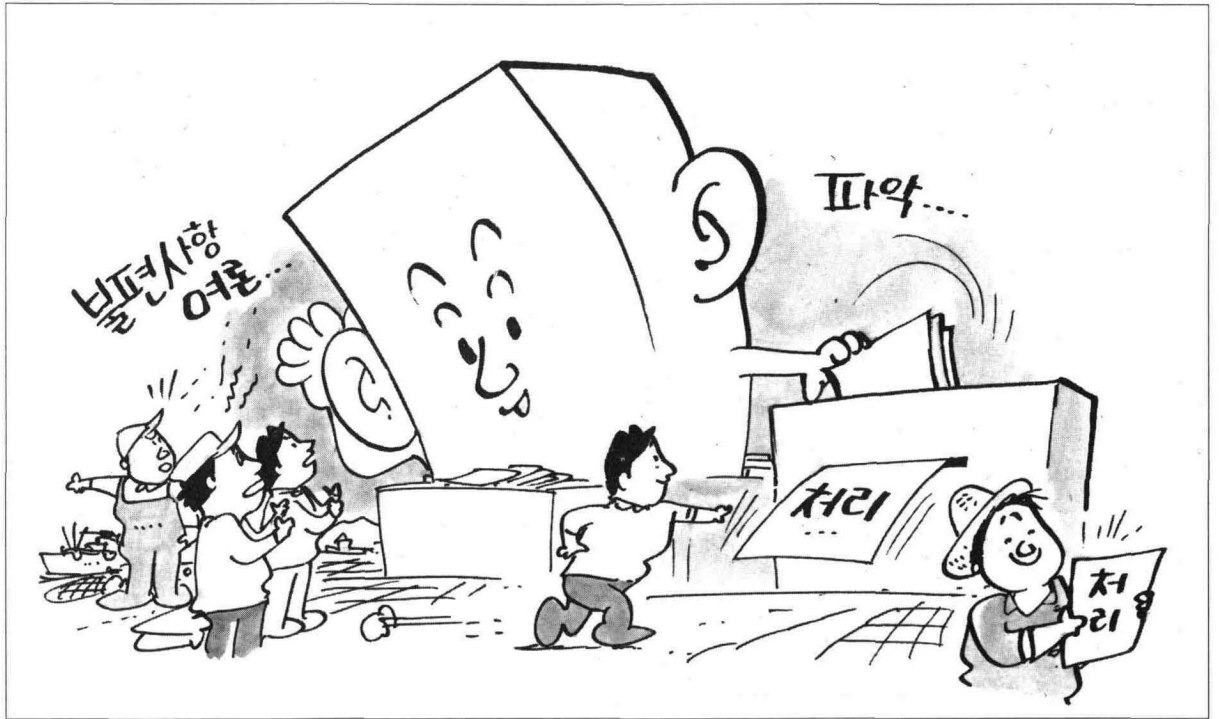
제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농지에 관상수 재배할 때 신고 및 허가사항 폐지

농지에 관상수를 심고자 할 때 종전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필요로 하던 것을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생략하고 관상수 재배의 신고 및 허가사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한 농지의 신고전용 면적 범위를 확대하여 위탁영농회사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로써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하여 현재의 1,500m<sup>2</sup>에서 3,300m<sup>2</sup>로 하고, 생산자가 설치하는 농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신고대상 및 농지조성비 감면 범위를 현재 3,300m<sup>2</sup> 이하만 허용하는 것을 7,000m<sup>2</sup>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3,300m<sup>2</sup>이하의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신고로써 농지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을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에 7천m<sup>2</sup> 이하의 미곡종합처리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농지소유상한제도를 완화하여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현재 20ha까지 소유할 수 있는 농지소유상한을 폐지하고, 농업



진흥지역 밖에서 3ha까지 소유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농업생산성과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농지소유 상한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소유를 위해서는 사전에 6개월 이상 거주토록 한 제도와 營農通作거리 제한제도(20km 이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6개월 사전거주제도는 이미 폐지하였고 영농통작거리 제한제도도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회사형태의 농업회사 법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주체로 육성하고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소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리고 농지 임대차계약의 신고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장기 임대하였다가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장기 임대차 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 매매증명 발급 및 농지원부 비치 업무를 시·구청장이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 집단화를 위해 분산된 농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비농민에게도 농지 매매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비료의 포장단위 다양하게 바꿔 농민의 편의 도모

현재 25kg으로 되어 있는 비료의 포장단위를 10~20kg 단위로 다양하게 하여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사업 허가자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일자를 7일 전 신고에서 9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여 잠업농가가 사전에 대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의 과수·원예농가가 미작 농가와 같은 수준의 조합비를 납부하던 것을 과수·원예 농가에 대하여는 물 사용량을 감안하여 농지개량조합비를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개량조합 재정자립 적립금의 용도에 대하여 채무상환·농지개량시설 개보수 사용분은 사용 승인 권한을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수익사업 등 기타 사업목적의 승인금액은 현재 5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시설원예농가의 부담을 경감

농가보급형 자동화 하우스 표준설계도는 현행 기본 표준설계도(13종)에서 광폭단동형 온실 기본설계도 5종을 추가로 개발·보급하여 시설원

에농가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그리고 화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사업체계를 개별 지원사업에서 농가 희망에 따른 종합지원사업으로 개선하고 개별 소규모사업은 전업농 육성사업에 포함시켜 지원하며, 수송 차량의 구입조건을 완화(2.5M/T 차량구입→2.5M/T 및 5.0M/T 차량구입)하여 화훼농가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다.

#### 축사의 표준설계도를

다양하게 개발·보급

축사의 표준설계도를 현지 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보급(기본모델 : 51종, 가변축사형 : 446종)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축산농가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사료작물 종자공급 체계가 균청과 축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축협으로 일원화하여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초지조정을 할 때 관계부서 협의 후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였던 것을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산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목적과 입지여건에 따라 조림 植栽本數를 ha당 3천본에서 2천~5천본으로 조정하고,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 등의 보호대상을 제외한 임야에 흑염소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종전에 허가제이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할 방침이다.

法上的 '농어촌 지역'을

직할시 이상 지역까지 확대

어민의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농어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농어민의 불편사항과 관련된 농어촌 여론동향을 계속적으로 파악·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농어민 불편 신고센터', '영농어 지원센터', '현장애로기술 지원반', '농어민 불편 법령·제도 개선반'을 이미 설치 운영중이거나 설치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어항법」에 의한 지원혜택이 없었던 자연어항인 소규모어항 중 항세가 신장된 항은 1.3종(수산청 관리) 또는 2종어항(도지사 관리)으로 지정·개발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바다에서의 실뱀장어 채포어업은 불법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실뱀장어를 잡을 수 있는 어업구역 및 채포어망을 합법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市 지역 중 실제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농어촌지역일 경우 각종 농어촌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지역'을 직할시 이상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민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여러 관련기관(농진청, 내무부, 시·도, 농협 등)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는 농어민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농번기를 피하여 농한기인 12~3월에 교육을 실시하되 합숙훈련은 가능한 한 다양하도록 하여 농어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불편을 최소화

이번 농어민 불편사항 해소대책은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농어민의 불편사항과 관련된 농어촌 여론동향을 계속적으로 파악·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시·군 단위의 한국농어민 후계자연합회 및 농·수·축협(농협의 경우는 읍·면단위 농협)에 '농어민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농어민 불편·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농림수산부의 '영농어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농민신문 등 농수산관련 전문지의 농어민 여론란을 활용하여 농어민의 현장 불편 및 애로사항을 계속적으로 수렴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수산청·산림청 및 농어촌진흥공사에 '현장 애로기술지원반'을 설치하고, 농지관련법 등 법령 및 제도로 인한 불편사항은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에 '농어민 불편 법령·제도 개선반'을 설치·운영하여 농어민의 불편·불만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환경문제를 경제발전과정에서 그간 다소 등한시 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환경은 일개 국가만이 노력한다고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지구'라는 공동체를 놓고 같이 공동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개선이 가

을 세워 나가야 할 분야가 아닐 수 없다.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실가스(탄산가스·메탄·CFCs·아산화질소 등)의 배출이 급증하여 지구 대기권의 연평균 기온이 과거 100년 간에 0.5°C 가량 높아졌으며, 온난화 현상은 최근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과거 140년간 지구 年평균 기온의 상위기록 6개가 80년대 이후에 세워졌다.

이러한 상승원인은 온실가스가 지구공간에서 50~100년간 머무르면서 지구지표면의 복사열의 발산을 막음으로써 지구안의 기온을 높이는, 즉 온실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온실가스가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면 CO<sub>2</sub> 66%, 메탄 15%, 아산화질소(N<sub>2</sub>O) 3%, 염화불화탄소(CFCs) 8%, 기타 8%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CFCs는 오존층 파괴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 현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온실가스를 부문별 배출비율로 보면 에너지부문 57%, 산업부문 17%, 농업부문 14%, 기타 12%로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이 에너지 사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상태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2030년경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 수준의 2배에 이르러 지구평균기온이 섭씨 1.5~4.5도, 해수면은 20cm 정도 상승하고, 2100년경에는 섭씨 3~6.5도, 해수면은 약 65cm 상승할 전망이어서 지구상의 기상이변, 강수량의 변화, 농작물 및 각종 생물의 피해, 지표면의 감소 등이 유발되어 생태계는 물론

#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

능하다. 지난 72년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표방하면서 세계 최초의 유엔환경선언이 채택되었고 80년대 중반 이후 동서화해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지구환경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 인류의 생존 위협하는 기후변화

기후변화협약은 현재 발효중인 160여개의 국제환경협약 중 하나로 92년 6월에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여 기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166개국이 서명하여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93년 12월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이 협약은 올해 3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는 우리의 경제 성장과정에 크게 고려되어야 할 협약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책



**정준석**  
상공자원부 자원협력과장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선·후진국 간에 異見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는 것은 세계 각국이 모두 인정하는 명분이지만 그러한 것이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논의되고 선진국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는냐 하는 것이 개도국의 불만이다. 개도국들은 그간 선진국들이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탄산가스를 배출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지구환경 파괴를 불렀다는 논리로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고 있다.

개도국 중에도 우리와 같은 선발 개도국은 OECD 가입을 추진하려는 현 단계에서 입장정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후발 개도국은 경제성장 추진이라는 명제를 목전에 두고 향후 에너지 사용에 직간접 규제가 예상되므로 여간 부담스러운 협약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선진국 주도의 환경규제가 개도국의 산업발전을 저해하게 되면 선진·개도국 간에 발전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어 지구상의 남북문제는 여전히 상존하여 오히려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현재 OECD 국가가 50%, 개도국이 25%(기타는 동구권 25%)를 배출하고 있는 데 비해 향후 개도국의 배출속도가 급증하여 2025년에는 OECD 국가가 33%, 개도국이 44%를 배출함으로써 개도국에 의한 배출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선·후진국의 입장을 떠나서 석탄생산국과 산유국들은 기후변화협약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감축될 것에 대비하여

기후변화협약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96년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선진국으로 재분류 압력을 받을 것이 예상되고, 98년 이전에 선진국 리스트를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어 우리는 선진국에 부과되는 의무조항인 재정지원, 국가정책수립 및 구체적 조치 계획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小島嶼國인 카리브해와 태평양군도의 36개 도서국가들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국토 및 자연상실을 우려하여 지구온난화 문제를 국가 생존권 차원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 기후변화협약 을 3월부터 효력 발생

금년 3월부터 효력이 생긴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안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畵文과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내용은 크게 각국의 의무사항·재정지원·기술지원·조직으로 나뉘고 있으며, 의무사항은 일반의무사항과 선진국이 지켜야 하는 특별의무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의무사항은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은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를 작성하여 당사국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방지에 기여하는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하고 공식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셋째, 국제 공동협력 사항으로 에너지·수송·산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기후변화 관측체계 확충, 산림 등 흡수원 보호 및 증진, 생태계 보호, 국민의 식 계도,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온실가스 통계와 국가정책 이행에 관해 당사국총회에 선진국은 협약발효후 6개월(94년 9월까지), 개도국은 3년 이내(97년 3월까지)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의무사항으로는 24개 OECD 국가 및 11개 동구권 국가가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비교적 구체화된 의무와 對개도국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 2000년경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온실가스 저감 및 흡수원보호를 위한 국가정책을 채택하며 구체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경제수단의 국제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에 노력해야 한다.

넷째, 국가정책의 이행실적,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제거량에 대한 향후 전망, 각종 정책 및 이행수단의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도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착실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사진은 광화학스모그현상으로 시야를 가리고 있는 서울 시내의 모습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향후 선진국으로 재분류될 경우에 대비해야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선·후진국 간의 장기적인 공동노력을 제시하고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도국에 대해서는 배출량 규제가 없고 의무불이행 국가에 대한 무역규제조항이 없어 당장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다.

同 협약가입과 함께 개도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특별의무조항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되므로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국가정책 이행 계획을 3년내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12개 연구기관이 95년말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96년에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다.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96년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선진국으로 재분류 압력을 받을 것이 예상되고, 더구나 EU는 98년 이전에 선진국 리스트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우리는 선진국에 부과되는 의무조항인 재정지원, 국가정책수립 및 구체적 조치 계획을 미리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현재 선진국이 추진하는 목표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해도 중장기적으로 감축노력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선진국들은 협약상 현재

의 의무사항이 협약목적 달성에 미흡하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부속의 정서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지는 입장이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화석연료 사용비중이 크고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구체화될 향후 부속의정서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구체화 및 강화에 대비하여 국내적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착실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각국이 에너지소비 절약을 강화시키거나 자국내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이용기기의 효율표시 및 최저효율 기준 설정으로 이에 미달하는 제품의 시장판매금지도 고려하고 있어 우리나라

라 제품의 對선진국 수출에 타격을 받을 우려도 있다. 따라서 각국의 대응전략이 지나쳐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한편, 에너지효율 개선에도 정책적 배려와 산업체의 기술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에너지 수급구조를 재조정하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개선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며,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대외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이산화가스 배출량, 2000년대에는 세계 10위권 될 전망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을 보면,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에 의한 비중이 49%로 가장 큰데, 이는 에너지 소비에 의해 주로 배출되므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구조를 우선 파악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소비 90년대에 와서 크게 증가하여 경제성장률보다 1.3 ~ 2.7배의 탄력성을 보이고 있고 선진국의 0.8수준보다 높으며, 그 결과 92년말에는 세계

11위의 에너지 소비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요의 대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여 1차 에너지 소비 중 화석에너지 의존이 82%로 OECD국가 평균의 6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장기전망에 따르면 에너지수요가 2010년에는 2억5,330만TOE로 92년에 비해 2.18배 수준이 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볼 때 92년 총배출량 7,770만 TC에서 1억5,800만TC로 증가하여

현재 세계 18위에서 2000년대에는 10위권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부속의정서 多者協商에 대한 대응책 마련

아직 눈에 보이는 직접규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곧 닥쳐올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 다자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는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대외적인 대응으로 정부간 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와 기후변화협약 정부간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적극 참여하여 패널과 협상위원회에서 우리의 특수한 입장을 사전에 이해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88년에 UNEP(유엔환경계획) 및 WMO(세계기상기구) 공동주관하에 설립된 IPCC와 90년 유엔총회 결의로 동 협약이 제정되고 이를 위한 INC가 구성되었다. IPCC는 그간 아홉 차례 본회의와 워킹 그룹 I·II·III별로 15차례의 전체회의와 3회의 워크샵이 개최되었던바, 우리나라는 이에 거의 참여하여 왔으며,

〈표 1〉 에너지/GNP 탄성치 추이

(단위 : %)

	81~85년	86~90년	91년	92년	93년
에너지소비 증가율	5.1	10.6	11.2	12.5	8.9
경제성장률	8.4	10.9	8.4	4.7	5.1
에너지/GNP탄성치	0.61	0.97	1.33	2.66	1.74

註 : 92년 탄성치를 선진외국과 비교할 때 일본이 0.84, 미국이 0.86, 영국이 0.46으로 우리나라가 현저히 높다.

〈표 2〉 장기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

	92년	2000년	2010년
에너지수요(백만TOE)	116.0	177.7	253.3
CO <sub>2</sub> 총배출량(백만TC)	77.7	121.8	158.0
1인당 CO <sub>2</sub> 배출량(TC)	1.8	2.6	3.2

註 : 미국 1310, 구소련 1090, 일본 및 독일 270, 영국 150, 캐나다 120 (88년 기준)

특히 IPCC 워킹 그룹 III에서 이회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앞으로 대외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C회의는 91년 2월 미국에서 의장단을 선임하고 분과위를 구성한 이래 연 3~4회씩 개최하여 모두 9회 열렸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모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왔다. 따라서 앞으로 INC 및 IPCC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선발개도국으로서 에너지 다소비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대해 이해시키고 외국의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국가보고서 작성에 많은 참고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외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올해 6월 국내업계·단체 및 연구소와 상호 의견교류 및 협상전략을 협의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부처간 의견조정과 협의를 위해 경제기획원·외무부 및 각 부처 장관 및 국장으로 각각 구성된 '지구환경 관계장관 대책회의'와 '지구환경기획단회의' 채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예상되는 규제에 미리 대처해가야 할 것이다.

#### 장기에너지수급구조를 재조정

첫째, 장기에너지수급구조를 재조정하여 석유·석탄 등 고탄소 화석연료의 비중을 낮추도록 중장기수급계획을 매2년마다 재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LNG發電 및 원자력발전 비중을 증대시키는 방향으

로 장기전력수급 계획을 조정해 가고 도시가스 공급의 대폭 확대도 예상되므로 LNG자원 확보 및 기반시설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대체에너지에 의한 의존이 1차 에너지 소비의 0.7%(93년)에 불과한데 이를 2000년까지 3%, 2010년까지는 5%에 달하도록 기술개발과 이의 보급에 주력해갈 계획이다.

#### 에너지소비 감소대책 추진

둘째, 에너지절약과 효율개선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절감목표의 60%를 에너지절약과 효율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에너지다소비업체(194개)에 대해 절약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에너지이용효율기준 및 효율등급표시제도를 확대 강화시켜 고효율 기기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을 연계하여 에너지절약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에너지 생산부문의 소비절약 체제도 강화하여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급사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효율이 높고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가 큰 지역난방과 열병합발전을 크게 확대해 갈 계획이다.


셋째, 에너지절약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산업체의 공동애로 기술로서 단기간 실용화가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술은 민간주도로 하되 개발능력이 취약한 기술과 대형종합기술은 정부주도로 개발해 갈 계획이다. 태양열·태양광·연료전지·풍력 등 10개 분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온실가스 저감기술 및 탈황 등 대기환경개선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에 주력

넷째, 국가보고서 작성에 충실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배출 흡수현황 조사 및 중장기전망, 온실가스 저감기술 현황과 저감방안, 에너지 사용규제가 산업체에 끼치는 영향,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협약 후속협상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95년 10월까지 마치고 96년까지 국가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국립환경연구원 등 12개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추진중이며, 95년에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94년에는 온실가스배출량 및 흡수량 전망부분을 완료하고 95년에는 대책분야에 역점을 두고 기술적인 저감방안과 정책적 대응수단을 제시하도록 하여 국가보고서 작성시에 이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탄소세 도입 등 산업의 경쟁력에 민감한 부분은 향후 국제동향과 국내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조심스럽게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앞으로 닥쳐올 그린라운드에 정부·민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리 대응해가고 민간에 대한 홍보와 설득, 의견수렴을 통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상황변화에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최근 급변하는 對內外 경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하나로 선진국간 경제정책에 관한 협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의

가입되었다. 이후 유럽이 단기간내 급속한 경제부흥을 이룩함에 따라 보다 광역적인 경제협력체를 창설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OECD로 확대·발전시키기에 이르렀다. 61년 9월 창설된 OECD는 현재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OECD 가입으로 국제협력체제에 동참

OECD의 설립목적은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공헌하며,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한편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확대에 근간을 두고 있다.

또한 OECD는 협상을 위한 국제기구가 아니며, 회원국 간의 상호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을 토의하고 협조·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클럽(Club) 형태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IMF 등과 같이 세계 선진경제에 대한 통계자료 및 연구결과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자료공급원이다.

OECD는 이사회, 26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 및 개발센터 등 반독립적 관련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全會員國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 정책문제의 토의·기구 설립·예산 승인 등 기구의 활동 전반에 걸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각료이사회와 상주대표이사회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실질적인 경제문제를 다루는 토의기구로서 26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재정·금융, 경제정책, 환경, 개발원조, 무역·해운 등)로 구성된다. 이 중 재정·금융관련위원회는 7개로서 자본이동 및 무역외거래위원회(CMIT : Committee on Capital Movements and Invisible Transactions),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

가입을 들 수 있다. 국제적인 경제정책 협조체제에 동참함과 동시에, OECD가 부과하고 있는 제반 자유화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對內 경제체제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진입해 나갈 수 있는 여건마련이 절실했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OECD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추진경위 및 가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함께 현재 가동중에 있는 대책반의 활동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 OECD, 회원국 간의 정책토의 및 협조·조정기구로 발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 지원을 위하여 제창한 마셜플랜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주경제협력기구(OEEC)가 48년 4월에 설



김정연  
재무부 금융협력과장

원회(CIME :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금융시장위원회(CMF : Committee on Financial Markets), 재정위원회(CFA : Committee on Fiscal Affairs), 보험위원회(AS : Insurance Committee) 및 통화·외환 문제위원회(Committee for Monetary and Foreign Exchange Matters)와 지불위원회(Payments Committee)가 있다.

사무국은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두뇌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토의의 근거가 될 자료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작업반 토의에 참가한다.

## 96년 OECD 가입 위해 금년말 신청서 제출 예정

우리나라는 91년 11월 최초로 「제 7차 5개년계획」에서 96년경 OECD 가입방침을 결정하고, 이어 93년 6월 「新경제 5개년계획」에서 OECD 가입여건이 성숙되는 96년말까지 가입이 실현되도록 제반 준비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OECD 정식 가입 전이라도 산하위원회에 읍저버(또는 정회원)로 가입하여 OECD의 업무·역할을 숙지하기로 함으로써 정부에서는 93년 7월 5개 재정금융관련위원회 읍저버 가입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자본이동 및 무역외거래위원회(CMIT),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는 각각 93년 12월 및 금년 1월에 가입하였고, 재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에 대한 사전대비가 가능해지고,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신속한 정보입수를 통해 대응능력을 제고시키며, 우리의 경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위상제고와 함께 국제경제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반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본격적인 개방화·국제화 축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정위원회·보험위원회는 늦어도 95년 상반기중, 금융시장위원회는 금년 하반기중 읍저버 가입이 실현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년 5월에, 외무부장관이 올 연말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며 96년중 가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OECD측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금년 5월 31일 OECD의 포터 국별심사국장은 駐佛 한국특파원 8명 등 각국 특파원 및 사무국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검토보고서 출간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포터 국장은 한국경제검토보고서의 의미와 관련, 한국이 정회원 및 읍저버 자격으로 OECD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고, 한국경제검토보고서가 비회원국으로서는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92년에 멕시코가 2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동 보고서는 가입에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나라의 보고서도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관련, 포터국장은 우리 경제가 30년전 세계 최빈국에서 최근 세계 주요 교역

국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 원동력으로 수출주도 경제정책, 건실한 재정정책, 높은 저축과 투자, 잘 훈련되고 적응력이 뛰어난 노동력 등을 열거하였다. 이와 아울러 과거 유효했던 행정지도와 차별적 규제에 한계를 지적하면서 「新경제 5개년계획」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민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新경제 5개년계획」의 금융시장 및 자본이동 규제완화 계획과 관련하여 동 계획이 97년까지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자본이동의 경우 대부분의 OECD국가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최근 재무부의 금융개혁 조기 추진계획을 환영하였다.

##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대한 사전대비 가능해져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했을 때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 경제권의 정책협회의場인 OECD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주의 심화 등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에 대한 사전대비가 가능해지며,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신속한 정보입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대외 경제현안 협의방식이 양자간(bilateral) 방식에서 다자간(multilateral)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특정 선진국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우리의 경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위상제고를 꾀할 수 있고, 선진국들과의 제도적인 정책협조 채널 구축을 통해 국제경제 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 반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선진국과의 정책협조 및 경제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본격적인 개방화·국제화 촉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 OECD대책반, CMIT 및 CIME에 관한 사항 중점 검토

OECD 가입준비를 위한 스타디 그룹 겸 대책본부(task force)로서 구성된 '재무부 OECD대책반'은 관련 부처·기관과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함과 아울러 재무부와 관련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OECD 재정·금융관련 위원회 중 핵심인 자본이동 및 무역외거래위원회(CMIT)와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등에 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대책반은 제2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4개반(자본거래반, 직접투자반, 보험반 및 재정반)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 OECD 가입준비를 위한 스타디 그룹 겸

대책본부로서 구성된 '재무부 OECD대책반'은

관련 부처·기관과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함과 아울러 재무부와 관련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OECD 재정·금융관련 위원회 중 핵심인 자본이동 및 무역외거래위원회(CMIT)와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등에 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금융협력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한 각 반은 재무부, 정책자문단, 법률자문단 및 은행·증권·보험 등의 전담실무진으로 구성된다. 정책자문단은 조세연구원·금융연구원·증권경제연구원 등의 전담연구원으로 구성하여 OECD 양대자유화 규약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법률자문단은 외환·증권·보험 등 각 분야에 있어 국내 유수한 법무법인(law firm)의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다.

## OECD 가입에 대비한

### 제반 사항 준비

대책반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간 외환·자본 및 서비스자유화를 규정하는 양대 자유화규약 및 OECD위원회의 결정·권고·지침·선언 등 제규정의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하게 된다.

둘째, OECD 관련정보를 효율적으로 입수·활용하고 한국경제와 관련된 각종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OECD에 대한 접근을 강화시키게 된다.

셋째, 3단계 금융자유화 및 시장 개방계획, 「新경제 5개년계획」,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 예시제 및 외환제

도개혁 청사진(작성중) 등 현재 추진 중인 자유화계획을 감안하여 OECD 양대자유화규약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함으로써 향후 OECD 가입에 대비하게 될 것이다.

## 향후 다양한 과제 추진

앞으로 대책반에서 추진할 과제는 멕시코를 비롯한 주요 OECD회원국들의 외환·자본관련 현행제도를 연구하며, OECD 자유화규약상 동 회원국들의 유보내용 및 그 논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6월 1일 시행된 외환관리규정 개정내용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OECD 자유화규약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제도 현황의 파악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외환개혁소위에서 작성중인 '외환제도 개혁 청사진'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 외환·자본제도의 향후 개정방향 및 OECD 가입관련 우리나라 유보(안), 자유화계획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이와 병행하여 논의된 사항들 및 수집자료들을 수시로 엮어서 OECD 관련자료 책자들을 발간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OECD위원회 관련 회의 및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

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국토개발시책을 추진한 결과 공업단지의 조성, 도로·항만 등 기간 교통망의 형성, 수자원의 적극적 개발 등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토개발의 기본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역개발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新경제 계획」에서 새로이 마련된 국토관리의 3대 기본방향은 첫째, 만성적인 가용토지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국토이용제도를 마련하고 둘째, 수도권 정비시책의 합리적 개선을 통하여 수도권 집중의 억제와 더불어 수도권 기능의 체계적인 준비를 추진하며 셋째, 실효성 있는 지역개발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의 개발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국토관리방안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난 93년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가용토지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제도를 대폭 개편하였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과밀부담금제도와 공장입지에 대한 총량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수도권정비시책을 개선하였다. 또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균형개발법」)을 제정하여 광역개발제도·개발촉진지구제도 등 효과적인 지역개발 수단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 「지역균형개발법」 제정으로 효과적인 지역개발 수단 마련

「지역균형개발법」은 생활권의 광역화·지방화·민간부문의 자율화 및 국토구조의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천력 있는 지역개발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지역거점권 육성을 위한 광역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지방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배후지역, 여러 도시가 서로 인접하여 동일생활

## 지역균형개발의 효율적 추진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개발자원의 절대적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효율성 위주의 개발전략 수립이 불가피하였으며, 국토개발 시책에 있어서도 자연히 투자효율과 집적이익이 큰 경부축 중심의 개발을 초래하여 수도권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국토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간의 불균형,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현상이 국가적 통합과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정치·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나아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어렵게 하는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개방화·국제화의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新경제 5개년계획」의 수립시 「국토관리의 3대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지



채덕석

건설부 국토계획과장

권을 이루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낙후지역 및 경제여건 변화로 새로운 생산기반 마련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개발촉진지구제도를 마련하였다.

셋째, 광역개발사업과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등에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민자유치제도를 마련하였다.

넷째, 민간부문의 창의와 자율에 의하여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유통시설,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복합단지개발제도를 마련하였다.

#### 광역개발제도 도입으로

중심지와 주변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종래 행정구역 단위로 형성되었던 생활권이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광역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광역 생활시설의 중복 설치 등 자원의 낭비 및 행정주체간 갈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 및 지역차원의 여러 목적 시설체계를 공간적으로 적절히 배치하고,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법」에 광역개발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방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광역대도시권),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광역산업지대권),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連擔도시권)이 광역개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개방화·국제화의 국제경제질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생활권의 광역화·지방화·민간부문의 자율화 및 국토구조의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역개발제도 즉, 광역개발제도·개발촉진지구제도·실효성 있는 민자유치제도·복합단지개발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역의 지정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 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다.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도 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광역개발계획에는 산업단지·주거단지 등 광역개발권역 내의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교통·용수공급시설 등 광역이용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광역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관광자원 개발,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광역개발계획의 수립시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공업단지 개발계획·도시교통계획 등 권역내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부문계획과의 상호관계를 명시하였다.

광역개발사업은 사업성격별로 개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되, 건설부장관은 매년 광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집행력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개발촉진지구제도 신설하여

특정지역제도의 문제점 개선

정부는 「제2차 국토건설종합계획」기간(82~91년)중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4개 낙후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약 2조원 정도를 지원하였으나, 과다하게 넓은 면적을 지정함으로써 인한 효과적인 지원의 부족, 중앙정부 위주의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현행 특정지역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 등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생산기반 조성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제도」를 신설하였다.

개발촉진지구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객관적인 지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발촉진지구가 과도하게 지정될 경우 효과적인 정부 지원과 민간자본의 유치가 불가능하므로 개발촉진지구 지정 면적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 우선 수도권과 제주도 지역에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였고, 다른 지역에도 시·도별 총면적의 10%를 초과하여 지정할 수 없도록



록 하였다.

건설부장관은 직접 또는 직할시장·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며, 개발계획은 시·도 지사가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건설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長과 협의 및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개발촉진지구에 대하여는 국가·地自體가 그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민간의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등 22개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의제하고 제한적인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등 개발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

화하였다.

또한 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선수분양을 인정하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의한 융자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조세감면규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복합단지개발제도 도입으로  
효율성과 일체성 대폭 제고

복합단지는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일체의 단지를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지역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인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단위사업별로 시행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각 개별사업 간의 시행기간 불일치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효과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곤란하였다. 그러나 복합단지제도의 도입으로 지역개발사업 시행의 효율성과 일체성이 대폭 제고되고,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지역개발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복합단지는 국가를 비롯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개발자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시·도 지사의 시행자 지정을 받도록 하였다.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권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과 같이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

으로 의제하여 개발절차를 간소화시켰다.

####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주기반 조성, 소득기반 조성 및 도로·항만·공항 등 기간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정부재정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국가재정 부족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지역개발사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법」에서는 민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개적인 절차와 효과적인 지원 수단을 마련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長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개발사업·지구개발사업·도시계획사업·복합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의 시행과 시행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하여 공개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게 되며, 시행자로 선정된 자와 사업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개발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개발법인의 설립은 공공부문의 조직, 행정관리상의 장점과 민간부문의 자본·기술·창의성 등의 특징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또한 공공부문의 신용으로 민간의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앞으로의 지역개발정책은 ‘광역개발제도’를 활용하여 新산업지대와 지방대도시권을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해외진출 교두보 및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개발촉진지구제도’를 활용하여 都農통합지역과 낙후지역에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기반을 조성하며, ‘민자유치제도’ 및 ‘복합단지개발제도’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지역개발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민자유치기관의 長은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개발자에게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토지 등의 매입업무의 대행,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의 주변토지개발권 부여 등의 지원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실효성 있는 개발정책 적극 추진

「지역균형개발법」의 제정으로 우루과이라운드, 세계 경제의 블록화, ‘環黃海 經濟圈’의 태동 등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지역균형개발법」을 활용한 앞으로의 지역개발정책 방향은 첫째, ‘광역개발제도’를 활용하여 新산업지대와 지방대도시권을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해외진출 교두보 및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둘째, ‘개발촉진지구제도’를 활용하여 都農통합지역과 낙후지역에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기반을 조성하며 셋째, ‘민자유치제도’ 및 ‘복합단지개발제도’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것이다.

#### 서해안 新산업지대의 광역 개발 추진

대규모 임해공업단지 및 항만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아산만권, 군산·장항권, 목포·대불권 및 광양만권을 「지역균형개발법」상의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고 광역 新산업지대 개발을 추진하여 이들 지역을 환황해권 및 對中國 무역의 전진기지로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

각 광역개발권역별로 공업단지, 배후도시, 교통·용수시설, 물류단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이들 지역이 자족적인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 공장이 이전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 新산업지대별로 특색 있는 경제구조를 형성토록 유도하고 상호 보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경부축에 대응하는 ‘J’자형의 새로운 국토축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상대적으로 개발수준이 뒤떨어져 있는 서남해안 지역은 21세기 우리 경제의 대외 진출 교두보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대도시, 체계적으로 정비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대  
 도시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들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  
 여 광역 생활시설의 합리적 배치, 광  
 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한 지역내 토  
 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업무  
 기능·연구개발기능·첨단산업 및 국  
 제기능 등 중추관리기능을 대폭 보강  
 하여 명실상부한 지역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통한  
 지역 소득기반의 조성  
 지방 중소도시와 주변 농어촌지역  
 을 한 데 묶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  
 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  
 형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강  
 원 남부, 경북 북부, 충북 북부, 지  
 리산·덕유산 주변 등 「제3차 국토  
 건설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낙후지역  
 등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소득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  
 이다.

이들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될 경우 개발절차의 간소화와 국가  
 의 기반시설 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으로 인해 민간의 개발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민간개발 활력을 적극 활용하여 축  
 산단지·특용작물 재배단지·관광단  
 지 등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기반 조  
 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적 논리로  
 '지역균형개발' 문제에 접근해야**

'지역균형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바로 국  
 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상관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과거에 '지역균형개발' 정책이 경제  
 적인 논리가 아닌 국민화합을 고려  
 한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결정되고  
 추진되는 사례를 종종 보아왔다. 그  
 결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역균  
 형개발'의 문제를 경제적 논리가 아  
 닌 정치적 논리로 이해하려는 속성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조금이라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간다면, 현  
 재와 같은 국토공간 구조를 가지고  
 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는 국  
 제적 무한경쟁시대의 낙오자로 전락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  
 을 수 있다. 좁은 국토공간, 그 좁은  
 국토공간을 더욱 좁게 만드는 수도  
 권 집중의 심화, 만약 현재보다 수도  
 권에 더 이상의 인구나 산업이 집중  
 하게 된다면 그나마 집적의 이익을  
 통하여 얻을 수 있던 규모의 경제는  
 과밀의 폐해가 되어 열곰, 스무곰으  
 로 우리 경제의 목줄을 죄는 요인으  
 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필  
 연적으로 토지가격의 상승을 불러오  
 게 되고, 이는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부족은 교  
 통난의 발생과 물류비·용지비 등  
 기업의 생산 원가를 상승시키게 되  
 며, 환경파괴 등 각종 도시문제 발생  
 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  
 이 가속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될

것이며,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기업  
 의 해외 이전이 불가피해지는 사태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고 앞으로의 국제적  
 무한경쟁에서 이겨 나가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기적 희생을 감수하  
 더라도 수도권은 국제적 기능이 극  
 대화되도록 정비해 나가는 한편, 입  
 지여건이 뛰어난 지방의 성장거점을  
 집중 개발하여 우리 국토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투자가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생존과  
 발전에 직결되는 우리 모두의 문제  
 라는 것을 직시하여 우리 국토개발  
 에 있어 과오를 범하지 않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정원**

**경제상담 안내**

경제정책에 관한 건의나  
 경제통계에 대한 문의 등  
 경제관련사항 모두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상담전화 「우리의 경제」

이용전화 ☎(02)507-2100  
 ☎(02)507-3100

그동안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 수준 및 위생의식의 향상, 관련 의학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정부의 전염병 관리노력에 힘입어 전체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93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총 4.5명의 발생으로 92년의 2.4명에 비해서는

도 원인균 자체가 소멸된 것은 두창 하나뿐이며, 그 외의 전염병은 방어력의 증강으로 단지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 외에 장티푸스나 이질 같은 水因性 전염병의 경우에는 관리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정 수준의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사회간시설인 상수도과 하수도 보급률이 각각 80%와 38%로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것이 중요한 이유로 생각된다. 게다가 최근 과거에는 거의 발생이 없었던 공수병이나 비록 법정 전염병은 아니라 해도 탄저병의 집단 발생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예년에 없이 콜레라 유입환자가 빠른 시기에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이로 인한 국내 콜레라 유입 및 집단 환자발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소아호흡기 전염병인 홍역이나 볼거리 등의 집단 예방접종의 사업 확대에 따라 발생이 감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부분적으로 항체미형성자나 일부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전반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감시체계의 운영은 물론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전염병 발생 최소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전체적인 전염병의 발생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발생이 감소할수록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각종 희귀한 전염병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고, 특히 해외여행자의 증가로 인해 해외에서 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 급성전염병의 예방

증가하였으나 최근 10년 간격으로 보면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전체 전염병 발생은 대부분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인 소아 호흡기 전염병의 감소가 큰 역할을 하여 홍역·볼거리 등이 격감하였고 일본뇌염의 경우에도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수백여명의 환자가 발생하던 것이 최근에는 수명만이 발생 보고되고 있다. 또한 폴리오의 경우에는 이미 국내에서는 완전 박멸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밖에 발진티푸스·채귀열·디프테리아의 발생보고도 거의 없다.

### 급성전염병 감소추세이나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 필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발생 추세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전염병들이 있다. 이는 전체 발생이 줄어든 전염병이라 하더라도



이덕형

보건사회부 방역과장

매우 높아지고 있다.

## 방역사업 체계를 강화

정부는 전염병 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작년에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한 데 이어 급년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각종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민불편 사항을 되도록 줄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난 5월중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해외유입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입전염병 관리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총 23종의 해외유입 전염병을 지정하고 30종의 희귀의약품을 비축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하며 여행객 대상의 홍보와 정보 수집 등을 실시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는 최근 늘어나는 해외관광객들로 인하여 국내 발생이 없는 열대 풍토병에 걸릴 확률이 커지고 있고, 또한 94년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맞아 국내외 출입국자수의 증가로 해외유입 전염병에 대한 관리가 필

그동안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수준 및 위생의식의 향상, 관련 의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정부의 전염병 관리노력에 힘입어 전체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인균 자체가 소멸된 것은 두창 하나뿐이며, 그 외의 전염병은 방어력의 증강으로 단지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요해졌기 때문이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현행 입시 예방접종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 즉, 접종대상 등을 재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대상에게 적기에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인구층에 대한 유행성 독감예방접종을 도입하여 전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번 서울시내 한 일반의원에서 발생한 일본뇌염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과 관련하여 안전접종을 위한 관리대책을 보강하고 부득이한 접종 사고에 대하여 국가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 전염병 발생감시체계를 운영

각종 전염병의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발생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발생추세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염병 관리에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의사들의 신고에 의한 집계로 매월 1회 전염병 발생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보건원에서는 매월 『감염병 발생 정보』誌를 발간하여 발생현황 및 외국의 정보를 수록하여 관련자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이는 방역대책의 성과나 문제점, 또는 발생양상의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과거 90년도 홍역

〈표 1〉 주요 法定 전염병의 발생 추이

(단위 : 명)

	70년	80년	90년	91년	92년	93년
인구10만명당 발생률	96.6	23.5	14.9	3.2	2.4	4.5
콜레라	206	145	-	113	11*	5*
장티푸스	4,221	201	232	187	221	452
세균성이질	814	57	17	34	245	113
폴리오	176	14	-	-	-	-
홍역	3,625	5,097	3,415	258	38	765
일본뇌염	27	107	1	3	3	4
유행성출혈열	-	20	139	119	110	109

註 : \* 해외유입 환자수임.

의 유행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물론 일본뇌염이나 인플루엔자 같은 특수한 전염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시체계 운영을 통하여 주의보·경보를 발표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법정 전염병 이외에도 비브리오 패혈증·무균성수막염에 대해서는 표본병원감시제도를 도입하여 하절기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감시체계의 선진화 및 전산망을 도입한 신속하고 편리한 전염병 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에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반기중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이다.

### 안전하고 정확한 예방접종사업 전개

예방접종 사업은 지금까지의 실적 위주에서 내실위주로 전환하여 안전 접종과 정확한 접종대상이 접종을 받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방접종 사업은 일본뇌염 등 7종(일본뇌염·렙토스피라증·유행성출혈열·B형간염·장티푸스·콜레라·황열)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접종대상은 각 전염병에 대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무료 및 유료접

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금년중에는 노인인구층을 대상으로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정한 대상에 대하여 효과적인 접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성인 대상의 임시예방접종표를 제작하여 불필요한 접종을 막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접종시기와 대상을 결정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무료예방접종사업은 모두 보건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나 그밖에 병의원과 일부 보건소를 통하여 유료접종 사업도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그리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예방접종은 주사행위임에 틀림없고 따라서 의사들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이다. 이에 일선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는 공중보건의사들도 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여건의 조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현재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장치의 미흡으로 만약 단체접종으로 어쩔 수 없는 사고의 발생시 책임소재의 문제가 따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향후 「전염병예방

법」을 보완하여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처럼 부득이한 접종사고시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접종을 받는 국민이나 접종자인 의료인 및 제약업자 모두 예방백신에 대한 기피나 불신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집단 면역을 확보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 콜레라 유행의 방지와 전파의 차단에 주력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 위생상태의 개선 그리고 정부와 국민들의 전염병 예방 노력에 힘입어서 대부분의 전염병 발생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교류의 증대와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오염지역으로부터 전염병 유입이 염려되고 있다.

실제로 91년에는 11년 만에 충남 서천과 전북 옥구·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콜레라 유행이 발생하여 총 113명의 환자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과거의 콜레라 유행과 비교할 때 적은 수의 환자 발생, 짧은 유행기간 그리고 2차 감염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

〈표 2〉 과거 우리나라 콜레라 발생현황

	63년	64년	69년	70년	80년	91년
기 간	38일 (9월 17일 ~10월 23일)	37일 (10월 8일 ~11월 13일)	61일 (8월 26일 ~10월 25일)	78일 (8월 6일 ~10월 22일)	48일 (8월 30일 ~10월 16일)	27일 (8월 12일 ~9월 7일)
지 역	부산, 경남 경북, 강원	인천과 주위 도서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밀양, 창녕	신안, 목포 광주, 서울	서천, 군산 인천, 경남
환 자	1,073	12	1,396	206	145	113
사망자	71	1	129	12	4	4
발생률	1.6	0.1	5.3	0.7	0.4	0.3

었으나 급성전염병 관리 측면에서는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염병 관리의 최대 역점은 콜레라 유행의 방지와 전파의 차단에 두었다. 특히 금년에는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6월 30일 현재 총 32명의 유입환자와 15건의 기내변기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되어 지난 겨울에도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였으며 확산방지에 대한 모든 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항공 여행객의 경우, 짧은 여행시간으로 인하여 잠복기내에 입국할 경우 보균상태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내 발생자체를 막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금년도 콜레라 예방의 최대 역점은 콜레라 환자 및 보균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사망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대책으로 각 보건소의 신고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관내에 5명 이상의 집단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콜레라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역학조사 전에 즉시 이 사실을 유선으로 보건사회부 방역과로 보고하도록 하였고, 원인미상의 설사로 인한 사망자가 지역사회에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검역체계를 통한 여행객 중 보균자의 발견 및 추적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발생우려지역 병의원을 대상으로 설사환자 모니터망을 더욱 강화하여 환자 조기발견에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콜레라균의 월동 가능성과

정부는 각종 전염병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서

감시체계의 선진화 및 전산망을 도입한

신속한 전염병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콜레라의 유입가능성이 높아 이의 예방과 전파의 차단에 역점을 두고 있다.

만성보균자로 인한 새로운 감염원 발생에 대비하여 3~5월중에 91년 환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약 45만 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역대책을 실제 추진할 일선 요원들에 대한 교육에도 중점을 두어 우선 3~4월중에 전국 검역소 검사요원 및 일선 보건소를 대상으로 콜레라 역학조사에 대한 특별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검사요원에 대해서도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콜레라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이들의 타부서 진출을 억제하여 검사기능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해하수나 해산물에 대한 정기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자연계에서의 콜레라 조기발견에도 노력할 것이다.

일단 콜레라 환자가 발견되면 신속한 홍보와 전파차단 노력으로 집단발병이나 사망자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콜레라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우선 현 콜레라 유행지역이나 과거 유입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오염지역입국자 추적을 통하여 4월부터 전 입국자 명단을 검역소에서 각 거주지 보건소에 통고하고 전화설문 및 만약 탑승기내 변기에서 콜레라균 검출시에

는 전원 채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평상시에도 오염지역 입국 비행기내 변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만약 콜레라균 검출시에는 동 탑승객에 대하여 채변검사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에 콜레라를 일으키던 엘토르형 외에 0139형의 신형 콜레라균이 출현하여 이에 대하여도 검사체제를 갖추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각 보건소별 질병모니터망 및 병의원이나 약국의 협조를 얻어서 능동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집단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보건소별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활용하여 환자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및 소독 등의 조치를 통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전염병 관리는 기본적으로 자율방역의 정착을 위하여 각종 전염병 관련 자료를 국민들에게 미리 미리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전염병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며, 각종 체계를 정비하여 전염병 관리를 선진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헌**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대명제하에 정부와 기업 모두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는 총량적·총체적 경제운용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 장애인 고용의 촉진

우리는 대외적으로 해외시장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 일과 국내적으로는 근로조건의 향상, 국민복지의 향상 등 국민생활의 질을 높여야 하는 일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들의 고용문제를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여야 나가야 하느냐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선진사회란 국민 모두가 부족하거나 어두운 구석이 없이 고루 잘사는 사회라고 한다면, 일반 노동시장에서 경쟁고용이 거의 불가능한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場을 마련하여 일자리를 주고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여 직업을 통한 인간적 보람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이웃된 도리이며 정부의 책무라 할 것이다.

또한, 전체 장애인 중 90% 이상이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등 자기자신의 잘못보다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일찍이 선진국에서는 1차대전 이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이들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해 오고 있으며, 단순히 정부가 일정액의 생활급부를 하는 것보다 직장을 마련해 주어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이루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정상화(normalization)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 장애인 고용실적 극히 미미한 상태

우리나라는 지난 89년에 순수한 의원 입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무고용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기침체 등으로 일반적인 고용여건도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고용구조의 변화는 물론 기업들이 여러가지 사정을 들어 장애인의 고용을 꺼리고 있어 그 실적은 <표>에서와 같이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이의 원인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인식부족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인력공급의 측면에서 우수한 장애인 기능인력의 양성이 부족하였고 둘째, 인력수요의 측면에서도 기업이 아무런 부담 없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못하



이양정

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였으며 셋째, 장애인에 대한 취업알선서비스도 전문화·체계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고용촉진의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중기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중기계획」 수립·시행

현단계에서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정부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취업이 가능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경미한 장애인의 완전고용에 최우선을 두고 향후 5년간 장애인 직업훈련사업에 약 1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장애인 직업훈련의 강화

장애인고용촉진의 목적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사회통합에 있으므로 먼저 일반 공공직업훈련시설 24개소에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합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특수학교의 장애청소년에게는 조기에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졸업후 즉시 취업이 가능하도록 특수학교 20개교에 전공과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89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무고용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나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고용촉진의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중기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유일의 장애인전문직업훈련시설인 일산직업학교에 매년 정원 210명의 2~3배 정도의 장애인이 지원하고 있으나 전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의 정도에 알맞는 특화된 전문직업훈련원 2개소를 증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中途장애인을 위해 근로복지공사의 산재재활원 2개원(안산·광주)을 인수하여 정규직업훈련시설로 개편·운영하도록 하고, 기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생산설비 등을 지원하여 보호고용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 고용촉진 서비스의 전문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취업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취업이 되었다고 해도 적응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장애인고

용촉진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취업 1년내 이직률이 50%를 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장애인을 단순히 취업시키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게 사회적응에 실패를 경험케 함으로써 再活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애인고용을 위한 서비스는 장애의 유형·정도에 따라 장애인에게 알맞는 직종을 선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화·개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서비스를 전문화·체계화·종합화할 수 있도록 각종 재활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요원을 양성·지원하여 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방사무소를 현 7개소에서 12개소로 증설하고, 사무소가 없는 지역은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이다.

〈표〉 장애인고용의무 대상사업체 장애인고용 현황

(단위: 개, 명, %)

시점	대상사업체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수	기준고용률
91년 1월 1일	2,017	2,448,361	18,607	7,758	1
94년 1월 1일	2,158	2,640,209	40,087	8,843	2



#### 사업주 지원제도를 강화

장애인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갖게 한 후에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여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장애인고용을 막연히 강제하기보다 생산성 결과와 고용에 따르는 각종 부담(시설·장비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정부가 보전하여 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의무(2%)를 초과 달성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 및 장려금을 부담금의 80% 수준(94년 12만원선)으로 대폭인상·지급하여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와의 형평을 도모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는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 2명을 고

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2배수 고용인정제와 새로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일정기간(1~2년간) 임금의 일정부분(최저임금의 50%)을 보조하는 보조금 고용제,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 또는 하청을 줄 경우 부담금의 일정 금액을 감면하는 연계고용제 등의 도입을 입법 추진중에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 시설·장비를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을 용자 또는 무상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의 고용여건이 향상되도록 할 것이다.

#### 국민의식의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확대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신체적·정신적 결함에 따르는 능력장애(disability)보다도 편견에 따른 사회적 장애(handicap)가 더 큰 장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는 단순히 신체적 특징의 일부에 불과하며 장애인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방송이나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반국민 및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토록 함은 물론, 체험수기·장애극복사례 등을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자립·자활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들도 단순히 장애인을 은폐시키려는 태도를 버리고 직업을 가지고 자립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부모·가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것이다.

최근 국내 경기가 호전되어 가면서 우리 산업현장은 인력난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3D업종을 중심으로 해외인력을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때에 우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개인적으로는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로 보람을 갖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명실공히 다함께 잘사는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유휴인력을 산업인력화하여 산업현장에 부족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현재 일할 수 있는 장애인 중에서 실업중인 장애인이 약14만명 정도에 이르고 있어 이 중 50% 정도만이라도 직업훈련을 시켜 취업케 하면 산업인력 부족문제 또한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남원**

지속적인 국민소득의 향상과 자동차공업 발전에 따른 공급능력의 향상에 의해 촉발된 수요의 확대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자동차 1대당 인구가 80년 72명이었던 것이 93년 7명으로 급증한 것은 자동차가 종래 경제적

재편 움직임 등에 따라 2만여개의 부품들로 이루어진 종합기계장치인 자동차의 안전도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신규생산되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안과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를 자동차소유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면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 신규생산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높여

세계각국은 신규로 생산되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동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실제 생산은 자동차제작자의 자기책임하에 이루어지며 판매 후의 자동차에 대해 정부가 안전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리콜(recall)제도와 정부가 자동차의 제작·판매 전에 자동차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안전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여 안전기준에 맞는 자동차만을 생산·판매토록 하는 사전인증 제도로 대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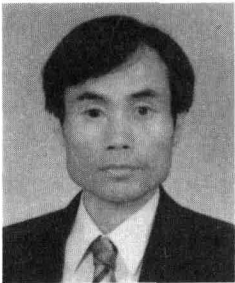
소비자 주권의식이 강하고 자동차

# 자동차안전도의 확보대책

능력이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보유하는 재화에서 이제는 국민 모두의 경제생활에 긴요한 생활필수품으로 그 개념이 바뀌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표 참조).

또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과 최근 거세어지고 있는 미국의 수입자동차 시장개방 확대 요구를 계기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도 새 모델만 만들면 팔리는 공급자 시장이 아니라 자동차 선진국의 자동차와 경쟁하여 소비자에 의해 선택되어야 팔릴 수 있는 소비자 시장으로 시장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급격한 자동차 소유의 대중화, 자동차 시장질서의 근본적인



**정상호**  
교통부 자동차기술과장

〈표〉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 추이

(단위 : 대, 명)

	60년	70년	80년	93년
자동차 대수	31,339	128,298	527,729	6,274,008
자동차 1대당 인구	798.1	251.3	72.2	7.0

의 결함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 등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미국은 사후 리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전인증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안전시험항목은 93년까지 6개 항목이었는데 일본·영국·독일 및 미국 등 자동차 선진국의 안전시험 항목이 48개 내지 51개 항목임을 감안할 때 극히 초보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낙후된 안전시험기준은 우리나라 자동차가 수출용과 내수용이 다르게 제작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부르는 한편, 우리나라의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의 한 원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안전시험 항목을 각종 충돌과 충격시험을 포함한 38개 항목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안전시험 실시 후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돌·충격시험을 거친 보다 안전한 자동차들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자동차업체가 국산화율을 상당수준으로 높이고 적용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후인 97년 이후부터는 배기가스 등 환경관련 시험과 주행중 제동장치 작동 등 13개 항목을 추가하여 선진국 수준의 51개 항목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배기량 800cc 이하의 輕乘用 국민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소형승합차(버스) 및 4.5t 이하의 소형화물차도 9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충돌·충격시험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97년 이후 51개 항목을 시험하게

되면 일본·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과 국제상호인증이 가능하여 국산 수출 자동차의 국내안전시험 결과를 해당국 정부가 인정함으로써 자동차 수출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충돌·충격 등 기본적인 안전도는 물론 소음·배기가스 등 환경관련 항목이나 주행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제동상황 하에서의 안전도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안전시험에 합격한 자동차만이 생산·판매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이 수입이 가능해져 우리나라 자동차의 생산·소비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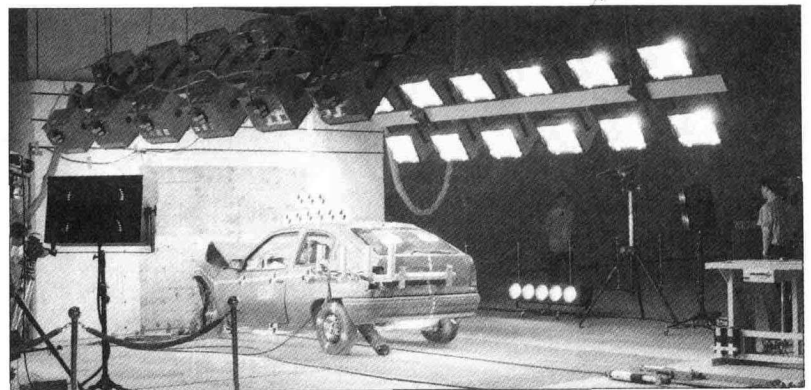
###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 위해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시행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는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의 두 가지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정기점검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결함여부를 일정주기(차종 및 차의 사용기간에 따라 6~24개월)마다 민간 정비업체에서 분해·점검하여 불량부분을 정비·수리하는 행위로서 자기

자동차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점검을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도와 법령준수여부를 일정주기(차종 및 차의 사용기간에 따라 6~24개월)마다 교통안전진흥공단의 검사소와 공단직원이 출장검사하는 출장검사장(민간 정비공장)에서 확인받는 것이다. 이 정기검사는 기계에 의한 검사와 육안에 의한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행위로서 자동차가 개인의 소유물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公器임을 감안하여 국가가 자동차의 안전도를 직접 확인하여 안전기준에 만족되는 자동차만 운행을 하게 하는 행정행위라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간단한 일상점검만 하고 분해·점검·정비는 일정 주기에 따라 정비공장에서 하며, 이러한 일련의 정비행위후 해당 자동차의 안전도를 정부가 확인하여 운행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틀은 우리나라



라의 자동차 보유율이 낮고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을 때에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로 인식되었다.

## 자동차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 되고 국민 소득의 증가로 인한 시간비용의 증가, 자동차의 성능향상 및 사회전반적인 규제완화 추세 등은 이러한 규제중심의 자동차 안전관리에 대해 과감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에 관련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자동차 검사주기의 완화다. 현재 자가용 승용차의 검사주기는 차령이 10년 미만일 경우는 2년, 10년 이상일 경우는 1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자동차 검사 불합격률이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 신규 국산 자동차의 성능향상을 감안하여 금년 3/4분기부터는 자가용 승용차는 최초 검사는 신규등록을 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받고 그 이후에 받는 검사는 현행대로 2년마다 받으며 차령이 9년 이상인 자동차는 1년마다 받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이다. 이 경우 현행 주기(2년)에 의하여 최초검사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효일(94년 3/4분기 추정) 이후에 도래하는 자동차는 3년의 주기를 적용받아 1년 후인 95년에 자동차검사를 받으면 된다.

둘째, 자동차 정기점검의 자율화

우리나라의 낙후된 안전시험기준은 국산 자동차가 수출용과 내수용이 다르게 제작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부르는 한편 우리나라의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의 한 원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안전시험항목을 각종 충돌과 충격시험을 포함한 38개 항목으로 확대하였다.

다. 현재 세계적으로 자동차 정기점검과 검사제도를 둘 다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인데 우리나라는 95년 하반기부터 정기점검의 의무화를 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자기책임 하에 분해·점검·정비토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는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 전에 정기점검을 받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나 95년 하반기부터는 정기검사 전에 정기점검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게 된다.

셋째, 자동차정기검사를 교통안전진흥공단 검사소 외에 민간 정비업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전국의 43개 검사소와 242개 출장검사장(우량정비업체 중 신청에 의하여 시·도 지사가 지정한 검사장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의 검사원이 일주일에 1~3회 출장하여 검사)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95년 하반기부터는 이를 일정 자격과 시설을 갖춘 민간 정비공장에까지 확대하여 수검자가 집이나 사무실 근처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장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민간 정비업체 중 선택하여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계

획이다.

자동차 600만대 시대를 맞이하여 자동차의 기술적인 안전도를 확보하는 정책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가 생산·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수준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를 위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자동차 관련 관계자들에게 인식의 전환과 개선노력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한 자율적인 점검·정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지금까지의 규제위주 정책에 익숙한 자동차 관리업계에서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인한 변화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규제완화의 대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를 선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들은 향후 자동차 안전시험과 정기검사 결과가 소비자들에게 공표되는 정보유통의 개방화에 대비하여 보다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지**

금년 6월부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에 '과학기술반'이라는 과학기술전담부서가 설치되었다. 이 전담부서는 금년초에 단행된 지방정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 내의 전문조직으로 설치되어,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

(〈표〉참조).

최근 들어 지방대학의 우수연구센터 육성과 특성화를 중심으로 지방과학기술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고는 있으나,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그 지역에 뿌리를 둔 지방 고유과학기술의 진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지방특화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과학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각 지방산업과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에 의해서가 아닌, 각 지역마다 각기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과 과학기술진흥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산업을 요구하는 기술수요의 충족, 우루과이라운드와 국내시장 개방에 대응한 지방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제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 지방 전담부서의 활성화 통해 과학기술의 지방확산 추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출범한 각 시·도의 과학기술전담부서가 그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또 활발하게 역할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신설된 지방 전담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과학기술의 획기적인 진흥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의 기본목표를 과학기술의 지방확산을 위한 기반의 구

#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대에서 지역과학기술 진흥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지방정부 과학기술전담부서의 출범은 금년초부터 과학기술처와 내무부 및 관련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온 결과로서,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과학기술의 지방확산 시대를 맞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영일**  
과학기술처 기획총괄과장

### 6월부터 전국에 과학기술전담부서 설치·운영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앙집중형, 수도권 중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발전구조로 인하여 교육기능과 과학기술활동도 중앙집중형으로 발전하여 왔다. 대덕연구단지·광주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각 지방마다의 공업단지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지방 과학기술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축, 지역고유기술 개발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 주민의 과학기술마인드의 제고 등에 두고, 이제까지 중앙집중적이었던 과학기술진흥활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금년 6월부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에 '과학기술반'이라는 과학기술전담부서가 설치되었다. 이 전담부서는 금년초에 단행된 지방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 내의 전문조직으로 설치되었는데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서 지역과학기술 진흥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 대덕연구단지 건설 등 지방과학기술 진흥기반 마련

여기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

인 대덕연구단지를 20년 간의 역사 끝에 건설 완료하여 우리의 과학기술역량을 국토 중심지에 결집시켜 과학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접근을 전국 어디에서나 용이하게 하였을 뿐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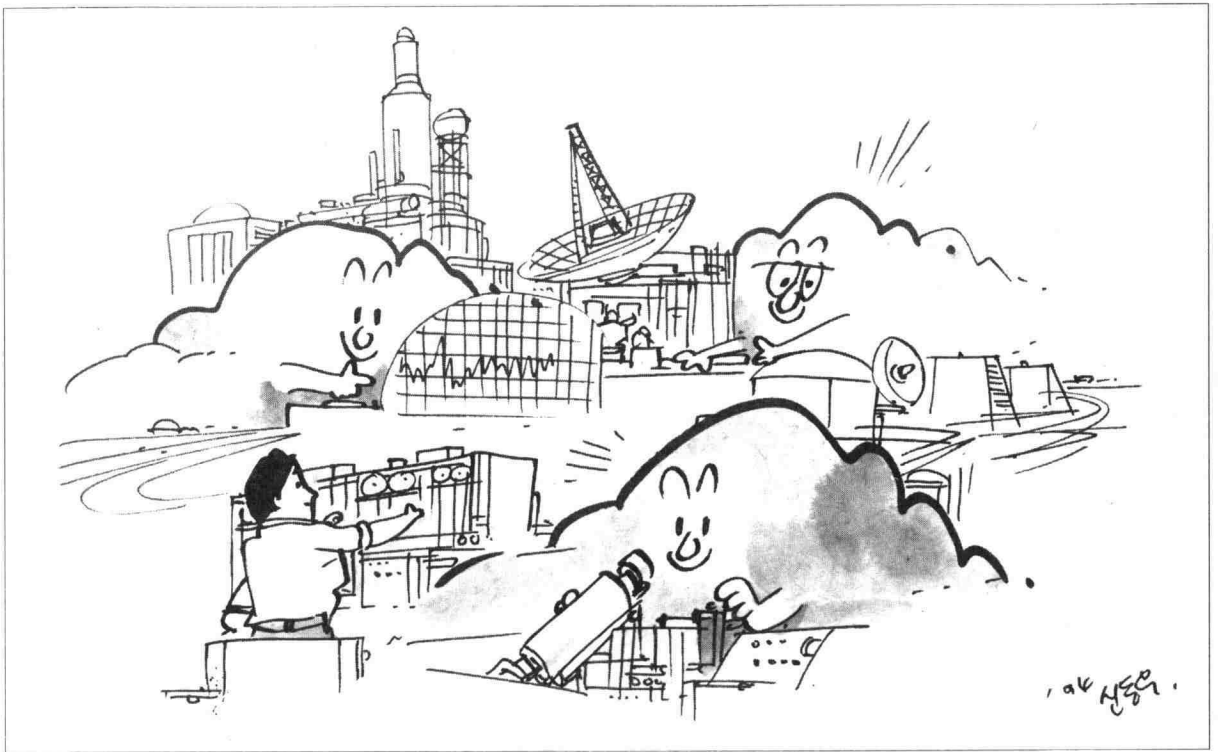
니라, 과학기술이 중심이 된 지방발전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마련하였다. 둘째, 대덕연구단지 건설의 경험을 살려 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발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표) 지방자치단체별 과학기술개발 여건

(단위: 개, 건, %, 명)

	대학	국공립·출연 <sup>1)</sup>	기업(연) <sup>2)</sup>	제조업체 <sup>3)</sup>	과학산업공업단지 <sup>4)</sup>	공공직업훈련원 <sup>5)</sup>	중소기업기술지도 <sup>6)</sup>	특허 등·출원 <sup>7)</sup>	재정자립도 <sup>8)</sup>	과학기술인력 <sup>9)</sup>
서울특별시	50	30	516	18,218	4	10	176	70,267	83.3	70,641
부산직할시	24	2	44	6,858	9	5	174	5,344	70.3	17,065
대구직할시	10	11	43	4,656	9	3	160	5,049	69.9	7,323
인천직할시	8	3	118	4,104	5	3	160	5,312	75.3	12,217
광주직할시	13	5	16	770	7	5	78	893	61.4	4,595
대전직할시	11	32	56	962	6	3	40	2,240	64.4	11,482
경기도	40	24	524	16,581	9	11	540	23,490	66.2	37,850
강원도	12	9	15	1,200	9	8	33	576	31.1	3,615
충청북도	10	7	42	1,051	10	7	73	2,126	30.9	4,143
충청남도	16	4	55	1,720	12	8	84	980	30.5	3,787
전라북도	15	8	18	1,948	13	6	51	1,232	29.4	3,528
전라남도	14	3	16	2,409	9	5	52	582	26.5	6,873
경상북도	25	2	73	2,804	10	11	84	3,844	35.1	10,075
경상남도	16	12	142	3,968	11	8	206	3,347	47.0	22,109
제주도	4	5	1	235	-	3	10	202	38.3	1,481

- 註: 1)이공계 출연(연)에서 부설은 제외  
 2)기업(연)은 94년 1월 현재  
 3)제조업체는 5인 이상의 업체(90년 현재)  
 4)공업단지는 92년말 현재  
 5)공공직업훈련원은 노동부와 법무부 산하 훈련소  
 6)기술지도수요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지도 건수(93년 12월 현재)  
 7)특허건수는 실용·신안·의장·상표권을 포함(93년 11월 현재)  
 8)재정자립도는 90년 현재  
 9)과학기술인력에서 교원은 제외



위하여 광주·부산·대구·전주·강릉 등 주요 거점지역에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제반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 첨단 과학산업연구단지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건설중에 있다. 아울러 경기도 발안지역에도 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이 입주할 지식산업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첨단기술산업화를 이끌고 있다.

셋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92, 93년 두 해에 걸쳐 신소재 등 11개 분야의 48개 과제에 대해서 총 63억원의 연구비(민간 22억원 포함)를 부산·전북 등 12개 시·도에 지원하여 지방소재 중소기업과 지방 대학의 협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전국 대학에 우수연구센터를 지

정·지원하여 탁월성 중심의 연구거점 형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밖에도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익년도 과학기술진흥시책을 제출받아 이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종합 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종합조정하고 경제기획원의 예산편성에 참고토록 함으로써 각 지방의 과학기술진흥 시책사업들을 지원하고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조정해 오고 있다.

또한 지방소재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과학기술정보를 신속히 공급하여 지역 과학기술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선 창원·마산지역에 지역 과학기술정보망 구축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94~96년 34억원 투입) 앞으로 이를 여타 시·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들은 앞으로도

계속 다각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금번 지방정부마다 과학기술전담부서가 설치된 것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지방과학기술 진흥시책의 확대 추진

앞으로 과학기술처는 각 시·도의 과학기술전담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이들의 자체적인 지방 고유의 과학기술진흥시책 수립과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각 지방 전담부서의 기능이 정착되고 인력과 재원 등 추진체제가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 지방의 종합적인 과학기술혁신 능력을 확충하는 데 전력을 다해 나

갈 것이다.

####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실시 및 추진체제 지원  
우선 각 시·도의 과학기술개발  
하부구조와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엄  
밀히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가 각기 당해지역의 여건에  
맞는 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  
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각 시·도의 독자적인 과학  
기술진흥계획들이 서로 지나친 과열  
경쟁(예를 들어 특정첨단산업의 과  
잉 중복유치 경쟁 등)이 일어나지 않  
도록 하고, 또 중앙 정부의 국가 과  
학기술발전계획과 연계성을 갖도록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종합조정하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할 것이다.

#### 지방과학기술진흥의

##### 하부구조 구축 지원

이와 함께 지방과학기술의 획기적  
인 발전이 가능토록 그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지방 첨  
단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  
한 지원이라든지, 각 지방대학에 우  
수연구센터(ERC·SRC)를 계속 확  
충하는 등의 지역 기술거점 확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  
획이다.

또한 기존의 우수연구센터와는 별  
도로 각 지방정부가 육성하는 연구  
센터, 즉 미국의 각 주정부가 운영하  
고 있는 '산학협동연구센터'와 유사  
한 형태의 지역연구센터(regional  
research center) 개념을 도입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지방과학기술진흥의 기본목표를

##### 과학기술의 지방확산을 위한 기반의 구축,

##### 지역고유기술 개발활동의 활성화,

##### 그리고 지역 주민의 과학기술마인드의 제고 등에 두고,

##### 이제까지 중앙집중적이었던 과학기술진흥활동이

#####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지역특화기술 개발을 위한

##### 연구개발 및 기업화 촉진 지원

다음으로 지역산업에 기초한 고유  
특화기술의 개발이나 지역전통기술  
과 현대적인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경쟁력 있는 지방산업군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사  
업의 추진과 기업화 촉진을 중점 지  
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내년부터 지역고유기  
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중앙정부의  
연구개발비가 각 지방정부의 지방비  
와 연계되어 해당 지역의 기업, 연구  
주체, 産·學·研 전문가들에게 투  
입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기술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지방정부별로 특화된 분야의 연  
구집단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통한 지역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토록 할 것이다. 뿐만 아  
니라 연구개발 수행시 해당지역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외국의 지방소  
재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도 추  
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  
과학기술인력의 연구능력을 제고시  
키고 지방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기업화와 실  
용화를 촉진시켜 지역산업구조를 고

도화하고 국제경쟁력 향상을 지원하  
기 위하여 지방 창업기술지원센터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현재 대덕연구단지내에는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두뇌집약  
적인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  
술혁신센터가 발족중에 있는바, 이  
러한 창업지원센터가 전국 각 지역  
의 대학이나 공단 주변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장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주민의 과학화시책 전개

또 다른 중요한 시책의 하나는 지  
역주민의 과학화와 과학기술이 지역  
행정의 중심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 진흥기반을 강화하는 일이다. 지  
역과학기술유공자를 지방정부나 중  
앙정부가 적극 발굴하여 격려·포상  
한다든지 각 지방 과학관을 설치하  
거나 기존의 지방과학교육원 또는  
학생과학관을 확충하여 청소년의 과  
학하는 마음을 고취시키는 일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지  
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실생활이  
과학적인 사고와 기술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생활태도와 직접적으로 연  
계되도록 지역주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과학기술 홍보와 교육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날로 확산되어 가는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 주민의 수용도를 높이는 데 정책의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각 지역이 과학기술발전의利器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또 그 개발이익을 주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나 공해문제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방법을 지역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무과이러 운드협상 타결에 따른 개방에의 저항이나 각종 개발부산물 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줄여나가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늘어나는 지방 과학기술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의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과학기술 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하여 급변하는 국제 과학기술환경과 국가 과학기술정책방향의 변화 등을 적시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지방 과학기술정책 수립이 가능토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을 통한 지역주민 편의 제고

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적정한 역할 정립을 바탕으로 국가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각종 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이제까지 중앙에 집

중되어 왔던 각종 과학기술관련행정 중 지방정부에 위임·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업무들은 과감히 지방정부에 위임·위탁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소재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각종 지원행정들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그 이용도와 편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과학기술처에서 이를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 다만 지방정부의 전문성이 축적되고 대민업무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시점과 대상범위들을 고려하면서,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 '지역과학기술개발기금' 설치 등 고려돼야

이상과 같은 각종 지방과학기술진흥 시책들과 그밖의 여러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각 지방정부가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체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지방정부나 지방소재 기업 또는 주민들 스스로가 해당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힘써야 하겠으나, 내년 들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 많은 부분에서 지방예산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바, 초기에는 중앙정부로부터의 한정적인 재정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전체 과학기술예산 중에서 지방정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23%, 중국의 33%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물론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 독립성이 아주 미약했던 것이 주원인이겠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체 실시에 따라 각종 세입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될 것이므로 이 때 각 지방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체 세외수입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기업합동의 '지역과학기술개발기금' 설치와 같은 특단의 방안도 적극 고려할 과제라고 본다. 아울러 국가 전체적인 현황처럼 지방정부의 예산뿐 아니라 기업이나 독지가 등 민간으로부터의 과학기술 투자를 적극 유인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초기에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의 매칭-펀드형식의 재원을 유도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예산에 대한 지방보조는 약 300억원 규모로 국가전체 과학기술예산의 1.5%나 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의 보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진흥 의지를 부추길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 세계경제 회복되고 있다

신현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90년대 들어와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세계경제에 봄기운이 감돌고 있다.

작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었던 일본과 독일에서 회복조짐이 나타나는 등 선진국 경제의 호전추세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경제의 성장도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를 제외한 구공산권 국가들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생산활동이 점차 활기

를 띠고 있다.

## 세계경제, 불황의 터널 벗어나

전반적인 경기회복추세에 맞추어 IMF·WEFA 등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은 최근에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의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번보다 다소 상향조정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올해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을 2.2% 내외로 전망하

였던 이들 기관들은 최근 발표한 전망치에서는 2.5% 내외로 올려잡고 있다. 국별로는 특히 본격 성장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미국경제와 불황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 독일경제의 성장이 올해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금년에 전반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역을 하는 미국경제가 3.5% 이상의

〈표〉 주요 기관의 세계경제 성장 전망

	93년	94년				95년			
		IMF	WEFA	OECD	DRI	IMF	WEFA	OECD	DRI
세 계	1.1	3.0	2.5	-	-	3.7	3.7	-	-
선진국	1.3	2.4	2.5	2.6	-	2.6	2.8	2.9	-
미국	3.0	3.9	3.6	4.0	3.6	2.6	3.0	3.0	1.9
일본	0.1	0.7	1.1	0.8	0.1	2.3	2.3	2.7	3.2
EU	-0.3	1.3	1.6	1.9	-	2.5	2.4	2.8	-
독일	-1.6	0.9	1.3	1.8	0.6	2.1	2.3	2.6	2.8
프랑스	-0.7	1.2	1.4	-	0.7	2.6	2.7	-	2.6
영국	1.9	2.5	2.5	-	2.5	2.8	2.3	-	2.5
개도국	4.1	5.5	4.4	-	-	5.8	5.5	-	-
구공산권	-4.0	-6.1	-0.5	-	-	1.4	5.8	-	-

註 : 중국의 경우 IMF는 개도국에, WEFA는 舊공산권에 포함시킴.

높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유럽 및 아시아국가들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둘째, 작년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극적인 타결로 국제무역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교역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IMF는 국제교역환경이 개선됨으로써 금년도 세계 교역규모가 작년의 2.4%보다 훨씬 높은 5.8%의 신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셋째, 최근 미국의 금리상승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후의 잇달은 금리 인하조치로 각국의 금리가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도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미국, 3%대의 본격성장 돌입

작년 4/4분기에 前期比 연율로 7.0%라는 유례없는 고성장을 기록하였던 미국 경제는 금년 1/4분기에 들어와서도 연율 3.4% 성장이라는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적정성장률이 2.5~3.0%임을 감안하면 2분기 연속 3%를 훨씬 넘는 성장을 보인 것은 미국경제가 현재 기대 이상의 활황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경제의 고성장은 소비지출의 회복과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민간소비지출

**올해 세계경제는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역을 하는 미국경제가  
3.5% 이상의 높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유럽 및  
아시아국가들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 낮은 금리수준에 따른 민간채무 부담의 감소와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의 증가로 최근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1/4분기의 경우 GDP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5.2%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기업의 고정투자도 저금리체제의 정착과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높은 신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금년도 설비투자를 작년보다 9%나 높게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시설 증설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국제경쟁에 직면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 및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미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회복과 EU경제의 경기회복 기미 등 대외여건도 개선되고 있어 대부분의 전문예측기관들은 미국경기가

금년에 3.5~4%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경제가 본격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 연방준비이사회는 정책의 중심을 물가상승 압력을 해소하는 데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몇 차례에 걸친 聯準의 금리인상조치로 인하여 연방자금금리는 3%에서 4.25%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금리인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그만큼 미국경제가 건실한 행행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 일본,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미약한 회복세 보여

작년 0.1%의 성장에 머물러 지난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부진한 성장을 보였던 일본경제도 금년에 들어와서는 회복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경기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광공업생산은 3월에 전월비 4.6% 증가, 3개월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공업생산의 회복과 주택건설의 호조에 힘입어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전기비 연율로 3.9%라는 좋은 실적을 나타내었다.

소비도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동안 크게 줄어들었던 백화점매출액도 감소 폭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기회복과 아시아지역

의 적극적인 공업화 추진으로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 직면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경제기획청도 6월의 월례경제보고에 서는, 일본경기가 전반적으로는 부진한 가운데서도 일부 부문에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제반 지표들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일본경제는 금년 상반기 중 바닥을 친 후 하반기부터 완만하나마 회복세로 들어서 올해 1~1.5%의 성장을 달성할 것 같다.

일본경제의 회복근거로는 우선 과거 경기호황기에 구입한 내구소비재에 대한 대체수요와 연초에 실시된 소비세 인하의 효과에 따라 완만하나마 개인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미국경기 및 아세안경기의 본격 회복에 따른 수출의 호조와, 소득세 감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정부의 종합적인 경기대책도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관건인 기업의 설비투자가 아직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 확대, 엔고에 따른 기업수익 하락, 무라야마정권의 출범에 따른 정국 불안정 등 부정적인 요인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일본경제의 회복세는 당장 크게 나타나기보다는 하반기 이후 서서히 나타날 공산이 크다.

## EU, 수출호조 및 금리인하로 여건 개선

작년 사상최악인 마이너스 0.3% 성장에 빠져들었던 EU경제도 금년 들어와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 회복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상반기중 해외로부터의 활발한 수주에 힘입어 구서독 지역의 제조업수주가 기대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계속 보이고 있으며, 구동독지역의 산업생산도 전년 동기비 두 자릿수의 증가라는 현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영국과 프랑스도 기업수익 개선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산업활동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은 올해 EU경제가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EU집행부는 최근 금년도 EU의 성장치를 지난해보다 0.3%포인트가 높은 1.6%로 수정 발표하였다.

이처럼 EU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근거로는 무엇보다도 각국의 산업활동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미국과 아시아국가의 경기회복 등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국이 작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리인하조치와 유례없이 안정적인 물가수준도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등 경기에 점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EU 소재 기업들을 금리인하와 수출여건 개선 등 경기상황의 개선에 발맞추어 금년도 예상

이익 및 매출을 상향조정하고 설비투자계획을 재점검하는 등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올해 EU경제가 본격적인 회복단계에 진입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요인이 있다. 우선 높은 실업률 및 올해의 낮은 임금상승률 등으로 민간부문의 소비지출이 당장은 크게 회복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또 심각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증세 움직임 등을 보이고 있는 것도 민간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EU경제는 금년중 작년의 최악수준을 벗어나 완만한 회복을 하는데 머물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투자 및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내년에 이르러 본격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개도권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

작년 4.1%의 성장을 유지하였던 개도권 경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경제의 회복에 따라 올해에는 활기찬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의 높은 성장과 중동 및 중남미의 성장둔화라는 양극화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 경제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아시아지역은 수출호조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세안은 공산품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외에도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확대, 소득 증가에 의한 소비수요 증가 등으로 올해에

도 7%를 넘는 높은 성장세가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동경제는 상반기까지 지속된 국제유가 하락과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긴축정책 추진, 이란과 알제리의 외채상환에 따른 어려움 가중, 이라크와 리비아의 금수조치 등으로 올해에는 경기둔화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남미 경제도 금리상승에 따른 투자 위축과 수입자유화 확대 이후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제조업생산 감소 등으로 경기가 작년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 같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2/4분기 이후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선진국 경제의 회복에 따른 對선진국 수출 호조, 개도권의 주종 수출산품인 1차산품가격의 상승 움직임 등으로 하반기 이후 개도권 경제는 점차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동구의 호조 속에 러시아는 침체 지속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 진력을 쏟고 있는 구공산권 경제는 러시아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구조전환 정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의 소폭 성장감퇴에 이어 내년부터는 플러스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政情불안으로 10%대의 큰 폭 성장감퇴를 겪었던 러시아 경제는 금년에도 큰 폭의 성장감퇴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개혁과 득세에 따른 정치적 혼란으로 시

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는데다가 만성적인 인플레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긴축정책이 생산침체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東歐 경제는 각국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과 사유화기업 등 민간부문의 활성화, 서방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대에 따라 최근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구경제는 올해 2% 정도의 성장을 보인 후 내년에는 이러한 성장추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0년대 들어와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경제는 고도성장에 따른 인플레이가 다소 우려되기는 하나 올해에도 10% 이상의 높은 성장 추세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최근 중국정부가 긴축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데다가 올해에도 고정자산투자가 30%대의 높은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올해 세계경제는 이제까지의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 본격적인 성장은 내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나라와 밀접한 교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아시아국가, 그리고 중국의 경우 올해 고도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외교역 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하겠다. **정리**

실천하는 친절행정

쌓여가는 국민신뢰

마음마다 의식개혁

손끝마다 실천의지

# 여성의 사회참여

권오술  
통계청 기획과장

1960년대에 들어와 경제사회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부터 그동안 사회적 규범이나 기능면에서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이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 그 중요성이 날로 새롭게 인식되어가는 시점에 와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경제사회발전의 결실로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여성에 대한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등 경제·사회적 여건들이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어감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量的으로는 물론이고 質的으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 경제활동 참여 크게 확대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지난 65년 807만5천명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여성노동력(15세 이상 인구)은 93년에는 1,669만7천명으로 2배 이상 증가를

보여 왔다. 이는 출산력이 크게 낮아지면서 인구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15세 미만 인구는 감소하고 1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학생·가사·연로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여성경제활동인구는 65년 300만2천명에서 93년 788만7천명으로 2.6배(남자는 2.1배) 늘어나 잠재적인 여성노동력(15세 이상 인구) 증가를 상회하는 경제활동참가 인구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도 65년 37.2%에서 93년 47.2%로 10% 포인트나 높아져 동 기간중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8.9%에서 75.8%로 3.1% 포인트 감소를 보인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임으로써 여성의 사회진출이 얼마나 활발해지고 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의 특징은 20~24세 연령층에서 급증하여 頂點을 보이다가 25~29세에는 결혼·출산·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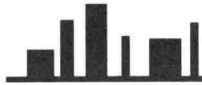
등 가정형성 활동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다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서서히 증가하여 45~49세에 다시 최고의 頂點을 보이는 소위 전형적인 쌍극(two peaks)패턴을 보이고 있어, 남자들의 경제활동 패턴(one peak)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0~30대와 60세 이상 노령층의 사회참여 확대 두드러져

그런데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각 연령층에서 고르게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상승하는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계층이 45~49세에서 20~24세로 옮겨졌다. 특히 20~30대 및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 증가를 보였고, 15~19세의 청소년 계층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우수인력의 증가로 10대 후반의 사회참여는 줄어든 반면 20대 여성의 사회참여가 크게 확대된 데 기인한다.

고학력층 여자 졸업자수를 살펴보



면, 고등학교 졸업자수가 65년에는 4만3,405명에서 93년에 35만4,192명으로 8.2배나 늘어났고, 대졸 이상 졸업자수는 65년에 3,662명에서 93년에 7만8,996명으로 21.6배나 늘어났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난 두번째 요인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직장취업이나 근로조건에서 성에 대한 차별이 감소하는 등 남녀평등화 추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남녀간 임금격차가 크게 줄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5년에 여자의 임금은 남자의 42.2%에 지나지 않았으나 93년에는 56.7%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이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의 특징은 20~24세 연령층에서 급증하여 頂點을 보이다가 25~29세에는 결혼·출산·육아 등 가정형성 활동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다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서서히 증가하여 45~49세에 다시 최고의 頂點을 보이는 소위 전형적인 쌍극패턴을 보이고 있어, 남자들의 경제활동 패턴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수준은 일본(91년)의 42.9%, 싱가포르(92년)의 56.0%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번째 요인은 청소기·세탁기 등 각종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와 주방 시설의 현대화 등으로 가사부담이 크게 줄고, 놀이방·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육시설과 유아원·유치원 등

의 증가로 여성의 육아부담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

아울러 국민보건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도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1>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천명,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총수
〈1980년〉											
15세 이상 인구(A)	1,847	1,826	1,472	1,256	1,159	1,127	1,029	772	652	1,520	12,659
경제활동인구(B)	635	977	471	512	615	639	590	416	301	257	5,412
경제활동 참가율(B/A)	34.4	53.5	32.0	40.8	53.1	56.7	57.3	53.9	46.2	16.9	42.8
〈1993년〉											
15세 이상 인구(A)	1,860	2,117	1,936	2,067	1,775	1,304	1,143	1,112	965	2,419	16,697
경제활동인구(B)	311	1,369	868	985	1,052	816	691	638	513	645	7,887
경제활동 참가율(B/A)	16.7	64.7	44.8	47.7	59.3	62.6	60.5	57.4	53.2	26.7	47.2

<표 2> 남녀간 월평균 임금격차 변화 추세

(단위: 원, %)

	75년	80년	85년	90년	93년
전학력평균	46,654	150,747	268,766	501,992	975,125
남자(A)	60,319	192,589	328,177	588,320	1,116,682
여자(B)	25,465	85,674	158,486	323,691	632,665
임금격차(B/A)	(42.2)	(44.5)	(48.3)	(55.0)	(56.7)

자료: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여성취업자 비중, 93년 40.1%로 증가

여성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지난 65년 283만9천명에서 93년 771만명으로 2.7배가 늘어 양적인 면에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별·직업별·산업별·종사상 지위별·학력별 취업구조 등 내용적으로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여성취업자수 증가율(66~93년 평균 3.6%)이 남자취업자 증가율(2.8%)을 상회함에 따라 여성취업자가 전체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5년에 35.0%에서 93년에 40.1%로 크게 증가하였다.

연령별 여성취업자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65년에는 20대(25.4%), 30대(23.5%), 40대(20.6%)가 전체의 69.5%를 차지하였는데, 93년에는 20대(27.6%), 30대(26.1%), 40대(19.4%)가 전체의 73.1%로 늘어났으며, 특히 60세 이상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져 전체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3.4%에서 8.4%로 크게 늘어났고, 10대에서는 16.0%에서 3.6%로 크게 감소했다.

### 직업구조, 단순노동직중에서 전문기술직·서비스업종으로 변화

한편 80년대 이후 여성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80년에는 전체 여성취업자 중 39.0%가 농림수산업

에 종사하였으나 93년에 이르면 20.3%를 차지하는 생산·운수장비 운전 및 단순노무직이 가장 주된 직업으로 바뀌었으며, 사무관련종사자·서비스직종사자 및 전문·기술·행정·관리종사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 이러한 직종에 대한 여성진출이 특히 활발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취업구조가 최근 들어 남자의 직업별 취업구조에 크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취업자에 대한 전문·기술·행정·관리 및 사무직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25.2%로 일본의 41.0%, 미국의 58.8%, 캐나다의 63.5%에 비해서는 아직도 크게 밀리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업별 취업자구성비는 1차, 2차

〈표 3〉 남녀 취업자구성비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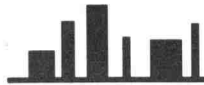
	남 자		여 자		총 수	
	취업자수	구성비	취업자수	구성비	취업자수	구성비
65년	5,273	65.0	2,839	35.0	8,112	100.0
75년	7,431	63.6	4,261	36.4	11,692	100.0
85년	9,137	61.0	5,833	39.0	14,970	100.0
90년	10,695	59.3	7,341	40.7	18,036	100.0
93년	11,493	59.9	7,710	40.1	19,203	100.0

〈표 4〉 직업별 취업구조변화

(단위: 천명, %)

	전문·기술 행정·관리	사무관련 종사자	판매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농림수산업 종사자	생산·운수장비 운전·단순노무	총 수
80년	186 (3.6)	415 (7.9)	867 (16.5)	626 (12.0)	2,035 (39.0)	1,095 (21.0)	5,222 (100)
90년	564 (7.6)	936 (12.8)	1,243 (16.9)	1,223 (16.7)	1,494 (20.4)	1,882 (25.6)	7,341 (100)
93년	751 (9.7)	1,195 (15.5)	1,440 (18.7)	1,450 (18.8)	1,306 (16.9)	1,568 (20.3)	7,710 (100)

註: 괄호 안 숫자는 구성비임.



및 3차 산업이 65년 63.8%, 8.2%, 28.0%에서 93년 17.0%, 23.0%, 60.0%로 각각 변하여 취업구조가 급격히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비임금근로자는 줄고 임금근로자는 크게 증가

이러한 영향으로 종사상 지위에서도 전체취업자 중 가족종사자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65년 57.9%→93년 23.6%), 고학력 여성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직종의 취업 증가, 사업체수의 급증에 따른 취업기회 확대 등으로 전체취업자 중 상용임금근로자 비중은 65년 13.6%에서 93년 47.2%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일용근로자 또한 65년 20만7천명에서 93년 79만3천명으로 크게 늘어나 전체 여성취업자의 10% 정도가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에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여성취업자가 80년 433만7천명에서 93년 397만3천명으로 감소한 반면, 고졸 이

80년대 이후 여성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80년에는 전체 여성취업자 중 39.0%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였으나 93년에 이르면 20.3%를 차지하는 생산·운수장비 운전 및 단순노무직이 가장 주된 직업으로 바뀌었으며, 사무관련종사자·서비스직종사자 및 전문·기술·행정·관리종사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 이러한 직종에 대한 여성진출이 특히 활발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 고학력 취업자는 88만5천명에서 373만7천명으로 4.2배나 증가해 여성노동력의 질도 급속히 고급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고학력층 젊은 세대의 실업률 높아

93년 현재 여성실업자는 17만8천명으로 실업률은 2.3%를 나타내 남자(3.2%)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80년의 실업률 3.5%(실업자수 19만명)보다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여성의 취업이 더 쉬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 학력별로 보면, 전체 실업자 중 중졸 이하의 실업자는 65년 8만7

천명에서 93년 3만2천명으로 감소한 반면, 고졸 여성실업자는 80년 9만1천명에서 93년 10만1천명으로, 대졸 이상 여성실업자는 80년 1만3천명에서 93년 4만5천명으로 각각 증가해 고학력 여성실업자가 많이 늘어났다. 특히 93년 대졸 이상 실업률은 남자 대졸자 실업률을 상회(여자 4.9%, 남자 3.8%)하고 있어 이들 계층에서는 다른 학력계층과는 달리 오히려 남자보다 구직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 실업률은 15~19세(9.9%), 20~24세(6.6%)가 높은 반면, 60세 이상의 노령층에서는 취업의사가 있는 자는 대부분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표 5〉 직업별 여성취업구조의 국제비교

(단위 : %)

	전문기술 및 행정관리	사무직	판매직	농림직 (어업, 축산업)	생산 관리직	서비스직 및 기 타	계
한 국(93년)	9.7	15.5	18.7	16.9	20.3	18.8	100
일 본(92년)	12.8	28.4	14.1	7.1	25.8	12.0	100
싱가포르(92년)	9.0	14.1	27.1	0.1	35.7	14.0	100
캐 나 다(92년)	34.8	28.7	9.8	2.2	7.2	17.3	100
미 국(92년)	31.3	27.5	12.4	1.0	10.0	17.8	100
홍 콩(92년)	12.6	35.8	11.4	0.5	17.1	22.7	100

자료 :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발전방향



**천경필**  
환경처 환경교육과장

옛부터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 불려 왔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어느 정도 물질적인 풍요는 이루었지만 그동안 환경문제를 소홀히 한 결과 우리의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어 왔다. 우리의 생활주변을 살펴보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찾기도 어렵고 매연·먼지 등으로 시야가 맑은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좁은 국토에 매립할 곳도 찾기 힘들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도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고, 지구가 더워지며, 산성비가 내리는 등 지구촌의 환경이 갈수록 나빠져 인류의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는 한편, 선진국들은 지구환경문제를 앞세워 무역장벽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그린라운드'의 태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각종 시책수립 및 제도정비를 통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민간단체 등 전국민적 합심·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어릴 적부터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게 하는 환경교육이야말로 환경문제 해결의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환경교육은 일반적으로 교육대상자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환경교육과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환경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환경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환경보전 실천교육이 환경문제 해결의 첩경

학교환경교육, 환경보전에 관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  
학교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케 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확고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줌으로써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개인의 윤리관이나 가치관·태도 등은 대개 어린 시절에 형성되므로 가능하면 어릴 적부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환경교육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그동안 여섯 차례 개정·고시되었는데, 환경교육내용은 제4차 교육과정에 들어와 처음으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제4차 교육과정의 환경교육 내용은 자연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은 환경교

육은 제5차 교육과정(87년)에서 8대 중점지도사항의 하나로 제시되면서 제4차 교육과정에 비해 대폭 보장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의 환경교육은 어느 특정교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사회·과학 등 관련 교과목에 분산·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환경교육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제5차 교육과정은 통합교육 방식을 취하고 있어 과목간 연계성 및 전체적인 체계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제6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학교환경교육 강화방안'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95년부터 적용되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엔 '환경', 고등학교엔 '환경과학'을 독립교과목으로 신설토록 하고 관련 교과목의 환경내용도 대폭 강화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 ■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정부에서는 85년부터 현장에서 시범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해 봄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의 기본모델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시범학교는 2년 주기로 운영되며 지금까지 총 32개교를 운영하였다. 이들 환경보전 시범학교에서는 환경관련 교과내용 분석 및 체계적인 교사지도안 작성, 대기·수질 등 각 분야별 환경교육자료 개발, 환경보전 학습관 운영, 환경보전 글짓기 등 문예활동, 지역주민 계몽활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 시범학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당 385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계환경의 날' 등을 이용하여 우수교사 및 학생들에 대해 표창을 하며 각종 교육·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환경보전 의식 제고는 물론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에 대한 홍보·계도효과도 얻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 시범학교의 성과가 타 학교에 전파·확산될 수 있도록 「시범학교 운영사례집」을 발간·보급하고 있다.

#### ■ 교사교육

교사의 사고 및 가치관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교사의 환경관련 지식 및 윤리관이 학교환경교육의 質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체계적이고 심화된 환경교육을 위하여 각급 교원연수기관에 '환경보전' 과목을 개설·운영

지금까지의 환경교육은 '효과적인 환경교육이란 실천 지향적인 교육이어야 한다'는 명제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환경보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교육에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올바른 환경교육이란 환경보전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실천의지를 강하게 갖도록 하는 동시에 정서적으로 감성을 심어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하도록 하고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사범대에서도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울러 정부에서는 92년도에 교사들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사용 연수교재를 개발하였고, 93년도엔 이를 증간하여 전국의 학교에 보급하였다.

또한 지방환경관서를 중심으로 교사들에 대한 환경교육 특별연수(93년 총 42회, 7,140명)도 실시하였다.

#### ■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하여 실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다.

88년부터 90년까지 연차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용 및 교사용 교재를 개발·보급하였고, 93년도에는 「환경수학여행의 길잡이」 등 3종 2만5천권을 개발하여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 학교에 보급하였다.

####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회환경교육 개요

학교환경교육이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이라면 사회환경교육은 현재를 위한 기성세대들에 대한 환경교육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환경문제가 대두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은 중요성을 띠게 된다.

사회환경교육은 교육주체에 따라 환경처 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의도적인 교육과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비의도적인 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교육의 전문성에 따라 전문교육과 일반교육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공공부문의 환경교육은 환경행정의 출발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967년 보건사회부 내에 환



민간부문의 환경교육은 민간환경단체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환경단체 중에서 비교적 환경교육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단체로는 환경운동연합·배달환경클럽·환경과 공해연구회와 같은 환경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의 환경개발센터와 같은 시민단체 그리고 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한국불교사회교육원·대한YWCA연맹 부설 국제환경교육정보센터 등의 종교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단체의 교육은 몇몇 단체의 지도자 교육을 제외하고는 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의 현황 소개, 환경보전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대체로 1주일에 1~2회 총 4~16회 강좌로 실시되고 있다.

### 기존의 이론위주 강의식 교육은 비효율적

환경교육은 환경처(환경관리청), 교육부(시·도 교육청) 등 행정기관, 각급학교, 환경관련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교육 주체 간에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지 못하여 환경교육의 발전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나 민간단체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방법도 대부분 이론위주의 강의식 교육에 치중되어 있어 교육대상자의 흥미를 적극적으로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나 강사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나 가치관이 부족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의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환경교육의 목표, 더 나아가 환경철학과 관련된 문제이다. 예를 들면, 환경교육은 '생명철학'을 바탕으로 생명존중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각 교육주체가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공통적인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최소한 92리우 세계환경회의에서 합의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념적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지금까지의 환경교육은 '효과적인 환경교육이란 실천 지향적인 교육이어야 한다'는 명제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환경보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교육에는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환경교육이란 환경보전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경위생과를 설치하면서 환경행정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 산하 국립보건원에서 환경행정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이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그후 환경청 발족 등의 과정을 거쳐 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고 환경공무원교육원이 발족됨에 따라 환경교육 발전의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된다. 환경공무원교육원에서는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환경관련 산업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환경교육(93년 실적 : 공무원 5,676명, 민간인 3,802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보전협회에서는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법정교육(93년 실적 : 환경관리인 2만3,441명, 폐기물처리담당자 2,769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90년도에 환경교육이 정부의 주요 시책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처 및 지방환경관서에서는 '주부환경대학', '시민환경강좌' 등을 개설하여 사회 각계의 지도급 인사에 대한 환경교육(93년 실적 : 3만4,827명)을 실시하고 있다.

게 심어주고,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환경보전의 실천의지를 강하게 가지도록 하는 동시에 정서적으로 환경보전의 감성을 심어주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인간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태적 세계관에 눈 뜰 필요가 있다.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환경교육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재미있어야 한다. 특히, BOD·ppm 등 어렵고 딱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성격상 더욱 더 그렇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이 강의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피교육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환경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고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 체계적·종합적인 환경교육 추진되어야

'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90년 '세계보전의 날'의 슬로건이었다. 그런데 '지구를 생각하며 작은 일부터 실천을'이라는 이 슬로건이 바로 환경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 마디로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제 우리나라 환경교육이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환경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학 이론에 의하면 교육의 세 가지 방법인 認知的·情意的·心體的 방법의 조화, 즉 알고 느끼고 실천하는 교육을 이상적인 교육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원리는 환경교육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환경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범지구적 차원에서 생각되되, 교육대상자가 흥미를 잃지 않고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환경문제를 소재로 삼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둘째, 환경교육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한다.

환경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추진 주체 간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환경처 등 행정기관·민간단체·연구기관 등 환경교육과 관계된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여 환경교육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가칭)환경교육협의체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환경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종합적으로 환경교육을 추진하되 교육주체 간의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교육대상자에 적합한 흥미있는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단체가 조직적·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육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환경교육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충실성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각 교육주체는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교육대상자에 적합한 흥미있는 교육프로그램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오염 현상이나 환경기초시설들을 견학하는 현장학습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환경단체를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사회환경교육의 성공은 근본적으로 민간단체의 발전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간단체는 대부분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은데다 조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하여 효과적인 환경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 민간단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민간환경운동기금'의 설치 등 이들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지구를 생각하며 작은 일부터 실천을'

지금까지 환경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의 하나인 환경교육을 대상으로 그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환경교육의 역사가 일천한 만큼 체계적인 이론이나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환경교육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점도 많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도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구를 생각하며 작은 일부터 실천을'이란 슬로건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추진주체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때 환경교육의 발전은 가능할 것이다.

# 긴급수입제한제도의 발전방향(上)



신유균

관세청 서기관/ 산업연구원 파견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를 포함한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사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합당한 조치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피해구제조치에는 수입에 대한 관세·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규제조치뿐만 아니라 산업조정과 산업지원조치 등 소극적 또는 적극적인 모든 형태의 정부개입이 포함될 수 있다.

산업피해구제제도는 각국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경우, 상당한 수입규제수단으로 사용되어 국제무역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간의 무역자유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GATT 1994협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발동하도록 하고 있다.

GATT 1994협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아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to cause or threaten serious injury to domestic producers)에 발동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수출국의 덤핑 또는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한 수출행위가 피해의 원인인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반덤핑 관세제도 및 상계관세제도 그리고 지적재산권 침해, 차별적 대우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수입국이 보복행위로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GATT 1994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산업피해구제제도는 특정한 상황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95년부터는 WTO의 발족으로 말미암아 국내제도의 체제 및 그 운영을 국제규범이 요구하는 바에 맞추어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WTO의 발족 이후 외국산 물품 및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동시에, 향후 彈力관세제도의 일환으로 調整關稅나 割當關稅 또는 季節關稅를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양허한 관세율 이상으로 부과할 경우에는 필경 상대교역국은 WTO에 提訴하거나 보복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결국은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 인정하는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는 근거법률에 따라 크게 「관세법」상의 산업피해구제제도와 「대외무역법」상의 산업

피해구제제도도 나눌 수 있다. 「관세법」상의 산업피해구제제도로는 덤핑수입 및 보조금지급 등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反덤핑關稅, 相計關稅)와 긴급관세·보복관세 등의 제도가 있으며, 「대외무역법」상의 산업피해구제제도는 공정무역이기는 하나 수입의 급격한 증가나 무역 및 유통서비스 공급의 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제도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구제하는 제도가 있다.

종전(91년도까지)에 우리나라는 긴급관세를 종종 발동한 경우가 있으며 87년 무역위원회를 설치한 이후로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건수가 차츰 증가하고 있다. 다만, 수출국의 보조금지급행위에 대하여서는 현재까지 1건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히 아쉬운 일이라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論題에 따라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 조치 및 긴급관세의 발전적 전개방향에 대해서만 검토하여 본다.

## 세이프가드제도에 관한 국제규범

종전에는 가트협정 제19조에 의거 세이프가드조치 제한적으로 적용

세이프가드조치는 공정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 또는 비관세에 의한 수입제한조치이다. 세이프가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GATT협정 제19조(emergency action on imports of particular products)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기인한 수입수량의 증가와, GATT협정상 의무준수의 결과에 따른 수입수량의 증가로 말미암아서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serious injury or threat of serious injury)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입국은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기 이전에 GATT締約國들에게 서면통보와 사전협약을 거쳐야만 하고 둘째, 수출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수출국의 보복조치를 감수하여야만 하며 셋째, GATT상의 최혜국대우(MFN)원칙에 따라서 특정상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당해 상품의 모든 수출국에게 동등한 수입제한을 가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조건 때문에 선진국들은 그동안 세

종전 GATT협정 제19조를 대폭 수정한 UR 세이프가드협약은 세이프가드조치를 개별국가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있으며, 灰色措置 즉, 기업 간의 수출자율규제협약이나 정부 간의 시장질서유지협정 등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사실상 미국·EU 등은 GATT협정 제19조상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기피하여 왔다. 그 대신에 선진국들은 GATT협정 제19조를 우회하거나 사실상 그에 위반되는 수출자율규제협정(VRA) 또는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의 雙務協定을 통해 수출국을 선별하여 규제하는 선별적 수입제한조치인 灰色貿易규제조치(grey area measure)를 크게 활용하여 왔다.

UR세이프가드협약, 종전내용 대폭 수정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場에서 각국은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이 긴급수입제한제도에 관한 협약(UR Agreement on Safeguard)을 제정하였는바, 종전의 GATT협정 제19조를 대폭 수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세이프가드조치를 개별국가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있으며, 灰色措置 즉, 기업 간의 수출자율규제협약이나 정부 간의 시장질서유지협정 등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선별적용 불인정원칙(non-recognition of selective application)은 수입수량의 제한시에는 예외적으로 선별적 쿼타감축을 허용키로 규정하였다.

회색조치의 철폐는 세이프가드조치의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수출자율규제협약이나 시장질서유지협약·수입가격 최저한도 책정제(Basic Price제)·수출조절(Export Moderation)·수출입가격 모니터링제·수출입감시제·재량적 수출입허가제·의무적 수입카르텔 등과 같은 제도를 허용치 않는 조치로 이미 발동중인 회색조치의 경우에는 UR협정의 발효일로부터 4년 이내에, 그리고 늦어도 99년까지는 철폐하여야만 한다.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기간은 잠정조치발동기간과 최초발동기간 및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

고, 또한 동일한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재발동은 최소한 2년이 경과한 후에야만 허용될 수 있다.

기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조치발동 후 8년 이내 또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발효일 이후 5년 이내의 기간 중 낮은 기간내에 철폐하여야 하며,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이프가드의 최초발동일 후 3년 간은 수출국이 보복을 가할 수 없도록 명기하였다.

검토하건대, 세이프가드조치 규정 중에서 선별적용의 불인정원칙과 협정발효 후 4년 이내에 회색조치를 철폐하여야만 하는 조항은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무역의존도가 높고 전문가가 부족하여 협상력이 약한 우리나라로서는 미국·EU·일본 등과의 쌍무협상에 의해 불리한 조치를 감수해야 할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EU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세이프가드조치의 최초발동일 후 2년간은 수출국이 통상보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보복 배제)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수입국이 수입제한액에 상응하는 보상조치(compensation)를 행하지 않고도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종전보다는 훨씬 더 그 발동빈도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입국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에 맞서 과감히 동 국가로부터의 수입품목을 선정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逆發動하여야만 할 것이다. 결국, 우루과이라운드체제하에서는 영리하고, 합리적인 '맞불작전'이 실효성 있게 활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 우리나라 세이프가드제도의 발전방안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Safeguard Measures)는 「대외무역법」의 산업피해구제제도와 「관세법」의 긴급관세제도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협정의 세이프가드조치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조치 즉,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조치는 89년 12월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상의 산업피해구제제도로서 나타나고 있는바, 동법 제32조~제36조, 동법 시행령 제64조~제74조에 근거한 실제 규정과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인 무역위원회 고시 제90-1호 등의 절차 규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금년 6월 현재까지 개정된 세이프가드제도에 의거하여 산업피해구제조치를 발동한 사례는 없다.

이와는 달리 87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대외무역법」에 산업영향조사제도라는 명칭으로 GATT협정 제19조의 내용과는 불일치한 상태로 시행되어 오다 90년부터 폐지된 전통적 의미의 세이프가드 성격의 산업피해조사 및 조치는 다수 있었다. 즉, 금년 6월 현재 22건의 산업피해조사가 신청되었으며, 그 중 7건의 신청은 철회되어 조사가 중지되었고, 15건은 조사가 완료되어 모두 긍정판정이 내려졌다.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해서 긍정판정을 내린 15건의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수량 제한이 2건, 관세율 인상이 8건, 구조조정이나 자구노력 지원 등의 기타조치가 5건에 달한다.

아래에서는 현행의 「대외무역법」이 규정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UR세이프가드협약 등의 내용과 대비하면서 이를 고찰·검토하여 본다.

### ■ 발동요건

「대외무역법」 제32조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 또는 무역서비스의 공급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동요건은 수입수량의 증가,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causation)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됨으로써 UR 세이프가드협약에 맞추어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무역규모의 확대와 GATT 제11조국으로의 이행 등으로 향후 사후적인 산업피해구제제도로서 세이프가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세이프가드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즉, 그 발동요건상 현행 규정상의 '심각한 피해' 개념을 UR세이프가드협약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산업의 상태에 대한 현저하고도 전반적인 피해(a significant overall impairment in the position of a domestic industry)'로 풀어서 규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조치는 공산품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농업과 농산물이 가지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점이 있는 것이다. 즉, 농산물은 소비측면에서의 대체관계(substitution)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상호경쟁관계(competition)에 있는바, 농산물에 관한 한 '동종 및 직접적인 경쟁관계'라는 개념을 농업적 특성에 맞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는 產品의 부패성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발생하게 되면 사후적인 피해구제조치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인바, '심각한 피해의 우려'라는 요건이 훨씬 중요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농산물의 단기적인 공급이 비탄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농산물의 국내판매·시장점유율 및 생산가동률 등의 감소와 생산·이윤 및 고용 등의 감소를 '심각한 피해의 우려'의 조건으로 용이하게 간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바, 농산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중 '수입증가와 산업피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이로 인해 향후 제소신청자나 무역위원회가 자의적인 해석을 내려 제소가 빈번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에 '수입증가와 산업피해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 UR협상이 타결됨으로써 UR세이프가드협약에 맞추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역규모의 확대와 GATT 제11조국으로의 이행 등으로 향후 사후적인 산업피해구제제도로서 세이프가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세이프가드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간의 인과관계'를 삽입하는 것이 법적용의 투명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UR세이프가드협약의 관련규정을 참고로 하되, 구체적인 해석지침이 변호사·회계학자·경제학자 등 전문가에 의해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분석·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UR세이프가드협약은 이 문제에 대해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하였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양자 간의 인과관계(causal link)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수입 증가 이외의 요인이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였을 경우 그러한 요인에 의한 피해는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라경제** <다음호에 계속>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나라경제』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나라경제』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라경제』는 창간 이후 국민과 정부를 잇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本誌는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잡지'가 되기 위하여 독자가 참여하는 紙面을 대폭 늘리고자 합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 정부의 정책당국자에게 보내는 苦言, 本誌의 편집방향에 대한 요구사항,

또는 本誌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의견 등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보내주시시오.

\*원 고 매 수: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

\*마 감 일: 수시로 접수

\*보 내 실 곳: ☎ 135-27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국민경제교육연구소 『나라경제』 편집실  
전화: (02)561-1400(교 272~276) FAX: (02)569-9415

# 해외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제도

이용의  
관세청 감시과 사무관

■ 금년 3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에 대한 세관의 검사방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관세청에서는 '94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여행자휴대품 검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종전에는 대부분의 여행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94년 3월 1일부터는 마약·밀수 등 우범성 여행자를 선별하여 집중 정밀검사(10%)를 실시하고 나머지 90%의 여행자에 대하여는 세관 검사를 생략하여 친절·신속하게 세관을 통과시킴으로써 종전 2~3분 소요되던 통과시간을 5초로 대폭 단축시켰습니다.

세관검사대를 대폭 철거하여 세관 통로를 확충하고, 여행자 스스로 면세 및 과세통로를 선택토록 하며, 검사지정관 제도를 도입하여 검사대상자를 선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간소화하여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해당란에 'V' 표시를 하도록 하고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최소한의 인적사항만 기재토록 하는 등 휴대품 검사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면세 및 과세통관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 여행자휴대품의 면세 허용범위는 본인이 여행중 사용한 신변용품 및 출국시 휴대반출확인을 받은 물품 및 술 1병(1ℓ 이하인 것), 담배 200개비, 향수 2온스(술·담배는 미성년자 제외)와 기타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선물로 받은 물품들의 해외취득가격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과세 허용범위는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물품으로서 품명·수량 및 가격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한 후 통관이 가능하며, 특히 상용목적에 쓰일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해외취득가격 100만원 이상의 물품을 휴대반입하는 여행자는 감시대상자로 지정되어 차후부터는 정밀검사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중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과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쓰이는 물품 및 화폐·지폐·은행권·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은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동·식물 검역법」에 의한 검역대상물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규제하는 동·식물 또는 물품, 녹화기용 텔레비전 카메라(캠코더) 등은 통관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물품은 관계기관의 수입허가나 추천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중 통관하지 않은 휴대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은 반입일로부터 1개월 통과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해 공매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매된 물품에 대하여는 세금·창고료 등 제경비를 제외하고 잔금이 있을 경우에는 화주에게 공매

